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22. 9.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22.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송호신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2022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재 진

요 약

1. 연구개요

- 본 연구는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총 3개 조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민간의 벤처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함

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거주자로부터 벤처기업 등의 초기 창업자금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 소득공제금액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이며, 간접 투자금액은 10%를 직접 투자금액은 30~100% 차등 적용하여 공제함
 - 2020년 조세지출 규모는 891억원이며, 꾸준한 상승 추세임

<표 1> 「조특법」 § 16의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2022년 (전망)
소득세	13	22	66	134	185	296	593	891	1,084	1,154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확대 유도
 - 출자금의 5% 법인세 세액공제
 - 2020년 조세지출 규모는 260억원이며, 2018년 첫 감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표 2> 「조특법」 § 13의2의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2022년 (전망)
법인세	135	172	260	331	360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개인 및 법인투자자의 지속적 조합출자 참여 유도를 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차익 및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면제
 - 2020년 기준 15억원이며 추가상황에 따라 변동

<표 3> 「조특법」 § 13의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2022년 (전망)
비과세	27	24	16	4	16	27	16	15	64	24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1. 분석내용 및 결과

- 주요국에서는 벤처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손실에 대한 세금감면, 투자적격기업의 업종요건 설정, 벤처기업별 공제한도 설정 등을 특징으로 함
 -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벤처투자자에 대한 여러 과세특례를 제공함
 - 일반법인에는 주정부에서 적격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
 - 투자조합 등의 경우, 도관이론(pass-through)에 따라 취급하여 과세하지 않음
 - 연방정부는 개인투자자에게 적격소기업주식(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의 처분에 따른 공제 및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를 제공

- 주정부는 개인투자자에게 적격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나, 주별로 적격기업의 기준이 상이함
 - 대부분 주별로 적격기업에 대하여 디지털 및 기술관련 업종 제한이 있음
 -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벤처투자가 활발한 주의 경우 벤처투자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캐나다는 개인투자자 위주의 세금 감면 혜택이 존재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세제혜택보다 주정부 차원의 세제혜택이 큰 편임
- 일반법인에 주별 적격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함
 - 투자조합 등의 경우, 도관이론에 따라 취급하여 과세되지 않음
 - 캐나다 연방정부는 개인투자자에게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의 주식지분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공제 및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를 제공
 - 벤처투자 적격대상기업의 산업 제한, 개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감면 한도 및 주정부별 감면 한도가 있음
 - 캐나다에서 벤처투자가 가장 활발한 온타리오 주와 퀘벡 주는 다른 주와 달리 직접적인 세금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영국은 기업 생애주기별, 규모별로 세분화한 세금혜택이 존재함
- 법인투자자의 경우,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혜택은 없으나 벤처캐피털 신탁(VCT)에 대한 세제혜택이 존재함
 - 개인투자자의 경우, 세액공제 및 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존재함
 -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 개인별 투자금의 연간 한도와 더불어 각 벤처기업이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조달 가능한 최대금액 한도가 존재함
- 일본은 개인투자자에게 세금혜택 방식을 선택할 자율권이 있음
- 개인투자자는 “엔젤세제”하에서 출자 시 세금혜택과 양도소득세 감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투자자는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하에서 출자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적격투자 대상에는 규모 및 산업 제한이 존재함
- 타당성 분석 결과, 동 제도들의 민간 벤처투자를 유인할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지원방식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벤처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외부경제에 대한 조세지원의 제공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부 개입의 적절성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벤처기업의 만성적인 과소투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규 자금조달액 중에서 과도하게 높은 정부의 정책자금 대신 자발적인 민간의 벤처투자 비중을 확대 시킬 필요성이 있어 동 제도들의 정책목표는 적절하게 설정됨
 - 동 제도들의 조세지원 대상을 벤처·창업 생태계 참가자들인 투자자로 규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함
 - 다만, 조세지원의 적용대상 업종 및 납세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업종별 투자에 대한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투자자가 특수관계인인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일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사이의 대상 불일치 문제도 있어 이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음
 - 특수목적법인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도관기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양도 차익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를 통하여 완결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위험을 기피하는 투자 환경에서 벤처투자자에게 세금혜택을 통해 위험부담을 완화시켜 벤처투자를 촉진시키는 정책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도운영은 적절하다고 파악됨
 - 다만 구체적 시행과 관련해서는 시장 실패 및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특정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운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벤처기업별 투자자들의 세금혜택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효과성 분석 결과, 동 과세특례제도들은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에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됨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개인투자자 유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통계적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함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반 법인투자자의 유인 효과는 통계적 분석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설문조사에서는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는 설문조사 결과 투자자들로부터의 벤처투자자금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매칭을 이용한 수혜효과 분석: 원천세 미시자료

- 분석 기간: 귀속연도 기준 2016~2020년 연도별 분석
- 매칭 통제변수
 - 매칭에 이용한 통제변수로는 총급여, 과세대상 근로소득, 세대주 여부, 세액 공제한도 합계를 이용
 - Mahalanobis distance를 이용하여 수혜자와 가장 유사한 통제변수를 가진 비수혜자를 매칭시키는 페어 매칭(pair matching)을 이용하여 비교집단(통제집단)을 구축
 - 소득공제 이전에 결정된 변수와 소득공제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서 이들 변수가 같은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수혜자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을 가정
 - 이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해당 소득공제 수혜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함
- 결과변수 선택
 - 과세표준, 총소득공제액, 투자조합 등 소득공제를 제외한 여타 소득공제, 소득공제한도 초과액을 결과변수로 선택하여 분석
 - 처치집단인 수혜집단과 통제집단인 비수혜집단 간의 결과변수의 평균의 차이인 ATET(average treatment effect of the treated)를 추정
- ATET 추정 결과는 해당 소득공제의 절세효과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해당 제도가 경제적으로 벤처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비수혜자 대비 과세표준은 723만~1,055만원을 낮추는 효과, 총소득공제는 896만~1,459만원을 높이는 효과, 소득공제한도 초과액은 45만~396만원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줌
 - 여타 소득공제에 대한 결과는 제한적으로 구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4〉 연도별 ATET 추정결과(「조특법」 제16조, 원천세)

결과변수	ATET				
	2016	2017	2018	2019	2020
과세표준	-918** (-5.51)	-138 (-0.77)	-1,055** (-27.49)	-981** (-19.76)	-723** (-18.58)
소득공제	1,459** (76.38)	896** (60.55)	1,209** (104.72)	1,096** (83.74)	1,007** (74.63)
여타 소득공제	27 (1.02)	-400** (-16.75)	-44** (-3.07)	170** (24.37)	-107** (-16.47)
소득공제한도 초과액	396** (16.02)	335** (14.27)	355** (28.82)	45** (10.26)	39** (9.24)

주: 1. 결과변수 단위는 만원

2. () 안의 값은 *t*-값

3. ** 및 *는 모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의 *p*-value가 각각 0.01 및 0.05보다 작음을 의미

□ 매칭을 이용한 수혜효과 분석: 종합소득세 미시자료

- 분석 기간: 귀속연도 기준 2016~2020년 연도별 분석
- 매칭 통제변수: 종합소득금액
- 결과변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총소득공제, 여타 소득공제
- ATET 추정 결과는 해당 소득공제의 절세효과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해당 제도가 벤처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영향은 연도별로 유의성이 다르게 추정되었으나, 총소득공제에 대한 영향은 비수혜자에 비하여 2,643만~3,246만원을 높이는 효과, 여타 소득공제에는 684만~1,226만원 낮추는 효과를 보여줌
- 총소득공제와 여타 소득공제 결과를 결합하면, 총소득공제 증가 효과가 여타 소득공제 구축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순수한 공제 효과는 양(+)으로 판단됨

〈표 5〉 연도별 ATET 추정결과(「조특법」 제16조, 종합소득세)

결과변수	ATET				
	2016	2017	2018	2019	2020
과세표준	-1,869** (635.5)	2,991 (2199.3)	1,287** (474.0)	682* (337.3)	73 (323.0)
총소득공제	2,643** (103.8)	3,080** (150.9)	3,246** (67.9)	2,930** (56.1)	3,105** (38.7)
여타 소득공제	-1,226** (24.3)	-684** (14.8)	-729** (12.5)	-841** (12.5)	-880** (14.4)

주: 1. 결과변수 단위는 만원
 2. () 안의 값은 표준오차
 3. ** 및 *는 모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의 p-value가 각각 0.01 및 0.05보다 작음을 의미

□ 설문조사를 이용한 수혜효과 분석

- 한국엔젤투자협회를 통하여 엔젤투자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체적 효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¹⁾
- 엔젤투자자들은 동 제도의 효과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과반수(94.4%, 17/18)가 응답함
- 수혜자들의 50%는 해당 제도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투자대상의 개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적으로 0.6개의 투자대상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응답함
- 수혜자들의 40%는 해당 제도가 출자·투자기간을 증가시켰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적인 증가기간은 약 4.4개월인 것으로 추정됨
- 이는 해당 제도가 벤처투자의 경제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려되는 요소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기술 통계 분석

-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의 분포
 - 원천세 자료 기준으로 2018년부터 투자자와 투자금액이 모두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2019년에는 간접투자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의 비중이 비슷해짐

1)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설문조사 업체에서 직접 설문자들에게 연락할 수 없었으며 한국엔젤투자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협조를 받아 한국엔젤투자협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득이 낮은 측면이 있음

- 현행 제도인 간접투자 금액의 10% 세액공제 혜택이 간접투자자를 유인하는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 다만 간접투자과 직접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이전부터 유지가 되어 왔으나 2018년 대비 2019년과 2020년에 간접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세액공제 혜택 이외의 다른 경제적 요소가 훨씬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

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 제도 시행 전후의 표본과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한 선형회귀 분석
 - 2018년 제도의 시행은 평균적으로 수혜법인의 공제감면세액을 16.8억원 줄이고, 총부담세액을 13.5억원 높이고, 여타 세액공제를 17.9억원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매칭을 이용한 정책 시행 효과의 이중차분 분석
 - 2018년 제도의 시행 전후의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수혜법인과 비수혜법인의 시행 전과 후의 결과변수의 증가분을 비교
 - 결과변수로는 총부담세액과 산출세액을 고려
 - 2017년 산출세액과 영업이익을 매칭 변수로 이용
 - 해당 세액공제의 수혜는 수혜법인 집단의 여타 세액공제를 약 4.9억원 늘리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매칭을 이용한 정책 시행 효과의 DID 분석(「조특법」 제13조의2)

ATET 추정값	
결과변수	2018
총부담세액(단위: 원)	0.06 (0.02)
여타 세액공제(단위: 억원)	4.9* (3.03)

- 주: 1. 여타 세액공제는 벤처기업출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공제
- 2. () 안의 값은 표준오차
- 3. *은 모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의 p-value가 0.05보다 작음을 나타냄

□ 매칭을 이용한 수혜효과 분석

- 분석 기간: 신고연도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 사용
- 매칭 통제변수: 산출세액, 영업이익
- 결과변수: 총부담세액, 벤처기업 출자 이외의 여타 세액공제,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 비율,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율
- 결과변수에 대한 ATET 추정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추정 결과는 해당 제도 정착 과도기적 기간의 수혜 자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수혜기업 수 및 매칭 가용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

<표 7> 연도별 ATET 추정결과(「조특법」 제13조의2, 법인세)

결과변수	ATET 추정값		
	2018	2019	2020
총부담세액(단위: 억원)	-20.8 (-0.80)	-4.1 (-0.57)	8.1 (0.30)
여타세액공제(단위: 억원)	10.4 (1.09)	8.4 (1.25)	22.8 (0.62)
총세액공제/산출세액(단위: %p)	0.26 (0.09)	-1.21 (-0.48)	-1.39 (-0.57)
총부담세액/산출세액(단위: %p)	-0.22 (-0.08)	1.38 (0.53)	1.63 (0.68)

주: 1. 여타세액공제는 벤처기업출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공제
 2. () 안의 값은 t-값

□ 설문조사 이용한 수혜 효과 분석

- 해당 「조특법」 대상 기업들에 대해 구체적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²⁾
- 법인투자자는 해당 제도의 효과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과반수(75%, 6/8)가 응답하였으나, 동 제도가 출자·투자대상의 개수 또는 기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이러한 결과는 해당 「조특법」이 벤처투자의 본질적인 경제성을 고려한 이후 한계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해석할 수 있음

2)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협조를 받아 개별 벤처캐피탈에 연락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한 적이 있는 기업에 간접적으로 설문을 실시함

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설문조사 이용한 수혜효과 분석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하 창투조합 등)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통제집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로 ATET 등을 추정할 수 없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에 등록된 모든 창투조합 등에 설문조사를 실시함
- 창투조합 등은 동 제도의 효과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과반수(83.7%, 41/49)가 응답하였으며, 수혜기업의 경우는 91.4%(32/35), 비수혜기업의 경우는 64.3%(9/14)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함
- 창투조합 등은 동 제도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투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89.8%(44/49)로 높았음

<표 8> 「조특법」 § 13가 벤처기업 등의 출자·투자에 미친 영향

구분	사례 수	전혀 영향이 없음	작은 영향을 미침	보통임	큰 영향을 미침	매우 큰 영향을 미침	평균	
전체	49	10.2%	8.2%	32.7%	28.6%	20.4%	3.41	
수혜 여부	수혜자	35	5.7%	5.7%	31.4%	31.4%	25.7%	3.66
	비수혜자	14	21.4%	14.3%	35.7%	21.4%	7.1%	2.79

주: 비수혜자는 개별 조세특례를 받았을 경우의 예상 영향을 응답함

- 해당 제도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 금액을 약 8.4% 정도 증가시켰다고 응답함

<표 9> 「조특법」 § 13에 의한 벤처기업 등의 출자·투자의 증가비율(귀속연도 2020년 기준)

구분	사례 수	자체 재원	개인투자자 모집금액	법인투자자 모집금액	계	
전체	41	7.7%	9.0%	8.7%	8.4%	
수혜 여부	수혜자	34	7.8%	8.6%	9.0%	8.5%
	비수혜자	7	7.5%	10.8%	7.1%	8.0%

주: 1. 응답의 내용은 “① 5% 이하 ② 5% 초과 10% 이하 ③ 10% 초과 15% 이하 ④ 15% 초과 20% 이하 ⑤ 기타”인데, 개별 응답의 중간값(①부터 ④까지에서 각각 2.5%, 7.5%, 12.5% 및 17.5%) 및 ⑤에서 개별적으로 응답한 값을 이용해서 증가비율을 계산함

- 벤처기업 등의 출자·투자대상의 개수나 투자기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벤처투자의 본질적인 경제성을 고려한 이후의 한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10> 「조특법」 § 13가 출자·투자대상의 개수에 미친 영향(귀속연도 2020년 기준)

구분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증가시킴	평균 증가개수	평균 증가비율	
전체	43	88.4%	11.6%	0.5	7.8%	
수혜 여부	수혜자	34	85.3%	14.7%	0.6	9.9%
	비수혜자	9	100.0%	0.0%	0.0	0.0%

- 주: 1. 응답내용에는 “①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③ 증가시켰다” 외에 “② 감소시켰다”도 있지만 응답결과가 없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음
 2. 평균 증가개수 및 증가비율의 계산 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의 응답결과는 증가개수와 증가비율을 각각 0개 및 0%로 적용함

<표 11> 「조특법」 § 13가 출자·투자기간에 미친 영향(귀속연도 2020년 기준)

구분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증가시킴	평균 증가 개월	평균 증가비율	
전체	43	88.4%	11.6%	1.7	7.3%	
수혜 여부	수혜자	34	88.2%	11.8%	2.1	9.0%
	비수혜자	9	88.9%	11.1%	0.1	1.1%

- 주: 1. 응답내용에는 “①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③ 증가시켰다” 외에 “② 감소시켰다”도 있지만 응답결과가 없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음
 2. 평균 증가개수 및 증가비율의 계산 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의 응답결과는 증가개수와 증가비율을 각각 0개 및 0%로 적용함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벤처투자 현황, 해외사례,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등을 바탕으로 본 제도의 일몰 연장을 건의하나,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함
 - 벤처투자 촉진 「조세특례제한법」들과의 대상 일치
 -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유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들의 정책목표는 동일하나 적격투자 대상의 불일치 문제점이 존재함
 - 조세감면제도들의 적격투자 대상의 불일치는 벤처투자자들이 투자대상을 결

정할 때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들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음

○ 벤처기업별 세액감면혜택 한도 설정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상장사들에 대한 투자와 비교하여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투자자와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산업 구조 및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사에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따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벤처기업별 세액감면혜택의 한도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에서는 벤처기업별 한도와 연간 최대 혜택금액을 설정하여 투자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있으며, 벤처투자가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낮고 정보 비대칭이 많은 부분 해소된 지역의 경우 관련 제도를 축소·폐지하고 있음

○ 특수관계인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개선방안

- 현재 제도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준용하고 있으나 진화하는 기업형태에 따른 기업들의 경제적인 지배관계를 고려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존재함
- 친인척의 범위 중심에서 벗어나 복잡해진 기업의 지배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종속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를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하는 다른 제도들이 많아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실현 가능성이 높음

○ 적격투자 대상 업종 관련 개선방안

- 동 조세특례제도들은 적격투자 대상의 업종 및 산업 제한이 실질적으로 없음
- 동 제도들의 주된 목적은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 시 발생하는 시장 실패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과소투자를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진 산업에는 지원할 타당성이 낮아 적격투자 대상의 산업 및 업종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함
- 다만,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의 융합화로 인하여 산업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업종 제한을 설정할 경우 제도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기 때문에, 차선적으로 업종 제한을 하지 않는 대신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인증제도를 강화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세계혜택의 벤처투자 효과 파악을 위한 자료 구축

- 정확한 분석 및 정책 설계를 위하여, 현재 원천세 자료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대한 부분을 종합소득세 자료, 법인세 자료 등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 구축이 필요함

목 차

I. 서론	23
II. 제도 개요 및 현황	29
1. 제도 개요	31
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1
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6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8
2. 제도 현황	43
가. 벤처투자 시장동향	43
나. 벤처 및 엔젤투자 현황	49
다. 창투자(조합) 현황	55
III. 선행연구 및 국제 비교	57
1. 선행연구	59
가. 국내 연구	59
나. 해외 연구	62
2. 국제 비교	63
가. 미국	63
나. 캐나다	74
다. 영국	79
라. 일본	86
마. 이스라엘	91
IV. 타당성 분석	95
1. 개요	97

2. 정부 역할의 적절성	98
가. 정부 개입의 적절성	98
나. 정책수단의 적절성	101
3.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103
가. 정책목표의 적절성	103
나. 정책대상의 적절성	105
다. 제도운영의 적절성	106
라. 여타 제도와의 중복성	108
4.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110
가. 개요	110
나. 설문조사 결과	111
다.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134
5. 소결	135
V. 효과성 분석	139
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41
가. 원천세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	141
나.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	150
다.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목표 달성도 평가	154
라. 원천세 자료를 활용한 개인투자자의 직·간접투자 현황	157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62
가. 법인세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	162
나.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목표 달성도 평가	173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76
가. 설문조사를 통한 효과성 분석	176
VI. 결론 및 개선방안	183
1. 과세특례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론	185
2. 쟁점사항 및 제도개선 방향	187
가. 벤처투자 촉진 조세특례제한법들과의 대상 일치	187

나. 벤처기업별 한도 설정	189
다. 특수관계인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개선방안	190
라. 적격 투자대상 업종 관련 개선방안	191
마. 세제혜택의 벤처투자 효과 파악을 위한 자료 구축	193

참고문헌	194
-------------------	------------

부 록	199
------------------	------------

표 목 차

<표 II-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정책대상자	32
<표 II-2> 연도별 조세지출규모(「조특법」 제16조)	35
<표 II-3> 투자 방식에 따른 적격투자 대상 변경	35
<표 II-4> 연도별 조세지출규모(「조특법」 제13조의2)	38
<표 II-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건	40
<표 II-6> 연도별 조세지출규모(「조특법」 제13조)	41
<표 II-7> 주요 연혁(「조특법」 제13조)	41
<표 II-8> 벤처투자 시장동향(2020~2021)	43
<표 II-9> 업력별 신규투자 금액(2018~2022. 3.)	46
<표 II-10> 100억원 이상 벤처투자 유치 기업 현황(2017~2021)	47
<표 II-11>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2018~2022. 3.)	47
<표 II-12> 유형별 신규투자 금액(2018~2022. 3.)	49
<표 II-13> 벤처투자 현황(2017~2021)	50
<표 II-14> 분기별 벤처투자 현황(2019~2021)	50
<표 II-15> 조합 결성 현황(2017~2021)	52
<표 II-16> 2021년 분기별 신규조합 결성 현황	52
<표 II-17> 신규 결성액 규모별 조합 결성 현황(2017~2021)	53
<표 II-18> 2021년 분기별 신규조합 결성 현황(법인, 정책기관 포함)	53
<표 II-19> 투자기업 업력별 투자 현황(2017~2021)	54
<표 III-1> 미국의 엔젤투자 세액공제제도 주별 프로그램 명칭	68
<표 III-2> 매니토바주의 중소기업 벤처캐피털 세액공제제도(SBVCTC)	78
<표 III-3> 영국의 벤처지원제도	80
<표 III-4> 영국의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84
<표 III-5> 영국의 벤처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세 감면	85
<표 III-6> 일본의 엔젤세제 대상 중소기업 요건	88

<표 III-7> 일본의 엔젤투자 우대조치(투자시점)	89
<표 III-8> 일본의 엔젤세제 우대조치 A의 요건	89
<표 III-9> 일본의 엔젤세제 우대조치 B의 요건	90
<표 III-10> 이스라엘의 벤처지원제도	92
<표 IV-1>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간의 선택기준	102
<표 IV-2> 설문조사 대상 납세자의 구성	110
<표 IV-3> 설문조사 대상 표본의 세부적 구성	111
<표 IV-4> 개별 조세특례의 인지 여부(비수혜자 대상)	112
<표 IV-5> 개별 조세특례의 인지 시기(수혜자 및 인지 비수혜자 대상)	112
<표 IV-6> 개별 조세특례의 인지 경로(수혜자 및 인지 비수혜자 대상)	113
<표 IV-7> 개별 조세특례의 비적용 사유(인지 비수혜자 대상)	114
<표 IV-8>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투자의 방식	115
<표 IV-9> 전체 투자 중 직접투자의 비율	115
<표 IV-10>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투자하지 않은 사유	116
<표 IV-11>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투자하지 않은 사유	117
<표 IV-12> 창투조합 등의 구체적 유형별 간접투자의 상대적 비중 (간접투자 납세자 대상)	118
<표 IV-13> 순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출자·투자의 방식	119
<표 IV-14> 창투조합 등에 대한 출자방식 (창투조합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대상)	119
<표 IV-15> 투자성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창투조합 등에 대한 출자방식 (창투조합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대상)	120
<표 IV-16> 투자대상에 대한 신규 출자·투자의 평균 규모	121
<표 IV-17> 출자·투자대상으로부터의 회수의 평균 규모	121
<표 IV-18>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투자의 증가에 대한 개별 조세특례의 효과성 인식 여부	122
<표 IV-19> 개별 조세특례의 효과성을 인식하지 않은 사유	123
<표 IV-20> 개별 조세특례가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투자에 미친 영향	124
<표 IV-21> 개별 조세특례에 의한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투자의 증가비율	125

<표 IV-22> 개별 조세특례가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투자의 계획에 미친 영향	126
<표 IV-23> 개별 조세특례가 출자·투자의 계획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는 사유 ..	126
<표 IV-24> 개별 조세특례가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투자대상의 개수에 미친 영향 .	128
<표 IV-25> 개별 조세특례가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투자기간에 미친 영향	129
<표 IV-26> 개별 조세특례를 최저한세와 무관하게 적용할 필요성의 인식 여부 ..	129
<표 IV-27>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출자·투자의 방식	130
<표 IV-28> 개별 조세특례의 조세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	131
<표 IV-29> 부족한 개별 조세특례에 필요한 확대 비율 및 충분한 개별 조세특례에 필요한 축소 비율의 평균값	133
<표 IV-30>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정책적 지원의 유형	134
<표 V-1> 수혜자집단과 비수혜자집단 요약 통계(제16조, 원천세)	142
<표 V-2> 과세표준 회귀분석 추정 결과(제16조, 원천세)	143
<표 V-3> 출자 소득공제와 여타 소득공제와의 상관계수(제16조, 원천세)	144
<표 V-4> 연도별 ATET 추정결과(제16조, 원천세)	146
<표 V-5> 귀속연도 2016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147
<표 V-6> 귀속연도 2017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147
<표 V-7> 귀속연도 2018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148
<표 V-8> 귀속연도 2019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149
<표 V-9> 귀속연도 2020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149
<표 V-10> 수혜자집단과 비수혜자집단 요약 통계(제16조, 종합소득세)	150
<표 V-11> 연도별 ATET 추정결과(제16조, 종합소득세)	153
<표 V-12> 종합소득을 이용한 연도별 매칭 결과	154
<표 V-13> 개인투자자 응답자 특성 요약 통계	155
<표 V-14> 2020년 신규 출자·투자금액 평균	156
<표 V-15> 소득공제 혜택의 출자 증가효과 유무에 대한 응답	157
<표 V-16> 소득공제 혜택이 출자·투자대상의 개수에 미친 영향(2020년)	157
<표 V-17> 소득공제 혜택이 출자·투자기간에 미친 영향(2020년)	157
<표 V-18> 투자 종류의 분포(원천세)	159
<표 V-19> 투자 금액의 분포(원천세, 귀속연도 2018년)	160

<표 V-20> 투자 금액의 분포(원천세, 귀속연도 2019년)	161
<표 V-21> 투자 금액의 분포(원천세, 귀속연도 2020년)	162
<표 V-22> 2018~2020년 세액공제감면 빈도 및 비중	163
<표 V-23>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요약 통계(제13조의2, 법인세)	164
<표 V-24> 2017~2018년 공제감면세액 및 총부담세액 증가분: 수혜기업 vs 비수혜기업	166
<표 V-25> 선형회귀분석 결과(제13조의2, 법인세)	167
<표 V-26> 매칭을 이용한 ATET 추정결과(제13조의2, 법인세)	168
<표 V-27> 수혜집단과 매칭된 비수혜집단 요약 통계	168
<표 V-28> 2017~2020년 회귀분석 결과(제13조의2, 법인세)	169
<표 V-29> 연도별 ATET 추정결과(제13조의2, 법인세)	171
<표 V-30> 2018년 매칭 결과	172
<표 V-31> 2019년 매칭 결과	172
<표 V-32> 2020년 매칭 결과	173
<표 V-33> 법인투자자 응답자 특성	174
<표 V-34> 2020년 법인투자자의 벤처기업 등에 투자 규모	174
<표 V-35>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의 출자 증가 효과에 대한 응답	175
<표 V-36>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출자대상의 개수에 미친 영향(2020년)	176
<표 V-37>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투자기간에 미친 영향(2020년)	176
<표 V-38> 창투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 비과세 수혜	177
<표 V-39> 창투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 비과세 수혜 여부와 출자금액 평균 ..	178
<표 V-40> 비과세 혜택의 출자 증가 도움 여부 응답	178
<표 V-41> 비과세 혜택이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에 미친 효과 응답	179
<표 V-42> §13가 벤처기업 등의 출자·투자의 증가비율(귀속연도 2020년 기준)	179
<표 V-43> §13가 출자·투자대상의 개수에 미친 영향(귀속연도 2020년 기준)	180
<표 V-44> §13가 출자·투자기간에 미친 영향(귀속연도 2020년 기준)	181

그림 목 차

[그림 II-1] 신규조합 출자자 비중	44
[그림 II-2] 2020년 신규자금 조달규모 및 방법	44
[그림 II-3] 최근 5년간 신규투자	45
[그림 II-4] 업력별 신규투자 비중	46
[그림 II-5] 업종별 신규투자 비중	48
[그림 II-6] 유형별 신규투자 비중	49
[그림 II-7] 최근 5년간 및 2021년 분기별 벤처투자 실적	51
[그림 II-8] 최근 5년간 조합 및 2021년도 분기별 결성 추이	52
[그림 II-9] 창투자 등록 및 운영	55
[그림 IV-1] 외부경제를 고려한 적정 벤처투자 수준	101
[그림 V-1] 종소세 신고유형 분포: 처치집단 vs 통제집단	151

I. 서론



I. 서론

- 본 연구에서 다루는 조세특례제도들은 다음과 같음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등의 초기 창업자금에 대한 거주자로부터의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하여 도입함
 - 장기간 운영이 되었으며, 감면액 규모가 비교적 큰 제도이므로 적용기한 종료 전 조세감면의 목적 달성 여부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설립 시에 자본금 취득이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유도하여 벤처기업의 자본확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함
 - 2016년 시행 이후로 심층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도의 운용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투자자의 지속적인 조합출자 참여 유도를 통해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함
 - 「조특법」 제16조와 제13조의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면액 규모가 작지만, 시행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위의 두 제도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세감면의 목적 달성 여부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동 제도들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조세특례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해외사례,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등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몰 또는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일몰 연장 시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함

- 해외사례 분석에서는 본 특례제도들과 유사한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본 제도들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함
 - 주요국에서 동 과세특례들과 유사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외국의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유사사례를 통하여 간접 분석
 - 본 과세특례제도들과 주요국들의 제도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차이점 등을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적용할 만한 시사점이 있는지 점검

- 타당성 분석에서는 본 조세감면제도들의 정부 역할의 적절성 및 제도설계·운영의 적절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정부 역할의 적절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 개입의 타당성 및 정책수단의 적절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특례제도들을 살펴봄
 - 제도설계·운영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목표의 적절성, 정책대상의 적절성, 제도 운영의 적절성 및 타 제도와의 중복성 관점에서 해당 조세특례제도들을 분석함
 - 문헌분석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함

- 효과성 분석에서는 해당 조세특례제도들의 정책목표인 개인 및 법인투자자의 벤처투자를 증대시키는지에 대해 분석함
 -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 및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가 거주자에게 벤처투자 유인효과가 있는지 분석함
 - 연말정산 자료에는 간접투자자와 직접투자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투자 종류에 따른 기초통계량 분석을 실시함
 -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업의 세액공제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가 내국법인으로 하여금 벤처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지 파악함
 -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벤처투자 증대효과를 파악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수혜기업의 경우 벤처투자만을 위한 특수목적 회사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비교할 대조군이 없어 설문조사를 실시함
 - 국세청 과세 미시자료로부터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완적으로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에게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함

-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동 제도들의 일몰 연장 여부와 함께 정책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Ⅱ. 제도 개요 및 현황



Ⅱ. 제도 개요 및 현황

1. 제도 개요

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³⁾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도는 창업 기업, 벤처기업 등(이하 벤처기업 등)의 초기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주자로부터의 벤처기업 등에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 개인투자자에게 벤처기업 등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벤처투자 확대 유도
-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출자하는 거주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16 ①항 1호)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16 ①항 2호)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기본적으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출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
 - (개인투자조합 출자)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출자(「조세특례제한법」 §16 ①항 3호)
 -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16 ①항 4호)
 -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16 ①항 5호)

3) 2020년 8월 12일 이전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이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16 ①항 6호)

□ 각 정책대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①항 1호~6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표 II -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정책대상자

구분	정책대상자
1호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투자를 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조합을 말함 -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과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말함 - 전문투자조합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조합을 말함
2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만족하는 신탁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출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투자신탁을 의미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거주자 1명당 3천만원임
3호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라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해당 법률의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말함
4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술 관련 투자금액 혹은 연구 개발비가 일정 이상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함
5호	○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은 증권 모집의 특례에 대한 조항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를 말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850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13호),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7112호), 「기술보증기금법」(법률 제18511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842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①항 3호와 4호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이 직접투자시 해당 조특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기업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③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벤처기업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술 관련 투자금액 혹은 연구개발비가 일정 이상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함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1,500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3 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①항 6호에 명시되어 있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란 위의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말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①항에 따라 규정된 정책대상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서의 출자 혹은 투자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
 - (간접투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
 - (직접투자) 제16조 ①항 제3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음
 - 제16조 ①항 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기업이 투자 당시에는 적격투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16조 ①항 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그 시점으로 적용함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함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외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3년이 지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함
 - 제16조 ①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제16조 ①항 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제16조 ①항 제3호·제4호·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
- 「조세지출예산서」상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규모는 <표 II-2>와 같이 파악할 수 있음
- 3년 평균(2018~2020년) 실적은 연간 593.3억원
 -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

<표 II -2> 연도별 조세지출규모(「조특법」 제16조)

(단위: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2022년 (전망)
소득세	13	22	66	134	185	296	593	891	1,084	1,154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2020년 8월 12일부터 명칭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로 변경
- 조문 도입 후 총 8차례 일몰기한 연장(2003. 12. 31., 2006. 12. 31., 2008. 12. 31., 2010. 12. 31., 2012. 12. 31., 2014. 12. 31., 2017. 12. 31., 2020. 12. 31.)하였으며, 2020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투자 방식에 따라 적격투자 대상 변경이 <표 II-3>과 같이 상이함

<표 II -3> 투자 방식에 따른 적격투자 대상 변경

개정 연도	투자 방식	
	간접투자	직접투자
1997	「조감법」 제13조의3 신설(1997. 8. 3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신탁수익증권	(추가, 1997. 12. 13) 벤처기업
1998	「조특법」 제16조로 이관 (1998. 12. 28.)	(추가) 벤처기업투자조합
1999	(추가) 기업구조조정조합	
2001	(추가)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2005	(추가) 한국벤처투자조합	
2007	(삭제) 기업구조조정조합	
2014		(추가) 창업3년 이내 기술성 우수평가기업

〈표 II -3〉의 계속

개정 연도	투자 방식	
	간접투자	직접투자
2016	(추가) 창업 벤처전문 PEF	(추가) 창업3년 이내 R&D투자 3천만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기업
2017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 개정 2018. 2.) 신주투자 50% → 15% 구주투자 35% 신설 1인당 투자한도 3천만원	(추가) 창업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크 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3년 이내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설립 시에 자본금 취득이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유도하여 벤처기업의 자본확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할 목적을 가진 제도임
 - 내국법인에게 벤처기업 등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벤처투자 확대 유도
-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출자하는 내국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창업자 등에 출자)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세특례제한법」 §13의2 ①항 1호)
 - (창투조합 등에 투자)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세특례제한법」 §13의2 ①항 2호)
- 정책대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②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해야 함
 -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①항에 따라 정책대상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격투자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③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함
 -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고려됨
- 정책대상자가 적격투자 대상에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아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함)
 -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
 - 법인의 임원·직원,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 또는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법인, 비소액주주 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위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⁴⁾

4) 위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과 해당 특수관계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조세지출규모는 「조세지출예산서」에서 <표 II-4>와 같이 파악됨
 - 3년 평균(2018~2020년) 실적은 연간 189억원
 -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

<표 II -4> 연도별 조세지출규모(「조특법」 제13조의2)

(단위: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2022년 (전망)
법인세	135	172	260	331	360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해당 제도는 2016년 신설 후 2019년에 2022년까지 일몰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됨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는 개인 및 법인투자자들의 벤처투자 참여를 위하여 만들어진 투자조합의 도관이론 적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임
 - 1984년 4월, 중소기업의 신기술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하여, 이후 개정을 통해 현재의 조세지출 항목명과 수혜대상으로 변경됨
-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출자한 투자조합들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함

-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지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⁵⁾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세특례제한법」 §13 ①항 1호)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지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세특례제한법」 §13 ①항 2호)
- (간접 투자지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⁶⁾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세특례제한법」 §13 ①항 3호)
 -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⁷⁾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 (기금운용법인 등의 투자지분)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세특례제한법」 §13 ①항 4호)
- (코넥스시장 투자지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⁸⁾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세특례제한법」 §13 ①항 5호)
- (간접 코넥스시장 투자지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세특례제한법」 §13 ①항 6호)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를 말함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및 제2조 제11호에 따른 투자조합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을 말함

- 각 정책대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①항과 ④항의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13조 ②항과 ③항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음

<표 II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건

구분		정책대상자
제13조 제2항	1호	○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호	○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호	○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4호	○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5호	○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함
제13조 제3항	1호	○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2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2호	○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2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3호	○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2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4호	○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함

주: 1. 제1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2. 제13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850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①항과 ③항에 따라 정책대상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격투자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동 제도의 조세지출규모는 「조세지출예산서」에서 <표 II-6>과 같이 파악됨
 - 3년 평균(2018~2020년) 실적은 연간 19.3억원
 - 조세감면실적은 주가상황에 따라 상이함
 - 동 제도는 비과세 혜택으로 정확한 통계 산출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움

<표 II -6> 연도별 조세지출규모(「조특법」 제13조)

(단위: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2022년 (전망)
법인세	27	24	16	4	16	27	16	15	64	24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동일한 명칭의 조세지출 항목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그 이전 1987년 4월 9일에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의2가 수혜내용 및 수혜대상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의2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주요 연혁은 <표 II-7>과 같음

<표 II -7> 주요 연혁(「조특법」 제13조)

시행일	주요 변경사항
1984. 4. 9.	- 신설: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익금불산입(「조감법」 제18조의2) - 수혜내용: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대상: 신기술사업투자회사
1987. 1. 1.	- 명칭 개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수혜대상 개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994. 1. 1.	- 명칭 개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조감법」 제12조) - 수혜내용 개정: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부과하지 않음

〈표 II -7〉의 계속

시행일	주요 변경사항
1996. 1. 1.	- 수혜내용 확대: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추가
1998. 1. 1.	- 수혜대상 개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1999. 1. 1.	- 범조항 변경: 「조특법」 제13조 -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에 대해 일몰기한 적용(2003년)
2001. 1. 1.	- 수혜요건 완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 양도차익 비과세(당해 기업 설립 시 자본금 납입 또는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에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한 경우로 한정함)
2002. 1. 1.	- 수혜요건 완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추가
2004. 1. 1.	-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에 대해 일몰기한 연장(2003년 → 2006년)
2005. 7. 13.	- 수혜요건 완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추가
2006. 1. 1.	- 수혜대상 추가: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2007. 1. 1.	-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에 대해 일몰기한 연장(2006년 → 2009년) - 일몰기한 적용: 해당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일몰기한 2009년)
2009. 1. 1.	- 수혜대상 추가: 기금운용법인 등
2010. 1. 1.	- 일몰기한 연장: 2009년 → 2012년
2012. 1. 1.	- 수혜요건 확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주식 및 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수혜대상에 포함 - 수혜요건 완화: 창투조합 확대(농식품투자조합 추가)
2013. 1. 1.	- 일몰기한 연장: 2012년 → 2014년
2014. 1. 1.	- 수혜요건 확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 상장기업에 직접 출자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는 주식 및 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수혜대상에 포함
2015. 1. 1.	- 일몰기한 연장: 2014년 → 2017년
2017. 1. 1.	- 수혜대상 확대: 창업기획자 추가
2018. 1. 1.	- 일몰기한 연장: 2017년 → 2020년
2019. 1. 1.	- 수혜요건 완화: 창투조합 확대(개인투자조합 추가)
2020. 1. 1.	- 수혜요건 완화: 거주자가 유상증자받은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3년 지난 것을 매입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납입한 증자대금의 10% 한도)
2020. 4. 1.	- 창투조합 일부 변경: 타법개정으로 인해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을 “전문투자조합”으로 변경
2021. 1. 1.	일몰기한 연장: 2020년 → 2022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제도 현황

가. 벤처투자 시장동향⁹⁾

- 2021년 벤처투자는 종전 역대 최대 실적이었던 2020년 투자실적(4조 3,045억원)에서 3조 3,757억원 증가(78.4%)한 7조 6,8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표 II -8> 벤처투자 시장동향(2020~2021)

(단위: 개, 억원)

구분		2020		2021	
창업투자회사		165	(10.7%)	197	(19.4%)
투자조합	조합 수	206	(21.2%)	404	(96.1%)
	결성금액	2,130	(32.5%)	2,438	(14.5%)
투자	신규투자금액	43,045	(0.6%)	76,802	(78.4%)
	업체 수	68,808	(62.2%)	92,171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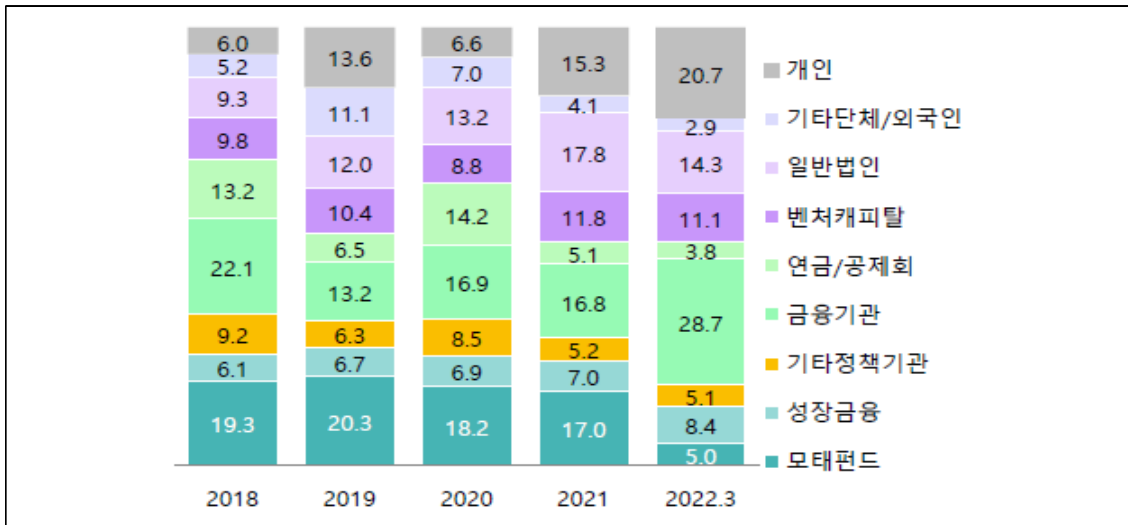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e-나라지표, https://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196&board_cd=INDX_001, 검색일자: 2022. 6. 22.

- 2022년 3월 기준 벤처투자시장에 93개 조합이 2조 5,668억원 규모로 신규 결성되었고, 총 688개사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신규투자금액은 2조 827억원 규모임
 - 회수는 매각을 통한 비중이 53.6%로 가장 높으며, IPO를 통한 비중은 23.5%를 차지하고 있음
- 신규조합의 출자자 비중은 금융기관 28.7%, 개인 20.7%, 일반법인 14.3%, 벤처캐피털 11.1%, 성장금융 8.4%, 기타 정책기관 5.1%, 모태펀드 5.0%, 연금/공제회 3.8%, 기타단체/외국인 2.9% 순임
 - 금융기관과 개인은 전년(16.8%) 대비 11.9%p, 개인은 전년(15.3%) 대비 5.4%p 증가한 반면, 일반법인은 전년(17.8%) 대비 3.5%p, 벤처캐피털은 전년(11.8%) 대비 0.7%p 감소함

9)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2년 1분기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2. 4. 29.

[그림 II -1] 신규조합 출자자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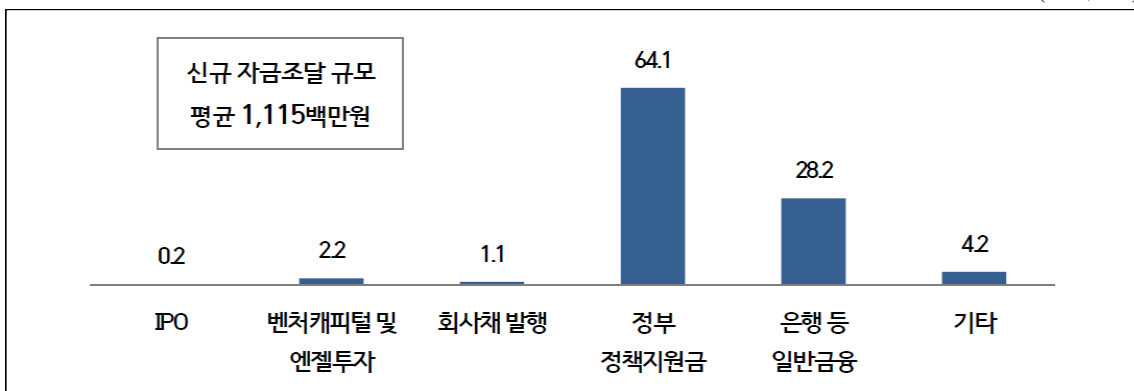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2년 1분기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2. 4. 29.

- 2021년 공개된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신규 자금의 조달방법 중에서 “정부 정책지원금(R&D, 융자, 보증서 지원)”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 정책지원금(R&D, 융자, 보증서 지원)”이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는 2.2%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함
 -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정부 정책지원금에 대한 벤처기업들의 의존도는 민간의 벤처투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본 조세특례제도들의 정책적 타당성을 지지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음

[그림 II -2] 2020년 신규자금 조달규모 및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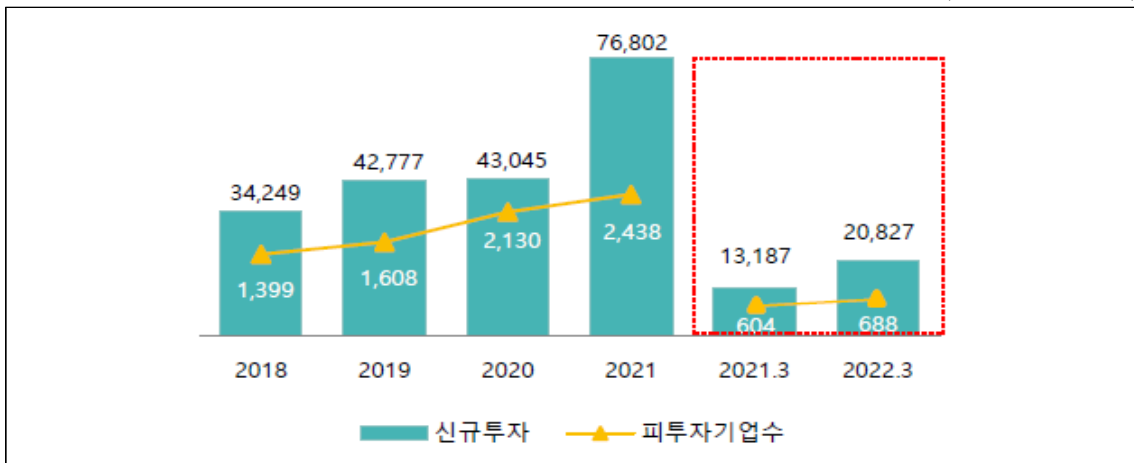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22. 12.

□ 2022년 1분기 전체 신규투자 금액은 2조 82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3,187억원) 대비 57.9% 증가하였고, 투자업체 수는 688개사로 전년 동기(604개사) 대비 13.9% 증가했음

- 최근 5년간 신규투자 금액과 투자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2021년 신규투자 금액은 7조 6,802억원, 투자기업 수는 2,438개사로, 이는 전년 (4조 3,045억원, 2,130개사) 대비 각각 3조 3,757억원(78.4%), 308개사(14.5%) 증가한 것임

[그림 II -3] 최근 5년간 신규투자

(단위: 개사,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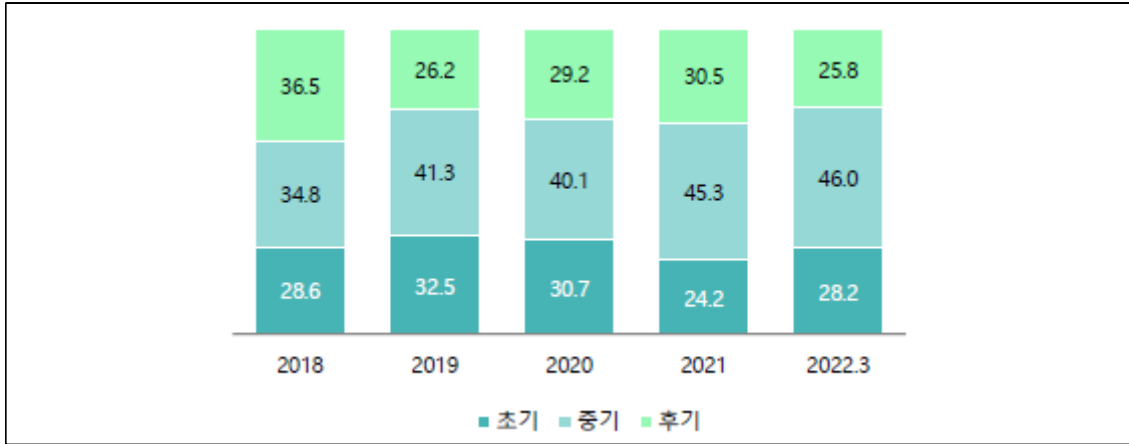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2년 1분기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2. 4. 29.

□ 2022년 1분기 신규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업력별 투자비중은 초기기업이 28.2% (5,874억원), 중기기업 46.0%(9,570억원), 후기기업이 25.8%(5,383억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0년과 비교하여 2021년 업력별 투자비중은 초기기업은 4.0%p 증가, 중기기업은 0.7%p 증가, 후기기업은 4.7%p 감소하였음
 - 2020년에는 초기, 중기, 후기기업이 각각 30.7%(1조 3,205억원), 40.1%(1조 7,268억원), 29.2%(1조 1,2572억원)의 비중을 차지함
 - 2021년에는 초기, 중기, 후기기업이 각각 28.2%(5,874억원), 46.0%(9,570억원), 25.8%(5,383억원)의 비중을 차지함

[그림 II -4] 업력별 신규투자 비중

(단위: %)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2년 1분기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2. 4. 29.

<표 II -9> 업력별 신규투자 금액(2018~2022. 3.)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3
초기	9,810	13,901	13,205	18,598	5,874
중기	11,935	17,662	17,268	34,814	9,570
후기	12,504	11,214	12,572	23,390	5,383
합계	34,249	42,777	43,045	76,802	20,827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2년 1분기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2. 4. 29.

- 2021년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57개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함¹⁰⁾
 - 2021년도 10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의 총투자 유치액 합계는 3조 573억원으로 2020년 1조 1,713억원 대비 2.6배 이상 증가
 - 100억원 이상 피투자기업 중 후속투자를 받은 기업 비중은 약 82.8%(157개사 중 130개사)로 대형 투자는 대부분 후속투자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2021년도 30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은 19개사로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1,00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도 최초로 나타남

10)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작년 벤처투자, '20년보다 3.4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수준인 7.7조원 달성」, 2022. 1. 27.

<표 II -10> 100억원 이상 벤처투자 유치 기업 현황(2017~2021)

(단위: 개사,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후속		후속		후속		후속		후속
전체 피투자기업 수	1,266	583	1,399	660	1,608	743	2,130	875	2,438	1,195
100억원 이상	29	14	54	38	70	56	75	56	157	130
금액	4,231	2,528	8,687	6,309	13,239	11,027	11,713	8,945	30,573	26,085
기업당 투자액	145.9	180.6	160.9	166.0	189.1	196.9	156.2	159.7	194.7	200.7
300억원 이상	2	2	4	3	10	9	2	2	19	17
금액	724	724	1,527	1,178	4,089	3,777	724	724	9,731	8,903
기업당 투자액	362.0	362.0	381.8	392.7	408.9	419.7	362.0	362.0	512.2	523.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작년 벤처투자, '20년보다 3.4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수준인 7.7조원 달성」, 2022. 1. 27.

- 2022년 1분기 업종별 신규투자 비중은 ICT서비스가 33.8%로 가장 높으며, 유통·서비스 20.6%, 바이오·의료 19.5% 등의 순임
- 2021년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은 2020년과 비교해 ICT서비스, 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 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였음
 - 2021년 신규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ICT서비스 부문에서 1조 3,519억원, 바이오·의료 부문에서 4,800억원, 유통·서비스 부문에서 전년 대비 7,30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 비중은 ICT서비스, 유통·서비스 부문에서 각각 6.6%p, 2.1%p 증가하였고 바이오·의료 부문에서는 6.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 -11>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2018~2022. 3.)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3
ICT제조	1,489	1,493	1,870	3,523	916
ICT서비스	7,468	10,446	10,764	24,283	7,042
전기/기계/장비	2,990	2,036	2,738	5,172	1,196
화학/소재	1,351	1,211	1,765	2,297	564
바이오/의료	8,417	11,033	11,970	16,770	4,051
영상/공연/음반	3,321	3,703	2,902	4,161	991

<표 II -11>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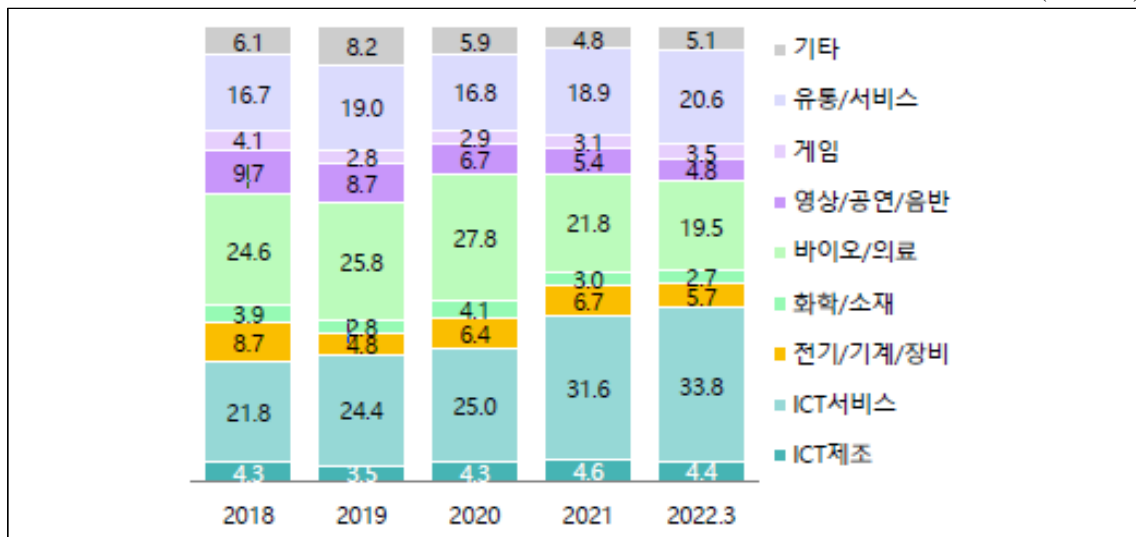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3
게임	1,411	1,192	1,249	2,355	726
유통/서비스	5,726	8,145	7,242	14,548	4,291
기타	2,077	3,518	2,546	3,693	1,053
합계	34,249	42,777	43,045	76,802	20,827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2년 1분기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2. 4. 29.

[그림 II -5] 업종별 신규투자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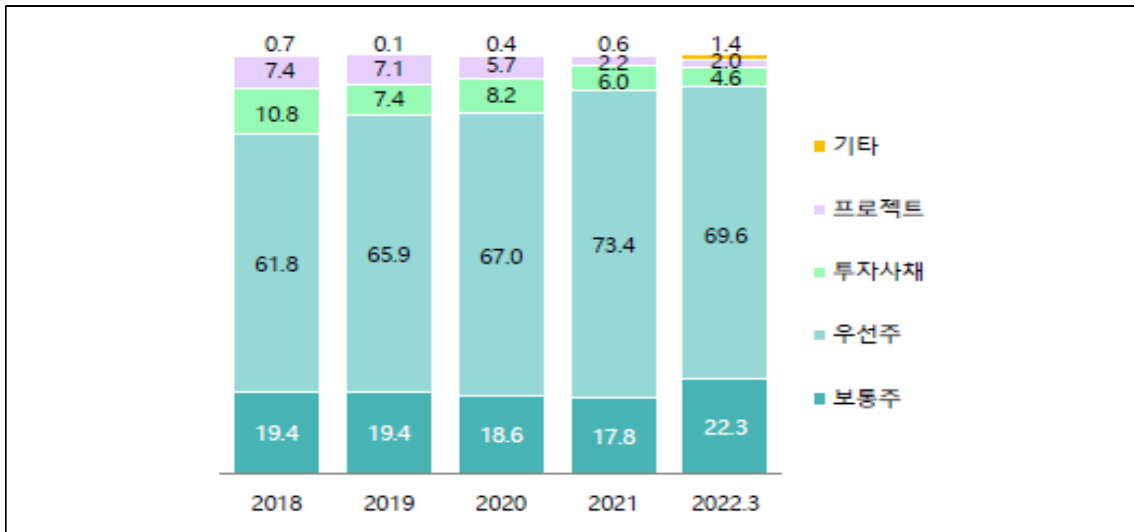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2년 1분기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2. 4. 29.

- 2022년 1분기 유형별 신규투자 비중은 우선주가 69.6%로 가장 높으며, 보통주 22.3% 등의 순임
- 2021년 유형별 신규투자 금액은 2020년과 비교해 우선주, 보통주 부문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신규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우선주 부문에서 2조 7,523억원, 보통주 부문에서 5,655억원, 투자사채 부문에서 1,044억원, 기타 부문에서 295억원 증가하고 프로젝트 부문에서 76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단, 유형별 신규투자 금액 비중은 우선주와 기타 부문에서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 -6] 유형별 신규투자 비중

(단위: %)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2년 1분기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2. 4. 29.

<표 II -12> 유형별 신규투자 금액(2018~2022. 3.)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3
보통주	6,659	8,315	8,023	13,678	4,650
우선주	21,140	28,189	28,850	56,373	14,504
투자사채	3,700	3,179	3,531	4,575	965
프로젝트	2,517	3,057	2,463	1,702	419
기타	233	37	178	473	289
합계	34,249	42,777	43,045	76,802	20,827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2년 1분기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2. 4. 29.

나. 벤처 및 엔젤투자 현황

1) 벤처투자 현황¹⁾

□ 최근 5년간 벤처투자 실적은 2017년 2조 3,803억원, 2018년 3조 4,249억원, 2019년 4조 2,777억원, 2020년 4조 3,045억, 2021년 7조 6,802억원으로 매년 급격한 성장 추세임

1)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작년 벤처투자, '20년보다 3.4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수준인 7.7조원 달성」, 2022. 1. 27.

- 2021년 벤처투자 실적은 역대 최대실적인 7조 6,802억원으로 2017년(2조 3,803억원) 이후 4년 만에 3배 이상 상승함
 - 투자건수,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2,438개사가 평균 2.3회에 걸쳐 31.5억원의 투자를 받은 셈임

〈표 II -13〉 벤처투자 현황(2017~2021)

(단위: 억원, %, 건, 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1~12월	투자금액	23,803	34,249	42,777	43,045	76,802	
	전년 대비	증감	-	10,446	8,528	268	33,757
		증감률	-	43.9	24.9	0.6	78.4
	투자건수	2,417	3,150	3,713	4,231	5,559	
	건당투자	9.8	10.9	11.5	10.2	13.8	
	피투자기업 수	1,266	1,399	1,608	2,130	2,438	
	기업당 투자	18.8	24.5	26.6	20.2	31.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작년 벤처투자, '20년보다 3.4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수준인 7.7조원 달성」, 2022. 1. 27.

- 2021년 1~4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4분기는 2조 3,649억원의 단일 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함
 - 2분기는 전년 동분기 대비 최초로 1조원 넘게 증가한 1조 9,053억원(116.0%, 1조 23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3분기에는 역대 최초로 단일 분기 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짐
 - 3분기까지 누적 투자는 약 5.3조원을 기록하며 종전 최대실적인 4.3조원을 1분기 당겨 경신한 가운데, 4분기에는 2.4조원의 단일 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면서 2021년 전체 벤처투자는 2020년 실적을 3조원 넘게 경신함

〈표 II -14〉 분기별 벤처투자 현황(2019~2021)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1분기	7,789	7,732	13,187	5,455	70.6
2분기	12,154	8,821	19,053	10,232	116.0

<표 II -14>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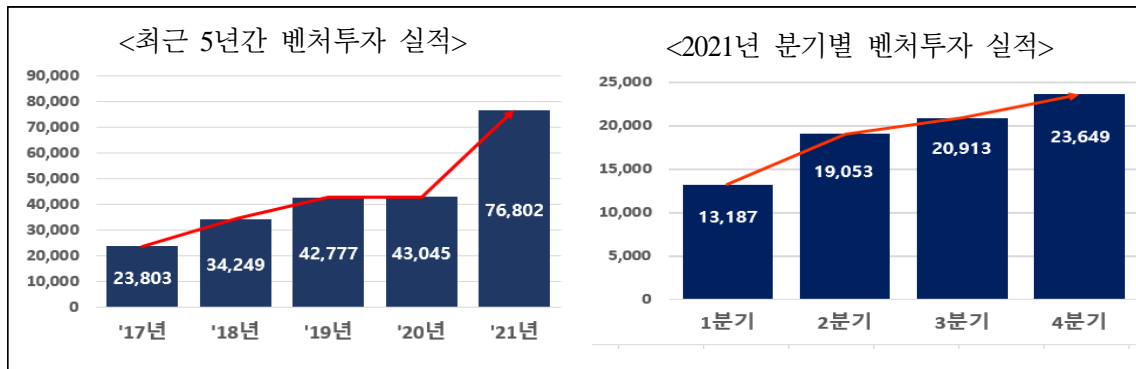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3분기	11,246	12,371	20,913	8,542	69.0
4분기	11,588	14,121	23,649	9,528	67.5
합계	42,777	43,045	76,802	33,757	78.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작년 벤처투자, '20년보다 3.4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수준인 7.7조원 달성」, 2022. 1. 27.

[그림 II -7] 최근 5년간 및 2021년 분기별 벤처투자 실적

(단위: 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작년 벤처투자, '20년보다 3.4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수준인 7.7조원 달성」, 2022. 1. 27.

2) 엔젤투자 현황¹²⁾

- 2021년 엔젤투자액은 5,028억원으로 2017년(3,324억원) 대비 51.3% 증가함¹³⁾
 - 엔젤투자액은 2017년 3,324억원, 2018년 6,417억원, 2019년 6,262억원, 2020년 8,173억원, 2021년 5,028억원임 → 비공개 내부자료
- 2021년 개인투자조합 신규 결성액은 기존 최대치였던 2020년에 비해 89% 증가한 6,278억원이며, 결성조합 수는 88% 증가한 910개로 역대 최대 규모임
 - 2017년에 비해 결성액은 7배, 조합 수는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최근 개인의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 관심과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이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임

12)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1년 개인투자조합 역대 최대실적 달성」, 2022. 2. 8.

13) 한국엔젤투자협회 내부자료

<표 II -15> 조합 결성 현황(2017~2021)

(단위: 억원, %, 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결성금액		912	2,035	2,832	3,324	6,278
전년 대비	증감	-	1,123	797	492	2,954
	증감률	-	123.1	39.2	17.4	88.9
결성조합 수		174	302	336	485	910
조합당 평균 결성액		5.2	6.7	8.4	6.8	6.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1년 개인투자조합 역대 최대실적 달성」, 2022. 2. 8.

- 2021년 1~4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020년에 이어 조합 결성의 증가세가 지속됨
 - 특히 조합 결성이 활발한 하반기 중 4분기에 역대 최대실적인 2,331억원(37.1%)이 결성되어 연간 최대실적인 6,278억원을 경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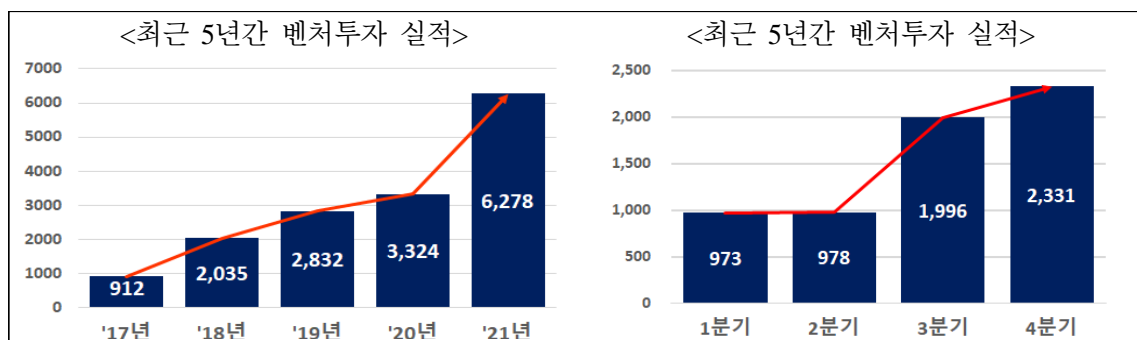
<표 II -16> 2021년 분기별 신규조합 결성 현황

(단위: 억원, %, 개)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누적	
2020년 결성금액		489	593	1,150	1,092	3,324	
2021	전년 대비	증감	973	978	1,996	2,331	6,278
		증감률	484	385	846	1,239	2,954
	전년 대비	증감	99.0	64.9	73.6	113.5	88.9
		증감률	-	5	1,018	335	-
	결성조합 수		-	0.0	104.1	16.8	-
	조합당 평균 결성액		156	164	243	347	91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1년 개인투자조합 역대 최대실적 달성」, 2022. 2. 8.

[그림 II -8] 최근 5년간 조합 및 2021년도 분기별 결성 추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1년 개인투자조합 역대 최대실적 달성」, 2022. 2. 8.

- 2021년 신규 결성액 가운데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조합은 309개로 전년(126개) 대비 약 2.5배 증가함
 - 5억원 미만의 조합 비중은 매년 감소 중인 반면, 5억원 이상의 조합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표 II -17> 신규 결성액 규모별 조합 결성 현황(2017~2021)

(단위: 개,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조합수	비중	조합수	비중	조합수	비중	조합수	비중	조합수	비중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25	71.9	207	68.5	215	64.0	305	62.9	483	53.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8	21.8	61	20.2	76	22.6	126	26.0	309	34.0
10억원 이상	11	6.3	34	11.3	45	13.4	54	11.1	118	13.0
합계	174	100.0	302	100.0	336	100.0	485	100.0	910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1년 개인투자조합 역대 최대실적 달성」, 2022. 2. 8.

- 2021년 개인 출자자 수는 2020년(8,162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만 6,681명이며, 개인 출자액은 2.4배 증가한 5,763억원을 기록함
 - 이는 최근 제2벤처 열기(붐) 등의 영향으로 전문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까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됨

<표 II -18> 2021년 분기별 신규조합 결성 현황(법인, 정책기관 포함)

(단위: 억원, %, 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개인	금 액	717	1,392	1,889	2,393	5,763	3,370	140.8
	비 중	78.6	68.4	66.7	72.0	91.8	19.8	
	출자자 수	3,380	5,984	6,192	8,162	16,681	8,519	104.4
	평균 출자금	0.21	0.23	0.31	0.29	0.35	0.06	20.7
법인	금 액	76	301	396	462	389	△73	△15.8
	비 중	8.3	14.8	14.0	13.9	6.2	△7.7	
	출자자 수	46	110	161	290	465	175	60.3
	평균 출자금	1.65	2.74	2.46	1.59	0.84	△0.75	△47.2

<표 II -18>의 계속

(단위: 억원, %, 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정책기관 (모태기금 펀드))	금 액	119	342	547	469	126	△343	△73.1
	비 중	13.1	16.8	19.3	14.1	2.0	△12.1	
합계	금 액	912	2,035	2,832	3,324	6,278	2,954	88.9
	비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1년 개인투자조합 역대 최대실적 달성」, 2022. 2. 8.

- 2021년에 조합 결성이 급증한 것은 2018년부터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의 소득공제 세제지원을 확대한 것과 2020년부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 효과에 최근 시장의 풍부한 자금 유동성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 소득공제 혜택 변화는 다음과 같음
 - (100% 공제액) 1,500만원 → 3,000만원 이하
 - (공제율) 1,500만~5,000만원 이하 50% → 3,000만~5,000만원 이하 70%까지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의 경우 기존 출자금 전액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됨

- 2021년 조합의 신규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54.8% 증가한 4,013억원으로 투자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초기창업기업 투자 비중이 약 58%를 차지함
 -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 수로는 68.2%이며, 금액으로는 57.7%에 달하는데, 이는 후속 투자가 늘면서 초기기업의 투자비중이 줄고 있는 벤처투자 조합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임

<표 II -19> 투자기업 업력별 투자 현황(2017~2021)

(단위: 개,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개	비중
초기 (3년 이내)	기업 수	135	278	458	671	685	68.2
	투자액	207	656	1,049	1,728	2,315	57.7

<표 II -19>의 계속

(단위: 개,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중기 (3~7년 이내)	기업 수	41	64	96	146	263	26.2
	투자액	149	313	466	611	1,308	32.6
후기 (7년 초과)	기업 수	21	32	41	39	57	5.7
	투자액	345	397	349	253	390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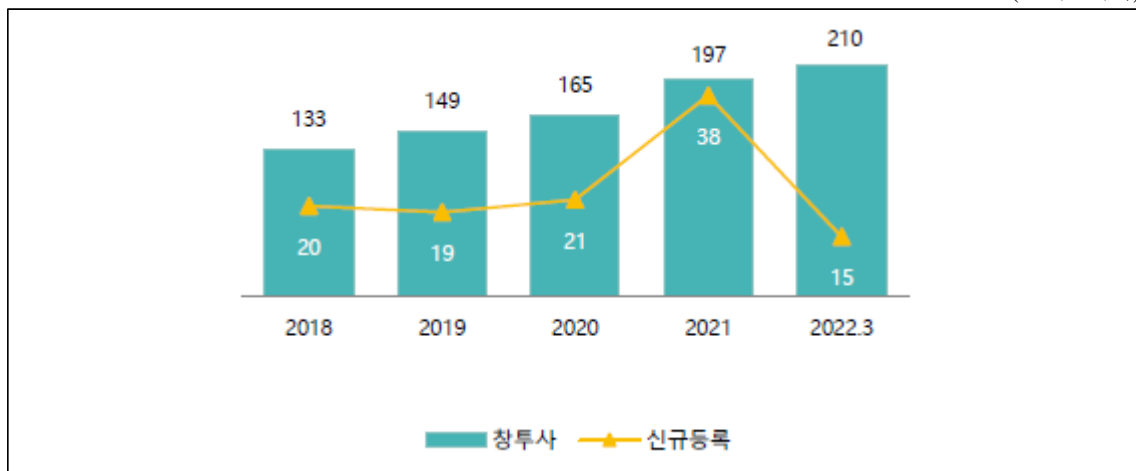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1년 개인투자조합 역대 최대실적 달성』, 2022. 2. 8.

다. 창투사(조합) 현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여 창업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주된 업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를 말함
- 창투사는 2021년 197개사로 2020년(165개사) 대비 32개사가 증가하였으며, 2022년 1분기에는 15개의 신규 창투사가 등록하고 2개의 창투사가 말소되어 총 210개사가 운영 중에 있음
 - 2017년 10월 창투사 자본금 요건이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함

[그림 II -9] 창투사 등록 및 운영

(단위: 개사)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2년 1분기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2. 4. 29.

Ⅲ. 선행연구 및 국제 비교



Ⅲ. 선행연구 및 국제 비교

1. 선행연구

가. 국내 연구

□ 김진수·김재진(2002)

- 정부지원제도들의 벤처기업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벤처기업 지원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함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여 벤처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을 수정하고, 벤처기업에 직접적 지원보다 간접적인 지원을 통하여 벤처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 김재진·양동우(2014)

- 벤처캐피털 투자와 기술적 성과의 관계를 분석함
 - 벤처캐피털 투자지분율이 높을수록, R&D 집약도가 높을수록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임
 - 벤처캐피털이 공동투자한 기업 또는 투자지분율이 월등하게 높은 투자자가 있는 투자기업의 경우에도 기술적 성과가 높은 것을 보임
 - 반면에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술인력이 많을수록 기술적 성과가 높은 경향성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해당 결과는 벤처캐피털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대리인 비용을 낮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 김재진·홍범교(2014)

-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함
 - 벤처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지원제도의 유효성이 있는 것을 보임

- 조세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가 비수혜기업 대비 약 0.2~0.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김재진·기은선(2016)

- 벤처기업과 전문적·비전문적 벤처기업 투자자로 구분하여 국내 벤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벤처기업을 성장단계에 따라 창업, 성장, 인수 및 합병의 단계로 나누고, 벤처캐피털을 투자 및 회수 단계에 따라 투자, 보유, 양도의 단계로 나누어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분석을 수행
- 설문조사를 통하여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 측면을 평가해봄으로써 벤처산업에 대한 바람직한 조세지원방안을 제시

□ 박성욱·김영훈(2016)

- 개인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
 -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없으며, 과거 연구에 대한 요약, 벤처캐피털투자자와 엔젤투자의 현황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소득 중 특정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투자조합과 동일하게 원천징수특례를 인정하고, 벤처기업에 재투자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제안함

□ 강대권·전병욱(2016)

- 벤처캐피털의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함
 -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편된 반면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투자조합의 형태를 가지는 벤처캐피털은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과세형평 및 자원조달의 중립성 측면에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하고 특정 출자방식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시

□ 김승찬·김홍근(2019)

-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개인투자조합 출자자의 벤처투자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재무 특성, 제품서비스 특성, 시장특성, 경영자 특성 순으로 벤처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박지영·신현한(2020)

-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전후의 벤처캐피털 지원 여부, 유형 및 지분율에 따라 수혜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봄
 - 벤처캐피털의 지원 여부는 벤처기업 상장 이전에만 특허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벤처캐피털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는 역U자형 관계를 보임

□ 김재진·기은선(2020)

-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벤처캐피털 및 엔젤투자자에 대해서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에 대한 효과성 파악
-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정책적 타당성과 효과성을 파악하였으며, 동 제도가 민간벤처투자를 유인하는 요인이지만 지원방식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함

□ 김학수·문운상·우석진·김도형(2020)

- 2020년에 일몰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대한 평가 실시
 - 소득공제제도의 투자 유인효과와 엔젤투자 수혜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일정수준 제한적이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함
- 제도의 단순화와 중개기관의 포트폴리오 구성내역을 바탕으로 한 간접투자 공제율 조정을 제안

나. 해외 연구

□ Barry, Muscarella, Peavy and Vetsuypens(1990)

- 1978년부터 1987년 사이의 미국 주식시장에서 IPO 기업을 바탕으로 벤처캐피탈의 효과를 분석
 - 분석한 결과, 벤처캐피탈이 IPO시 기업과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시켜 할인 발행 폭이 작아지는 것을 보임

□ Meggison and Weiss(1991)

- 벤처캐피탈의 정보 비대칭 완화 효과에 대해 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
 - 벤처캐피탈의 정보 비대칭 완화 효과는 수혜 벤처기업들이 더 명성 있는 IPO 주관회사와 회계 감사인을 선임할 기회를 얻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참여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Jeng and Wells(2000)

- 21개국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함
 - 정부 정책이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파악되었으나, 양도소득세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됨

□ Wadhwa and Kotha(2006)

- 벤처캐피탈 지원 여부에 따른 경영성과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봄
 -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뛰어난 성과를 보임
 - 벤처캐피탈은 수혜기업의 기술자문과 같은 경영지원 활동과 감시 및 통제와 같은 모니터링 역할 등을 수행하여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

□ Chemmanur, Loutskina and Tian(2014)

- 벤처캐피탈 지원과 기업 기술혁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함

- 벤처캐피털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수혜 벤처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활발해지고, R&D를 통한 기술혁신이 확대 및 기업가치가 증대되는 효과를 보임
- 특히, 수혜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그들의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상호 간 지식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기업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혁신성도가 두드러지게 향상됨을 보임

2. 국제 비교

가. 미국

1) 벤처지원제도 개요

-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법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 대해 다양한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 법인투자자에게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 일반법인에게는 주정부에서 적격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함
 - 투자조합 등의 경우, 도관이론(pass-through)에 따라 취급하며,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이중과세되는 주식회사와 달리 투자조합은 과세되지 않음
 - 개인투자자에게는 투자세액공제, 양도소득세 공제 및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를 제공함
 - 연방정부는 개인투자자에게 적격소기업주식(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의 처분에 따른 공제 및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를 제공
 - 주정부는 개인투자자에게 적격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나, 주별로 적격기업의 기준이 상이함
- 51개 주 가운데 29개 주에서 벤처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형태의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액공제율 및 연간공제한도, 환급 및 이연가능 여부에 있어서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음
 - 한편, 실리콘밸리가 소재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주 차원의 벤처투자 세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음

2) 법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가) 일반법인¹⁴⁾

- 벤처캐피털(VC) 투자를 장려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은 연방 차원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 현재 소득에 대한 초기 자본지출의 공제는 허용되고 있지 않으나, 각 주마다 1~12% 수준의 공제가 존재함

- 연방 차원의 주요 특징은 자본손실(Capital loss)은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해 상쇄될 수 있으며, 패시브 투자(passive investments) 손실(10% 미만, LP를 통해 보유한 투자 포함)은 투자소득(패시브 바스켓(Basket) 내 소득)에서 공제됨
 - 12개월 이상 보유한 투자 수익에 대한 최대 세율은 0~20% 수준임

- VC 투자에 사용되는 기업의 형태는 대부분 “pass-through”(도관이론)가 적용되는 데, 이는 뮤추얼펀드의 형태를 취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 VC 펀드에는 적용되지 않음

나) 투자조합

- 미국연방세법에서 조합은 기본적으로 도관이론에 따라 취급하므로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이중과세되는 주식회사와 달리 투자조합은 도관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이중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특징임¹⁵⁾

- 이에 따라 투자조합은 과세되지 않고 조합의 구성원들에게만 과세됨¹⁶⁾
 - 조합이 과세되지 않는 이자나 자본이득을 실현한 경우 이러한 소득 항목은 조합원이 조합의 출자지분에 준하여 배분받는 것이므로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됨¹⁷⁾

14) Lowtax, <https://www.lowtax.net/us-tax-guide/investment/the-us-tax-regime-for-venture-capital.html>

15) 김재진·홍범교,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2014. 12, p. 77

16) IRC §701

- 조합의 손실 배분 시 공제는 손실이 발생한 회계연도 말에 조정된 각 조합원 지분의 기초가액까지만 허용되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초과분이 조합에 다시 환급되는 회계연도 말에 공제받을 수 있음¹⁸⁾

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¹⁹⁾

-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1980년 「소기업투자촉진법(Small Business Incentive Act)」 제정을 통하여 사모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폐쇄형 투자회사로서 도입된 투자기구임
 - 벤처투자 등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자금지원 및 전문경영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및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 주식회사임
- BDC는 비상장기업 또는 시가총액 2,500만달러 미만 상장기업을 의미하는 적격 포트폴리오 기업(eligible portfolio company)에 투자하여야 하며 중요한 경영지원(significant managerial assistance)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적격투자는 지분 또는 채권 투자가 모두 가능하며, BDC는 분산투자 요건을 갖추고 수입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법인세 면제 혜택이 부여됨
 - 또한 「투자회사법」상 일반 폐쇄형 투자회사와 비교하여 레버리지와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운용규제가 완화되어 있음

3) 연방정부의 개인투자자 세제지원 제도²⁰⁾

가)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²¹⁾

- 2010년 9월 27일 이후 취득한 적격소기업주식을 5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100%가 과세 제외됨

17) IRC §704

18) IRC §704

19) 금융위원회, 「기업성장투자기구(BDC)제도 도입방안」, 2019. 10. 7., p. 5 참고

20)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Including Capital Gains and Losses)』, Cat. No. 15093R, <https://www.irs.gov/pub/irs-prior/p550--2021.pdf>

21) IRC §1202

- 2009년 2월 17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양도차익의 50%, 2009년 2월 17일부터 2010년 9월 27일 사이에 취득한 주식은 양도차익의 75%가 과세 제외됨
 - 과세 제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은 28% 세율로 과세됨
- 주식 종목당 과세 제외 가능한 금액은 다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함
- 해당 과세연도 중 매각하거나 교환한 주식 종목의 취득원가의 10배 금액
 - 1,000만달러(별도 신고하는 기혼자는 500만달러)에서 이전연도 과세 제외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된 동일 주식 종목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 적격소기업주식으로서 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해당 주식 발행기업이 법인세가 부과되는 C법인 주식이어야 함
 - 1993년 8월 10일 이후 최초 발행한 주식이어야 함
 - 회사의 총자산이 1993년 8월 9일 이후 주식발행 전까지 계속하여 5천만달러 이하여야 하며, 주식발행 직후 회사의 총자산 또한 5천만달러 이하여야 함
 - 구주취득이 아닌 신주취득에 해당해야 함
 - 단,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자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적격소기업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적격소기업주식을 전환 또는 교환해 해당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주취득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회사 자산의 80% 이상을 적격사업에 사용해야 함(80% test)
 - 주식발행 전후 2년간 회사는 신주인수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최소량 이상의 주식을 매입할 수 없음
 - 주식발행 전후 1년간 회사는 누구로부터든지 회사의 총주식가치의 5%를 초과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음
- 적격기업은 해외판매 내국법인(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 규제대상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모기지투자회사, 특정 금융자산유동화투자신탁, 협동조합을 제외한 미국기업을 말함

- 과세특례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자산의 80% 이상을 적격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바, 적격사업은 다음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말함
 - 보건, 법률, 엔지니어링, 건축, 회계, 보험수리학, 공연예술, 컨설팅, 체육, 금융 서비스 또는 중개서비스 분야에서 수행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
 - 1인 이상의 종업원의 평판이나 기술력을 주된 자산으로 하는 사업
 - 은행, 보험, 금융, 임대, 투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
 - 영농사업(나무재배 또는 수확사업 포함)
 - 「생산량비례법(percentage depletion)」을 적용 가능한 제품의 생산이나 추출과 관련된 사업
 - 호텔, 모텔, 레스토랑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

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²²⁾

- 6개월 이상 보유한 적격소기업주식 매각 시 발생한 양도차익을 양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적격소기업주식의 대체취득에 이용할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함
 - 과세이연 대상기업이나 주식은 IRC section 1202(과세 제외)와 동일함
 - 대체주식 취득 후 최소 6개월 이상 회사 자산의 80% 이상이 적격사업에 사용되어야 함
 - 과세이연 거래에 있어 후매수주식의 보유기간은 선매수주식의 보유기간과 합산되지만, 과세이연을 위한 6개월 보유요건의 판정에 있어서는 보유기간 합산이 인정되지 않음

다) 양도차손 공제특례²³⁾

- 소기업주식 양도차손은 자본손실(capital loss)이 아닌 경상손실(ordinary loss)로 공제할 수 있음
 - 경상손실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연 5만달러(부부합산 연 10만달러)로 한도초과액은 자본손실(capital loss)로 보아 공제함

22) IRC §1045

23) IRC §1244

- 소기업주식은 국내 소기업이 주식 및 증권 이외에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받고 발행한 신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미국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또는 우선주(단, 해당 주식이 1994년 7월 19일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는 보통주만 가능함)
 - 주식발행 당시 기업의 총자본금이 100만달러 이하여야 함
 - 엔젤투자자는 주식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취득해야 하며, 주식 발행일로부터 계속 보유해야 함
 - 양도직전 최근 5개 과세연도 동안 주식발행 기업의 총수입의 50% 이상이 로열티, 임대료, 배당금, 이자, 연금 및 유가증권처분이익 이외에서 발생해야 함(50% test)

- 소기업주식 양도차손 공제특례 규정은 주식의 최초 소유자에 한해 적용되는데, 구주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음

4) 주별 개인투자자 세제지원제도

- 2022년 5월 기준 총 29개 주에서 엔젤투자 세액공제 프로그램이 시행 중임
 - 2021년에는 총 23개 주에서 시행하였는데, 이 중 4개 주에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2022년부터 10개 주에서 추가 시행됨²⁴⁾

<표 III-1> 미국의 엔젤투자 세액공제제도 주별 프로그램 명칭

구분	명칭	비고
Arkansas	Equity Investment Incentive Act of 2007	
Arizona	Angel Investment Tax Credit	
Colorado	Enterprise Zone Tax Credit	
Connecticut	Angel Investor Tax Credit	
Georgia	Angel Investor Tax Credit	
Illinois	Angel Investment Tax Credit	
Indiana	Venture Capital Investment Tax Credit	
Iowa	Angel Investor Tax Credit	
Kansas	Angel Investor Tax Credit	

24) 2021년까지 종료된 4개 주 및 프로그램 명칭은 Delaware(Angel Investor Tax Credit), Massachusetts(Angel Investor Tax Credit), Tennessee(Angel Tax Credit), Utah(Capital Investment)로 조사됨

<표 III-1>의 계속

구분	명칭	비고
Kentucky	Angel Investment Act Program	2022년 시행
Louisiana	Angel Investor Tax Credit	
Maine	Seed Capital Tax Credit Program	
Maryland	Biotechnology Investment Tax Credit	
Minnesota	Seed Capital Investment Credit	2022년 시행
Nebraska	Angel Investment Tax Credit Program	2022년 시행
New Jersey	High Technology Investment Tax Credit	
New Mexico	Tax Credit	
New York	QETC Capital Tax Credit	
North Carolina	Qualified Business Investment Tax Credit	2022년 시행
North Dakota	Seed Capital Investment Tax Credit	
Ohio	Technology Investment Tax Credit	2022년 시행
Oklahoma	Small Business Capital Credit	2022년 시행
Oregon	University Venture Development Fund Tax Credit	2022년 시행
Rhode Island	Innovation Tax Credit	2022년 시행
South Carolina	Bill Wylie Entrepreneurship Act	2022년 시행
Vermont	Angel Venture Investment Capital Gain Deferral Credit	
Virginia	Qualified Equity and Subordinated Debt Investments Credit	
West Virginia	High Growth Business Investment Tax Credit	2022년 시행
Wisconsin	Angel Investor Tax Credit - Qualified New Business Venture	

자료: Angel Capital Association, <https://www.angelcapitalassociation.org/aca-public-policy-state-program-details/>,
검색일자: 2022. 5. 19.

가) 뉴욕²⁵⁾

- 뉴욕주는 QETC(Qualified Emerging Technology Companies) 제도를 통해 인증된 신규 테크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4년 미만 QETC에 대한 적격투자의 경우 투자금의 10%(연 15만달러 한도), 9년 미만 QETC에 대한 적격투자의 경우 투자금의 20%(연 30만달러 한도)를 주정부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²⁶⁾

25) 뉴욕주 정부, https://www.tax.ny.gov/pit/credits/qetc_capital.htm 검색일자: 2022. 5. 23.

26) 뉴욕주 정부, "Instructions for Form DTF-622"

- 이월공제세액은 당초 공제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개인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세액공제액의 환급을 허용하지 않지만 세액공제의 이연은 무제한으로 허용됨
- 투자대상 기업은 뉴욕주에 위치한 회사로 연간 총매출이 1천만달러 이하이고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²⁷⁾
- 뉴욕주에서 다음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해야 함
 - 첨단 소재 및 가공 기술
 - 엔지니어링, 생산 및 방위
 - 전자 및 광자 장치 및 구성 요소
 - 정보통신기술
 - 생명공학 및 나노기술
 - 재제조 기술
 - 뉴욕주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연구개발 비용이 기업의 순매출액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야 함
- 투자자 요건은 다음과 같음
- Tax Law Articles 9-A에 의해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
 - 개인투자자, 파트너십의 파트너, New York S법인의 주주 등을 포함하는 개인
 - 주정부에 법인등록을 하면 기본적으로 C법인이 되며, 이를 S법인으로 전환하려면 75일 이내에 IRS에 신청해야 함
 - 상법상의 모든 권리의무에 대하여는 C법인과 동일하지만, 세법적으로는 달리 취급된다는 점이 특징임(상법상으로는 주식회사, 세법상으로는 파트너십)

나) 뉴저지²⁸⁾

- 뉴저지주는 엔젤투자자세액공제(Angel Investor Tax Credit) 제도를 통해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y) 관련 적격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27) NYC, <https://www1.nyc.gov/nycbusiness/description/qualified-emerging-technology-company-certification-and-capital-tax-credit>, 검색일자: 2022. 5. 23.

28) 뉴저지주 정부, <https://www.njeda.com/angeltaxcredit/>, 검색일자: 2022. 5. 23.

- 소득공제는 투자금의 20%(연 50만달러 한도)로 특정 기업(소수민족, 여성, 특정 지역 소재)에 대해서는 5%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액의 환급을 허용하며, 개인의 경우 세액공제의 이연이 허용되지 않지만 법인의 경우 세액공제의 이연은 15년으로 허용됨
- 단, 법인투자자가 합병대상이 되거나 인수대상이 되는 해에는 합병(인수) 추진 기업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한 이월공제가 불가능함
- 주정부가 승인할 수 있는 소득공제 총금액은 연 3,500만달러로 소득공제 신청의 총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대로 다음연도에 처리됨

□ 투자대상 기업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정규직 직원이 225명 미만이고, 직원의 75% 이상이 뉴저지에 근무해야 함
- 뉴저지에서 사업활동을 하거나 자본을 소유하거나 사무실을 유지해야 함
- 뉴저지에서 다음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해야 함
 - 적격 연구비 지출
 - 파일럿 스케일(pilot scale)의 제조
 - 첨단 컴퓨팅, 첨단 자재, 바이오테크놀로지, 전자장치, 정보기술, 생명과학, 의료장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재생에너지기술 및 탄소발자국 저감기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의 상업화
- 주요 사업으로 상기 적격 기술 중 한 가지 이상을 보유

□ 투자자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엔젤투자자는 개인 또는 법인이 가능
- 적격투자자는 뉴저지 주의 적격 기술 기업에 환불되지 않는 현금이 적격 형태(주식 및 합작투자의 지분 취득, 기술이전, 마케팅 권리, 구매, 생산, 연구개발 계약 등)로 이전되어야 함
- 현금이 이전되는 적격 형태는 최소 2년간 유지되어야 함
- 단, 증권시장 상장, 인수합병, 투자자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의 발생 등으로 환불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다) 버지니아²⁹⁾

- 버지니아주는 QESDC(Qualified Equity and Subordinated Debt Investments Credit) 제도를 통해 적격 지분 및 후순위 채권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적격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50%(연 5만달러 한도)를 주정부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개인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세액공제액의 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세액공제의 이연은 15년으로 허용됨

- 투자대상 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직전 회계연도 총소득이 300만달러 이하
 - 버지니아주에 본사 또는 시설 소재
 - 주로 버지니아 내에서 사업활동을 하거나 모든 생산을 수행해야 함
 - 회사의 총자산이 300만달러 이하(공인 은행 및 상업 대출 제외)
 - 주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종사해야 함
 - 첨단 컴퓨팅, 첨단 자재 및 제조, 농업기술, 생명과학, 전자장치 기술, 에너지, 환경 기술, 정보 기술, 의료장비 기술, 나노 기술 등 관련 규정(Virginia Tax)에 의해 해당되는 것으로 유사한 기술 관련 분야

- 지분(equity)은 기업의 경우 보통주 또는 우선주를, 유한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의 수익,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 회원의 수익에 대한 소유권이며,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라) 콜로라도³⁰⁾

- 콜로라도주는 AIITC(Advanced Industry Investment Tax Credit) 제도를 통해 선진산업 분야의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29) 버지니아주 정부, <https://www.tax.virginia.gov/business-development-credits#qualified-equity-subordinated-debt-investments-credit>, 검색일자: 2022. 5. 23.

30) 콜로라도주 정부, <https://oedit.colorado.gov/advanced-industries-investment-tax-credit>, 검색일자: 2022. 5. 23.

- 적격사업에 20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25%(연 5만달러 한도)를 주정부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콜로라도 기업특구(Colorado enterprise zone)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투자금의 30%까지 적용됨
- 세액공제액의 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세액공제의 이연은 5년으로 허용됨
- 주정부가 승인할 수 있는 소득공제 총금액은 연 75만달러로 소득공제 신청의 총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대로 다음연도에 처리됨

□ 투자대상 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법인, 파트너십, LLC 또는 기타 사업체(개인은 자격 없음)
- 첨단 제조, 항공우주, 생명과학, 전자, 에너지 및 천연자원, 인프라엔지니어링(infrastructure engineering) 및 정보 기술에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콜로라도에 본사 소재 또는 직원의 50% 이상이 콜로라도에 근무할 것
- 콜로라도 국무장관에 등록되어 있으며 설립 및 존속 상태(good standing)일 것
- 사업개시 후 제3자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 규모가 1천만달러 미만일 것
- 연매출 500만달러 미만일 것
- 투자시점 기준 업력이 5년 이내로 수익창출이 있을 것

□ 투자자 요건은 다음과 같음

- 개인, LLC, 파트너십, S법인을 포함하는 적격 법인에 해당해야 함(C법인은 적격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피투자 회사 이외의 다른 고용주 식별번호 또는 납세자 ID를 보유할 것
- 보통주, 우선주, 파트너십 지분, LLC 지분, 지분증권 또는 전환사채에 투자
- 최소 10만달러 투자
- 투자 직전 계열사 합병 시 30% 미만의 의결권 보유, 투자 직후 계열사 합병 시 50% 미만의 의결권 보유

나. 캐나다

1) 벤처지원제도 개요

- 캐나다는 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존재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세제혜택보다 주정부 차원의 세제혜택 위주
 - 법인투자자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존재함
 - 일반법인에 주별 적격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함
 - 투자조합 등의 경우, 도관이론에 따라 취급하여 과세되지 않으며, 미국세법에서 사용하는 pass-through entity라는 용어와 다르게 flow-through entity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동일한 개념임
 -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양도소득세 공제, 배당세액공제 등의 다양한 과세특례를 제공함
 - 캐나다 연방정부는 개인투자자에게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의 주식지분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공제 및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를 제공
 - 별도로 주정부마다 개인투자자에게 적격기업에 대해 다양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나, 주별로 적격기업의 기준이 다름
 - 연방정부 차원의 법인투자자(일반법인)와 개인투자자를 위한 벤처투자 세액공제 제도인 노동단체로부터 지지되는 중소벤처기업 투자세액공제(Labour Sponsored Venture Capital Corporation Tax Credit)의 경우 2017년에 폐지됨
 - 배당세액공제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모두 제공되고 있으나 해당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적격기업은 벤처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캐나다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캐나다에서 벤처투자가 가장 활발한 온타리오와 퀘벡주는 다른 주와 달리 직접적인 세금 인센티브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온타리오주의 경우 벤처투자를 증폭시키기 위해 투자자에게 자료(resources)를 제공해주는 정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의 엔젤그룹 네트워크는 활발히 활동하며 정부 지원을 멤버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퀘벡주의 경우 벤처투자자를 위한 직접적인 세금 인센티브제도는 없으나, 퀘벡정부에서 Investissement Québec이라는 투자회사를 퀘벡에 기반을 둔 기업 및 국제 기업의 퀘벡 투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음
 - Investissement Québec이 벤처투자자와 퀘벡 내 등록된 벤처투자 관련 펀드들을 퀘벡 내 벤처기업들과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2) 연방정부의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³¹⁾

- 연방정부에서 벤처 개인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세제지원은 없으나, 좀 더 포괄적인 제도하에서 세제혜택이 존재함
 - 소득세법(ITA)에 따른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의 개별 주주는 다음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특정 활동 및 최소 2년간 보유한 자산조사(asset test)를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 매각에 대한 잠재적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면제
 - 배당소득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세금유예(tax deferral) 혜택

3) 주별 벤처투자 세제지원제도

가) 브리티시 콜롬비아³²⁾

- 온타리오와 퀘벡주 다음으로 가장 엔젤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주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로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 모두 투자금액의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019년 2월 19일 개인투자자의 공제한도를 기존 6만캐나다달러에서 12만캐나다달러로 두 배 인상한바 있음

31) Practical Law UK,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0-500-8581?originationContext=document&transitionType=DocumentItem&contextData=\(sc.Default\)&ppcid=515f5c9e9b464e38b26f80bca6a8072e&comp=pluk#co_anchor_a431421](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0-500-8581?originationContext=document&transitionType=DocumentItem&contextData=(sc.Default)&ppcid=515f5c9e9b464e38b26f80bca6a8072e&comp=pluk#co_anchor_a431421), 검색일자: 2022. 6. 16.

32)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 <https://www2.gov.bc.ca/gov/content/employment-business/investment-capital/venture-capital-programs/venture-capital-corporation/tax-credits>, 검색일자: 2022. 5. 9.

-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EBC(Eligible Business Corporation) 제도는 세액공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제공되고 있음
 - 2017년부터 중소기업 벤처캐피털 세액공제 예산이 3,500만캐나다달러에서 3,850만캐나다달러로 10%가량 인상하여 매년 1,170만캐나다달러가 적격 사업자에 대한 자기자본이 추가로 증가될 수 있음³³⁾

-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벤처캐피털법인(VCC) 또는 적격기업(EBC)에 대한 투자자는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공제액은 투자자별로 상이함
 - 개인투자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음
 -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
 - 연간 최대 공제액은 12만캐나다달러임³⁴⁾
 - 새해 기준 60일 내 투자하는 경우 전년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함
 - 일반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존재
 - 환급이 불가능한 세액공제 혜택
 - 연간 최대 공제액 한도가 없음
 - 위의 두 경우 모두 세액공제 이월이 4년 동안 가능하며, 5년 이상 보유 요건이 존재함³⁵⁾
 - 적격기업이 Venture Capital Program으로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캐나다달러가 최대임

- 투자대상 기업은 자기 자본 2만 5천캐나다달러 이상의 기업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해야 함³⁶⁾
 - 계열사를 포함하여 종업원이 100명 미만일 것
 - 직원의 75% 이상이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근무할 것
 - 제조업, 관광업, R&D 관련업, 브리티시 콜롬비아 내에서 양방향 디지털 뉴미디어 제품 개발에 해당하는 사업활동 중 하나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함
 - 단, 양방향 디지털 뉴미디어 제품 개발의 경우 반드시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33) 브리티시 콜롬비아 「Small Business Venture Capital Act」 제21조

34) 브리티시 콜롬비아 「Small Business Venture Capital Act」 제20조 제3항

35) 브리티시 콜롬비아 「Small Business Venture Capital Act」 제28.91장

36) 브리티시 콜롬비아 「Small Business Venture Capital Act」 제10조 내지 제28.2조

- 교육, 정보, 또는 오락을 제공하고 문자, 음성, 시각 이미지 매체들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을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
- 제품이나 서비스의 홍보와 관련하여 기업 내부 사용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닐 것
-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 인증 당국의 의사에 따라 제품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이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제품이 아닐 것

나) 매니토바

- 매니토바주의 SBVCTC(Small Business Venture Capital Tax Credit) 제도는 한 투자자당 최소 1만캐나다달러의 투자가 가능한 순자산 가치가 높은 개인투자자 혹은 법인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받길 원하는 매니토바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함³⁷⁾
- 투자대상 기업은 매니토바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캐나다 소유 기업(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해야 함³⁸⁾
 - 연매출 1,500만캐나다달러 미만 또는 정규직 직원이 100명 미만
 - 직원의 25% 이상이 매니토바에 근무할 것
- SBVCTC 제도를 이용하는 엔젤투자자는 매니토바 주의 세금의 45%의 환불 불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³⁹⁾
 - 최대 세액공제는 22만 5천캐나다달러로, 1년 동안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는 12만캐나다달러임
 - 사용하지 않은 세액공제는 다음 10년까지 이월하거나 이전 3년까지 이월 가능함
- 회사는 발행된 주식에 대해 평생 한도가 1천만캐나다달러이며, 투자자는 회사당 최대 50만캐나다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음⁴⁰⁾

37) 매니토바주 정부, <https://www.gov.mb.ca/jec/busdev/financial/sbvctc/>, 검색일자: 2022. 5. 11.

38) 매니토바주 정부, <https://www.gov.mb.ca/jec/busdev/financial/sbvctc/>, 검색일자: 2022. 5. 11.

39)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corporations/provincial-territorial-corporation-tax/manitoba-provincial-corporation-tax/manitoba-small-business-venture-capital-tax-credit.html>, 검색일자: 2022. 5. 11.

〈표 III-2〉 매니토바주의 중소기업 벤처캐피털 세액공제제도(SBVCTC)

	Credit rate	Yearly maximum earned	Yearly maximum applicable	Annual/lifetime investment limit
2021년 4월 6일 이후부터 2023년 이전에 발행된 주식	45%	\$225,000	\$120,000	\$500,000
2014년 6월 11일 이후부터 2021년 4월 7일 이전에 발행된 주식	45%	\$202,500	\$67,500	\$450,000
2014년 6월 12일 이전에 발행된 주식	30%	\$135,000	\$45,000	\$450,000

자료: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corporations/provincial-territorial-corporation-tax/manitoba-provincial-corporation-tax/manitoba-small-business-venture-capital-tax-credit.html>, 검색일자: 2022. 5. 11.

다) 뉴브런즈윅

- 뉴브런즈윅(NB)주는 중소기업 개인투자자 투자세액공제(Small Business Investor Tax Credit)와 중소기업 법인 투자세액공제(New Brunswick Small Business Investor Tax Credit)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해당 제도는 뉴브런즈윅주의 적격 중소기업 또는 지역사회경제개발기업(CEDC) 또는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됨
- 투자대상 기업은 뉴브런즈윅주의 적격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해야 함⁴¹⁾
 - 민간기업(Private Company)으로 뉴브런즈윅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또는 등록되어야 함
 - 회사는 무액면 주식제도를 도입할 것
 - 회사의 총자산이 4천만캐나다달러 이하로 회사 자산과 수입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뉴브런즈윅에서 적격사업에 사용해야 함
 - 직원의 75% 이상이 뉴브런즈윅에 근무할 것

40) 매니토바주 정부, <https://www.gov.mb.ca/jec/busdev/financial/sbvctc/>, 검색일자: 2022. 5. 11.

41) 뉴브런즈윅주 정부, <https://www2.gnb.ca/content/gnb/en/departments/finance/taxes/credit/program.html>, 검색일자: 2022. 5. 11.

-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최대 125,000캐나다달러)의 비환급 소득 공제를 제공하며, 기업 및 적격투자자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15%(최대 75,000캐나다달러)의 비환급 법인세 소득공제를 제공함⁴²⁾
 - 사용하지 않은 세액공제는 다음 10년까지 이월하거나 이전 3년까지 이월 가능함
 - 지역사회경제개발기업(CEDC)의 경우 기업당 연간 최대 300만캐나다달러의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한이 존재함

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주는 주식매입세액공제(Share Purchase Tax Credit)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투자대상 기업은 전략적 부문(strategic sectors)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해야 함⁴³⁾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또는 등록되어야 함
 - 수출 중심의 제조업, 정보통신기술업, 항공우주업, 생명과학, 재생에너지 등 신기술 관련 분야의 기업에 한함
 - 직원의 75% 이상이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에 근무할 것
-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연간 35%의 엔젤투자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음⁴⁴⁾

다. 영국

1) 벤처지원제도 개요⁴⁵⁾

- 영국은 비상장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자금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제도가 있으며, 주로 개인투자자의 세제혜택이 대부분임

42) 뉴브런즈윅주 정부, <https://www2.gnb.ca/content/gnb/en/departments/finance/taxes/credit.html>, 검색일자: 2022. 5. 11

43)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정부, <https://www.princeedwardisland.ca/en/service/enriched-investment-tax-credit>, 검색일자: 2022. 5. 12.

44) Atlantic Canada Business Grants, <https://atlanticcanadabusinessgrants.com/tax-credit/share-purchase-tax-credit/>, 검색일자: 2022. 5. 12.

45)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raise-money-by-offering-tax-reliefs-to-investors>, 검색일자: 2022. 5. 2.

- 법인투자자의 경우,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혜택은 없으나 벤처캐피털 신탁에 대한 세제혜택이 존재함
- 영국의 벤처투자 관련 세제지원은 기업가투자지원제도(EIS), 초기기업 투자지원제도(SEIS), 벤처캐피털트러스트(VCT), 사회적기업 투자지원제도(SITR)가 있음
 -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SITR(Social Investment Tax Relief)는 직접투자, VCT(Venture Capital Trust)는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임
 - EIS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소기업, SEIS는 창업 후 2년 이내의 극초창기 소기업, SITR은 창업 후 사회적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임
 - VCT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소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신탁의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임

〈표 III-3〉 영국의 벤처지원제도

구분	투자대상기업
EIS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 투자시점에 총자산 £15백만 이하, 종업원 250명 이내, 상업적 판매 개시 후 7년 이내 비상장기업 ¹⁾
SEIS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 창업 후 2년 이내 기업으로서 투자시점에 총자산 £200,000, 종업원 25명 이내, 이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어야 함 ²⁾
SITR (Social Investment Tax Relief)	• 총자산 £15백만 이하, 종업원 250명 이내의 사회적기업 ³⁾
VCT (Venture Capital Trust)	• 총자산 £15백만 이하, 종업원 250명 이내, 상업적 판매개시 후 7년 이내인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한 벤처 캐피털신탁 ⁴⁾

주: 1. 연구개발이나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더 높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EIS 또는 VCT를 통해 투자받은 기업은 SEIS 적용 불가
 3. 사회적기업은 등록된 자선단체,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또는 공동체이익 증진 조합(community benefit society)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4. 벤처캐피털신탁은 영국 국세청의 승인하에 비상장회사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회사로 연구개발 또는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비상장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더 높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음
 자료: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tax-relief-for-investors>, 검색일자: 2022. 5. 2.

- (투자대상 기업 요건) 회사 또는 사회적기업은 영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적격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적격사업에 투자해야 하고, 투자 당시 비상장기업이어야 하며,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 아니어야 함
 - 또한 어떠한 계획을 선택하든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적격사업 요건) 적격사업으로 이어지는 모든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업이 적격해야 하며,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적격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석탄 및 철강 생산업
 - 농업 및 원예업
 - 임대업
 - 법률 및 금융 서비스업
 - 부동산개발업
 - 호텔업
 - 요양원 운영
 - 전기 및 열과 같은 에너지생산업
 - 가스 및 기타 연료생산업
 - 전기 수출업
 - 은행, 보험, 자금조달서비스업

- (조달금액 한도)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 개인별 투자금의 연간한도와 더불어 각 기업이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조달 가능한 최대금액 한도가 존재함
 - 회사가 일생 동안 조달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SEIS 투자는 150만파운드, SITR 투자는 150만파운드, EIS 및 VCT 투자는 1,200만파운드임
 - 단, 회사가 일정한 연구, 개발 및 혁신을 수행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높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법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 영국의 경우 일반 기업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는 없으나, 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원은 존재함

- 영국의 벤처캐피털신탁(VCT)은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1995년 도입된 상장 투자회사임
 - VCT는 보통주 투자 중심의 지분형 투자기구로 운용되고 있음

벤처캐피털신탁(VCT)에서 발생한 소득과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허용한도 이내로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분배한 배당소득 또한 과세되지 않음

3)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⁴⁶⁾

(과세특례의 종류) 개인투자자가 벤처캐피털제도를 이용하는 적격기업에 대해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캐피털신탁의 주식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음

- 적격기업 및 벤처캐피털신탁 투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대여나 채무상품 투자 시, 투자금 또는 대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 투자로 얻은 모든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자산매각 후 동 양도차익을 적격기업 또는 벤처캐피털신탁 주식에 재투자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이연 또는 세금감면

(신주취득 요건)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신주 발행 시,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해야 함

(과세특례 요건의 연동) 출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면 자동적으로 해당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보유기간 요건) SEIS, EIS, SISR상 적격기업 주식은 3년 이상, VCT(Venture Capital Trust) 주식은 5년 이상 보유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과세특례 신청기한) SEIS, EIS, SISR는 투자한 과세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 이후 최대 5년까지, VCT는 투자한 과세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 이후 최대 4년까지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함

46)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tax-relief-for-investors#tax-reliefs-you-can-claim>, 검색일자: 2022. 5. 2.

- (과세특례확인서의 발급) 투자자가 SEIS, EIS, SITR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적합증명서(compliance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함
 - 적합증명서에는 피투자회사가 해당 제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과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몇년간 보유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음

- (소득세 감면 실적) 2019~2020년 기간 중 VCT 투자자들은 2018~2019년과 비교하여 16% 감소한 5억 7,500만파운드의 투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청구함⁴⁷⁾
 - 소득세 감면을 청구한 VCT 투자자의 수는 2019~2020년 사이 11% 감소한 17,725명임⁴⁸⁾

가) 소득세 감면

- 개인이 적격기업이나 VCT의 신주에 투자할 경우, 출자금의 30% 내지 5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

- (소득세 감면 청구) EIS, SEIS, SITR 제도에 따라 적격기업의 신주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연도뿐 아니라 전년도(납세자가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년도에 투자한 것으로 보겠다고 선택한 경우)의 소득세에서 소급공제가 가능하나, VCT의 신주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연도의 소득세에서만 공제할 수 있음
 - 각 제도별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에 연간 한도가 존재함
 - 미사용 공제액은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VCT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신주투자뿐 아니라 구주 투자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면제함

47)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venture-capital-trusts-2021/venture-capital-trusts-statistics-2021#introduction>, 검색일자: 2022. 5. 2.

48)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venture-capital-trusts-2021/venture-capital-trusts-statistics-2021#introduction>, 검색일자: 2022. 5. 2.

〈표 III-4〉 영국의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적격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배당소득세 공제
	투자금 한도	감면율	
EIS	£ 1,000,000 ¹⁾	30%	×
SEIS	£ 100,000	50%	×
SITR	£ 1,000,000	30%	×
VCT	£ 200,000	30%	○

주: 1) 지식집약기업에 £ 1,000,000 이상 투자한 경우 £ 2,000,000

자료: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tax-relief-for-investors>, 검색일자: 2022. 5. 9.

나) 자본이득세 감면

① 자산매각 후 적격기업주식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자산매각 후 자산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EIS 또는 SITR상 적격기업 투자에 사용한 경우, 100만파운드 범위 내에서 자본이득세 과세이연이 가능함
 -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산양도일 1역년 전부터 3역년 후까지 기간 중 EIS 또는 SITR상 적격기업에 투자해야 함
 - 주식을 처분하거나 투자가 취소되거나 피투자기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이 가능함

- 자산매각 후 자산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SEIS상 적격기업 투자에 사용한 경우, 5만파운드를 한도로 자본이득세가 면제됨
 - 10만파운드 범위 내 투자금의 50%에 대해 자본이득세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감면액은 5만파운드임
 - 투자 전 자산을 양도할 필요는 없지만, 투자 전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면 투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연도에 자산을 매각해야 함

② 적격기업주식 등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 EIS, SEIS, SITR 중 하나의 제도를 통해 회사주식을 취득해 소득세 감면을 받은 엔젤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자본이득세가 면제됨

- VCT 주식에 투자하고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 자본이득세가 면제됨
 - 동 과세특례는 신주취득과 구주취득 모두에 적용됨

- EIS, SEIS, SITR의 경우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동 기간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상실함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한 경우
 - 피투자회사가 해당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피투자회사의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 피투자회사로부터 금전이나 기타 자산을 수취한 경우 또는 피투자회사로부터 대여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은 경우

③ 손실공제

- EIS 주식 양도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출자 시 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손실잔액을 통상소득과 상계할 수 있음
 - 손실공제는 주식을 매각한 과세연도 또는 그 이전 과세연도 소득과 상계할 수 있음

<표 III-5> 영국의 벤처투자자에 대한 자본이득세 감면

제도	자산매각 후 적격기업주식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양도 시 자본이득세 감면	양도차손의 소득통산 가능 여부
EIS	적격기업주식 등 투자금의 100%까지 과세이연 가능	소득세 감면을 받았으면 가능	○
SEIS	적격기업주식 등 투자금의 50% 세금감면(£50,000 한도)	소득세 감면을 받았으면 가능	○
SITR	적격기업주식 등 투자금의 100%까지 과세이연 가능	소득세 감면을 받았으면 가능	○ (대출금 제외)
VCT	해당사항 없음	가능	×

자료: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tax-relief-for-investors>, 검색일자: 2022. 5. 9.

라. 일본

1) 벤처지원제도 개요

- 일본은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 모두에게 벤처투자자와 관련하여 여러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 개인투자자는 투자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중 선택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주식 양도차익과 통산(通算)할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에 통산하지 못한 손실을 이후 3년간 순차적으로 주식양도 차익과 통산할 수 있음
 - 법인투자자에게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 일반법인의 경우,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하에서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에 출자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투자조합 등의 경우, 도관이론에 따라 취급하여 법인세 비과세

2) 법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⁴⁹⁾

- 일본은 대기업이 사업 혁신을 위해 스타트업에 출자했을 때 세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促進税制)”를, 스타트업에 투자한 개인이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엔젤세제(エンジェル税制)”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 2020년부터 시행된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는 2년간(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치로 적용기한을 2년간(202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함
 - 2020년 개정된 엔젤세제는 투자대상 기업 요건의 확대와 신청절차의 간소화를 주요 골자로 하며, 이는 2021년 1월 1일 투자 건부터 적용되고 있음
- 일본 국내기업 또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비상장 기업에 일정액 이상을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2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49) 일본 경제산업성,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keiei_innovation/open_innovation/open_innovation_zei.html, 검색일자: 2022. 6. 17.

- 적용대상은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으로 스타트업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목표로 하는 주식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법인, CVC가 출자하는 경우에 한함
 - 출자를 받는 신생 기업은 설립 10년 미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5년 미만)의 비상장 스타트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출자 요건은 대기업이 설립 10년 미만의 비상장 기업에 1억엔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로 개방형 혁신 요건(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要件)을 충족하는 투자이어야 함
 -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1,000만엔 이상, 해외 스타트업에 출자하는 경우는 5억엔 이상을 조건으로 함
 - 보유기간의 요건은 출자일이 2018년 3월 31일까지인 경우는 5년, 2008년 4월 1일 이후의 경우는 3년임
- 일본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법」에 의해 비상장 중소·중견 벤처기업에 투자한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 재산의 모든 조합원에 의한 공유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함(pass-through)⁵⁰⁾
- 동 법은 업무 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을 출자액으로 제한하는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투자자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의 자금 공급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과거 비상장 중소·중견 벤처기업에 투자한 투자조합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으로 설립되어 왔으나, 조합업무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조합원까지 출자액을 초과해 책임을 지게 되는 리스크(무한책임)가 존재하였음

3)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가) 엔젤세제의 요건 및 적용대상

- 엔젤세제의 대상요건은 중소기업과 개인투자자로 구분됨⁵¹⁾
- 중소기업 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 특정 주주집단으로부터 투자합계가 1/6 이상을 도입하고 있는 회사일 것

50) 일본 중소기업청, https://www.chusho.meti.go.jp/keiei/sogyo/2003/030226yuugen_gaiyou.htm, 검색일자: 2022. 6. 22.

51) 일본 중소기업청, <https://www.chusho.meti.go.jp/keiei/chiiki/angel/subject/index.html>, 검색일자: 2022. 5. 27.

- ② 대규모 법인(자본금 1억엔 초과 등) 및 당해 대규모 법인과 특수관계(자회사 등)에 있는 법인의 소유가 아닐 것
- ③ 미등록·비상장 주식회사로 미풍양속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아닐 것
- 개인투자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 엔젤자금을 불입하고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것
 - ② 대상기업이 동족회사인 경우 소유비율(주식비율 또는 의결권 보유 비율)이 큰 것으로부터 제3순위까지의 주식(그 친족이나 관계회사 등) 소유비율을 순차적으로 가산하여 그 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는 때에 주주가 아닐 것

□ 엔젤세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주식회사)은 「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 제2조의 제1호~제5호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을 말함

- 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공업용 벨트 제조업을 제외함

<표 III-6> 일본의 엔젤세제 대상 중소기업 요건

업종	자본금	종업원 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3억엔 이하	300명 이하
도매업	1억엔 이하	100명 이하
서비스업	5,000만엔 이하	100명 이하
소매업	5,000만엔 이하	50명 이하
고무제품 제조업	3억엔 이하	900명 이하
소프트웨어, 정보처리서비스업	3억엔 이하	300명 이하
여관업	5,000만엔 이하	200명 이하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 <https://www.chusho.meti.go.jp/keiei/chiiki/angel/subject/index2.html>, 검색일자: 2022. 5. 30.

나) 투자시점의 소득세 우대조치

□ 투자한 당해연도에 받을 수 있는 우대조치는 A와 B로 구분되며 우대조치 B의 요건은 A의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바, 엔젤투자자 입장에서 둘 중 유리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음⁵²⁾

52) 일본 중소기업청, <https://www.chusho.meti.go.jp/keiei/chiiki/angel/structure/index2.html>, 검색일자: 2022. 5. 27.

〈표 III-7〉 일본의 엔젤투자 우대조치(투자시점)

우대조치 A	우대조치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5년 미만의 기업 대상 투자 시¹⁾ -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액-2천엔]을 당해연도 총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이 되는 투자액의 상한선은 총소득금액의 40%와 1천만엔(2021년 1월1일 이후 800만엔 중 적은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10년 미만 기업 대상 투자 시 - 대상기업에 투자한 전액을 당해연도 다른 주식 등의 양도이익에서 공제 - 공제대상이 되는 투자액의 상한 없음 - 신청분리과세 중 소득세의 15%가 우대조치 대상(주민세의 5%는 제외)

주: 1) 기준일이 2017년 3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설립 3년 미만의 기업 대상 투자 시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 <https://www.chusho.meti.go.jp/keiei/chiiki/angel/structure/index2.html>, 검색일자: 2022. 5. 27.

□ 우대조치 A와 B는 투자대상 기업의 업력을 기준으로 엔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이 구분됨

〈표 III-8〉 일본의 엔젤세제 우대조치 A의 요건

업력	요건
1년 미만으로 최초 사업연도 미경과	연구자 또는 신사업활동종사자가 2명 이상이거나, 상근 임직원의 10% 이상
1년 미만으로 최초 사업연도 경과	연구직이나 신사업활동종사자가 2명 이상이거나, 상근 임직원의 10% 이상으로 직전기까지의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
	연구개발비 등(광고비, 마케팅비 포함)이 매출의 5%를 초과하고, 직전기까지의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
1년 이상~2년 미만	신사업활동종사자가 2명 이상이거나, 상근 임직원의 10% 이상으로 직전기까지의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
	연구개발비 등(광고비, 마케팅비 포함)이 매출의 5%를 초과하고, 직전기까지의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 매출성장률이 25%를 초과하고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
2년 이상~3년 미만	연구개발비 등(광고비, 마케팅비 포함)이 매출의 5%를 초과하고, 직전기까지의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
	매출성장률이 25%를 초과하고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
3년 이상~5년 미만	연구개발비 등(광고비, 마케팅비 포함)이 매출의 5%를 초과하고, 직전기까지의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 <https://www.chusho.meti.go.jp/keiei/chiiki/angel/subject/index2.html>, 검색일자: 2022. 5. 30.

<표 III-9> 일본의 엔젤세제 우대조치 B의 요건

업력	요건
1년 미만으로 최초 사업연도 미경과	연구직이나 신사업활동종사자가 2명 이상이거나, 상근 임직원의 10% 이상
1년 미만으로 최초 사업연도 경과	연구직이나 신사업활동종사자가 2명 이상이거나, 상근 임직원의 10% 이상
	연구개발비 등(광고비, 마케팅비 포함)이 매출의 3%를 초과
1년 이상~2년 미만	신사업활동종사자가 2명 이상이거나, 상근 임직원의 10% 이상
	연구개발비 등(광고비, 마케팅비 포함)이 매출의 3%를 초과
	매출성장률이 25%를 초과
2년 이상~5년 미만	연구개발비 등(광고비, 마케팅비 포함)이 매출의 3%를 초과
	매출성장률이 25%를 초과
5년 이상~10년 미만	연구개발비(광고비, 마케팅비 포함)이 매출의 5%를 초과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 <https://www.chusho.meti.go.jp/keiei/chiiki/angel/subject/index2.html>, 검색일자: 2022. 5. 30.

다) 매각시점의 소득세 우대조치⁵³⁾

-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주식 양도차익과 통산(通算)할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에 통산하지 못한 손실을 이후 3년간 순차적으로 주식양도 차익과 통산할 수 있음
 - 대상기업이 상장하지 않고 파산, 해산 등을 하여 주식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년간 순차적으로 손실금액을 이월할 수 있음
 - 대상기업에 투자한 해당 연도에 투자시점의 소득세 우대조치(A, B)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공제대상 금액을 취득가격으로부터 공제해 매각 손실을 산정함
 - 2000년 4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취득한 주식에 한해서는 투자한 날 다음날부터 3년 이상 해당 주식을 보유한 후, 그 주식을 매각한 경우(대상기업의 주식을 상장 후 매각한 경우는 상장일부터 3년 이내)에는 양도이익의 50%만 과세해도 됨

53) 일본 후생노동성, <https://angel-tax.tokyo/zeiyugu.php>, 검색일자: 2022. 5. 30.

마.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벤처투자와 관련하여 주로 개인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개인투자자는 투자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함
 - 법인투자자의 경우 일반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은 없으며, 투자조합 등의 경우 도관이론에 따라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존재

- 엔젤투자법에 해당하는 「2011~2020 Economic Policy Law」의 Section 20의 개정을 통해 자국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적격 엔젤투자자의 조건은 개인뿐만 아니라 파트너십(partnership)까지 확대하였으며, 주식의 취득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적격 기업당 최대 500만세켈(NIS) 한도 내에서 투자주식을 수혜기간 동안 보유하면 투자금액의 10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⁵⁴⁾
 - 투자시점 연도를 포함하여 3년의 기간을 수혜기간(Benefit Period)이라고 부르며, 소득공제는 수혜기간 동안 나누어 신청할 수 있음
 - 보유주식을 매각할 때 매각차익(매각 시 가치 - 주식취득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공제받은 혜택을 주식취득 비용에서 차감함으로써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시 이중혜택을 방지함⁵⁵⁾
 - 자본이득세율은 25%인 반면, 소득세율은 45%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제 혜택은 상당한 수준임

-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2022년 4월 발표한 스타트업 초기단계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25%, 최대 3,500만세켈(NIS)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조치 개정안을 마련 중임⁵⁶⁾
 - 투자액이 1,200만세켈(NIS) 미만이고 연간 수익이 1,200만세켈(NIS) 미만인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⁵⁷⁾

54) Nimrod Yaron&co., <https://y-tax.co.il/en/angels-law/>, 검색일자: 2022. 5. 16.

55) Nimrod Yaron&co., <https://y-tax.co.il/en/angels-law/>, 검색일자: 2022. 5. 16.

56) 이스라엘 재무부, https://www.gov.il/he/departments/news/press_03042022c, 검색일자: 2022. 6. 17.

57) Globes, <https://en.globes.co.il/en/article-govt-proposes-new-tax-breaks-for-early-stage-startup-investment-1001407976>, 검색일자: 2022. 5. 16.

- 적격기업은 기존의 타깃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스라엘 혁신청(Israeli Innovation Authority)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조건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표 III-10> 이스라엘의 벤처지원제도

구분	내용	비고
타깃기업 (Target Company)	- 투자자의 연례보고서(annual report)에서 비용으로 간주됨에 따라 절세 혜택이 있음	- 2012년 제정
스타트업 기업 (Start-up Company)	- 스타트업 기업의 요건과 승인절차가 간편함 - 연간승인(Annual approval) 및 회사책임(Company responsibility) 제도를 통해 모든 책임을 회사가 부담함	- 2016년 개정

자료: auren, <https://auren.com/il/blog/tax-benefits-for-private-investors-in-innovation-israeli-angels-law/>, 검색일자: 2022. 5. 16. 검색일자: 2022. 5. 16.

- 타깃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⁵⁸⁾
 - 이스라엘 내에서 운영하고 지배되어야 함
 - 수혜기간 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아야 함
 - 수혜기간 내에 최소한 투자받은 금액의 7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해야 함
 - 연구개발 비용이 기업의 전체비용 대비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야 함
 - 수혜기간 동안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의 최소 75%가 이스라엘 내에서 지출되어야 함
 - 기업이 투자를 유치한 당해연도와 다음 연도에는 기업 수입이 연구개발 비용의 50%를 넘을 수 없음

- 스타트업 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⁵⁹⁾
 - 투자시점에 업력 48개월 이내이고, 이스라엘 내에서 운영하고 지배되어야 함
 - 회사의 매출액은 투자시점 이전에 연간 200만세켈(NIS) 또는 누적 매출액 4,500만 세켈(NIS) 이내일 것
 - 지출액은 투자시점 이전에 연간 300만세켈 또는 누적 지출액 1,200만세켈 이내일 것

58) SRK, <https://kronengold.com/israels-angels-law/>, 검색일자: 2022. 5. 16.

59) SRK, <https://kronengold.com/israels-angels-law/>, 검색일자: 2022. 5. 16.

- 회사의 현금은 투자시점에 엔젤투자 금액을 포함하여 총액 1,200만셰켤(NIS) 이내일 것
- 연구개발 비용이 기업의 전체비용 대비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야 함
- 수혜기간 동안 기업의 주된 활동은 연구개발에서 나오고, 개발된 지식재산권을 소유해야 함
- 기업의 비용지출이 주로 이스라엘 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IV. 타당성 분석



IV. 타당성 분석

1. 개요

- 이번 장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이하 “창투조합 비과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법인 과세특례”)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개인 소득 공제”), 이들 조세특례를 통칭할 경우에는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 분석하기로 함
 - 타당성의 평가기준은 정부 역할의 적절성 및 제도설계·운영의 적절성으로 구분됨

- 먼저, 정부 역할의 적절성은 정부 개입의 타당성 및 정책수단의 적절성의 관점에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을 고찰함
 - 구체적으로, 정부 개입의 타당성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특정한 영역의 경제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함
 - 정책수단의 적절성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조세지원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제적 근거를 고찰함

- 다음으로, 제도설계·운영의 적절성은 정책목표의 적절성, 정책대상의 적절성, 제도 운영의 적절성 및 타 제도와 중복성 관점에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을 고찰함
 - 구체적으로, 정책목표의 적절성은 창투조합 비과세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이 전체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의미있고 조화로운 정책목표로 설정되었는지를 판단함
 - 정책대상의 적절성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특정한 영역의 경제활동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외부효과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등과 같은 경제적 필요성과 함께 국가 전체의 성장기반 확대 및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함

- 제도운영의 적절성은 정책목표와 정책대상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적 문제점들에 대해 분석하고 고찰함으로써 제도 운영상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타 제도와 중복성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적용하는 창투 조합 비과세 등과 별도로 정부가 예산지원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다른 지원제도를 고려해서 중복지원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및 그 적절성에 대해 분석함
- 이와 같은 타당성 분석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한 관련 제도 등의 분석과 함께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기로 함
- 즉, 문헌분석을 통해 제도적 측면의 정책적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혜자들의 인식 정도와 함께 제도 설계상의 문제점 등을 확인함으로써 창투조합 비과세 등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2. 정부 역할의 적절성

가. 정부 개입의 적절성

- 정부의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창투조합 비과세의 도입 목적은 “기관투자자의 지속적인 조합출자 참여 유도를 통해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임
- 또한, 「조특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법인 과세특례의 도입 목적은 “벤처기업의 자본확충 지원”이고, 「조특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개인 소득공제의 도입 목적은 “벤처투자시장의 저변 확대 및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임
 - 벤처·창업 생태계는 투자자, 전문 출자자 및 전문 조합의 다양한 구성에 의한 투자방식에 따라 최종적인 투자대상에 생산적인 산업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적 경제발전에 필요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벤처투자의 활성화는 투자대상인

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한 생산·고용의 유발과 함께 세수를 증대시키는 직접적 효과와 함께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⁶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편익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벤처투자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들 벤처·창업 생태계의 참가자들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은 벤처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외부경제를 바탕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임
 - 즉,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한 생산·고용의 유발과 함께 세수를 증대시키는 기본적 성과와 함께 혁신적 기술의 발전 및 대기업과 신생기업 간의 동반성장 강화에 의한 경제적 활력의 제고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등의 부가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효과 발생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인 벤처·창업 생태계 참가자들 대신 일반 국민이 효익을 얻는 것은 벤처투자의 활성화가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을 가지고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직·간접적인 벤처투자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는 것임
 - 즉, 벤처투자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창투조합 비과세는 전문 출자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기금운용법인 등, 이하에서 이들을 통칭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창투회사 등”)가 직접 또는 전문투자자인 “창투조합 등”(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을 통해 「조특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다양한 출자방법으로⁶¹⁾ 출자대상인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자 및 코넥스상장기업(이하 “창업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법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창투회사 등을 제외한 일반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창투조합 등을 통해 최초출자방법 및 유상증자방법으로 창업기업 등의 투자대상에⁶²⁾ 출자함으로써

60)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으로 종전의 인적·물적 자본과 구분해서 “사회구성원의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조건 또는 특성”이나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조정 과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조직의 특성”으로 정의됨

61) 「조특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자방법은 아래와 같음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며, 개인 소득공제는 거주자가 창투조합 등에⁶³⁾ 출자하는 경우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등,⁶⁴⁾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특정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출자·투자액의 10%를⁶⁵⁾ 소득공제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벤처투자의 과정에서 외부경제가 유발되어서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한계비용(SMC)보다 그 비용부담자인 벤처·창업 생태계 참가자들의 사적 한계비용(PMC)이 더 커지게 됨(PMC>SMC)

○ 외부효과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의 생산자인 벤처·창업 생태계 참가자들의 사적인 한계편익(PMB)과 사적인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PMB=PMC) 수준까지만 벤처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결국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비용(SMC)보다 큰 SMB>SMC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게 되는 것임

□ [그림 IV-1]에서 이러한 효과의 생산자인 벤처·창업 생태계 참가자들이 외부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사적 벤처투자의 수준(PMB=PMC)은 Q₀인데 이것은 외부경제까지

<중소기업창투회사 등의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방법(『조특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 ① 출자대상 창업기업 등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이하 “최초출자방법”)
- ② 출자대상 창업기업 등이 설립된 후 7년¹⁾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이하 “유상증자방법”)
- ③ 출자대상 창업기업 등이 설립된 후 7년¹⁾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이하 “무상증자방법”)
- ④ 출자대상 창업기업 등이 설립된 후 7년¹⁾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하 “출자전환방법”)
- ⑤ ②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창업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이하 “개인취득방법”²⁾)

주: 1.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1) 출자대상이 코넥스상장기업인 경우에는 2년

2) 단, ②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함

62) 코넥스상장기업은 포함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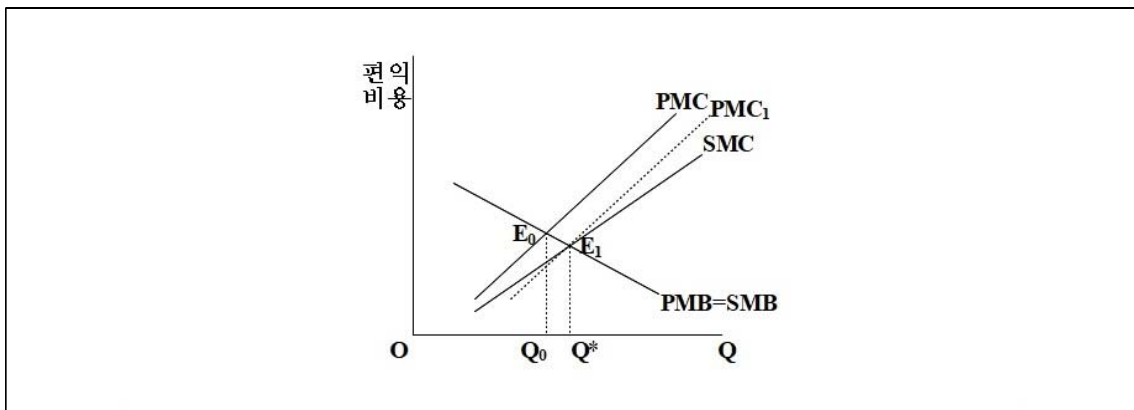
63) 개인투자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은 포함되지 않음

64)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경유하거나 경유하지 않은 경우의 투자를 모두 포함함

65) 벤처기업 등 및 특정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분,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및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각각 100%, 70% 및 30%의 공제율을 적용함

- 고려한 사회적 최적 벤처투자 규모(SMB=SMC)인 Q^* 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벤처투자의 수준을 사회적 최적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Q_0 \rightarrow Q^*$) 벤처·창업 생태계 참가자들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사적 한계비용을 감소시키도록($PMC \rightarrow PMC_1$, 균형점은 $E_0 \rightarrow E_1$) 유도하는 정책들이 필요한 것임

[그림 IV-1] 외부경제를 고려한 적정 벤처투자 수준



자료: 저자 작성

- 따라서, 이와 같이 벤처투자 과정에서 창출되는 외부경제에 대한 조세지원의 제공 필요성을 바탕으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벤처투자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한 정부 개입의 적절성 근거를 도출할 수 있는 것임

나. 정책수단의 적절성

- 앞선 절의 분석을 통해 벤처·창업 생태계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적절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일반적인 재정지원 대신 조세지원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해서 류덕현과 박기백(2012)⁶⁶⁾ 정리한 <표 IV-1>의 기준을 적용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체적인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이 더욱 타당한지에 대해 분석하도록 함

66) 류덕현·박기백(2012), 「재정지출과 조세지출간의 최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재정학회

<표 IV-1>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간의 선택기준

구분	재정지출	조세지출
수혜자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부담과 무관한 경우 - 취약계층 중심인 경우 - 수혜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 - 특정 수혜자만 혜택을 주고 싶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부담이 있는 수혜자 - 일반 계층 중심(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문제는 없는지 판단) - 시장이 존재하여 수혜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필요한 경우 -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경우 (다수 지원 목적)
보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대상이 다양하여 보조수준이 달라야 하는 경우 - 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우(생필품, 필수 비용인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대상이 단순하여 일률적 비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 -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퇴직저축, 건강보험 등)
보조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수준이 높은 경우 - 취약계층에 더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고 싶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 효율적인 대상에 더 높은 보조를 하고 싶은 경우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 한시적 지원(시범사업 성격이거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적·항구적 지원(예측가능성, 안정성이 필요한 경우)
지원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사전적 지원에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이후 지원에 적합
행정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점검, 결과확인 등이 필요하여 행정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 적합한 대상자 선정 등에 순응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 집행부서와의 밀착성으로 부정의 소지가 적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출 시 관여기관, 인원, 선정 절차 등이 매우 어려울 경우 - 적합한 대상자 선정 필요성이 낮은 경우 - 집행부서와의 밀착성으로 부정의 소지가 있는 경우
부작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소비,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사후적으로 수혜가 아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지원한도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소비, 부정사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사후적으로 수혜가 아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소규모 지원으로 정부 재정에 영향이 적은 경우

자료: 류덕현·박기백, 2012.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의 정책수단 선택과 관련한 <표 IV-1>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먼저 수혜자의 측면에서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의 수혜자들(투자자 및 전문 출자자, 이하에서 통칭할 경우에는 “투자자 등”)의 일련의 경제활동에서 명시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하고, 지원대상으로 별도의 취약 투자자 등을 구분하지 않으며, 창투조합 비과세 등을 적용받기 위해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조세지출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다음으로, 보조대상 및 보조수준의 측면에서는 투자자 등이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성공적인 경제활동으로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한 투자자 등에 대하여 더욱 큰 조세혜택이 제공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조세지출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지원기간 및 지원시점의 측면에서는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투자자 등의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중장기적 지원의 성격과 함께 이들 납세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측면을 고려하면 조세지출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다음으로, 행정집행의 측면에서는 개별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출의 경우에는 벤처투자의 활성화와 관련한 개별적 사정의 파악이 매우 어렵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부정사용 가능성도 큰 측면을 고려하면 조세지출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부작용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관청의 사후적 검증을 통해 부정사용의 가능성이 낮고, 일반적인 재정지원과 다르게 세법 규정을 통해 지원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조세지출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즉,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이상의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창투조합 비과세 등을 통해 조세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정책수단의 적절성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3.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가. 정책목표의 적절성

-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의하면 창투조합 비과세 등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을 정책목표로 함
-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이러한 정책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산업자금의 효율적 조달 및 이를 통한 벤처기업에 대한 만성적인 과소투자의 문제점의 해결의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음
 - 벤처기업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고, 이로 인해 높은 성장성과 고용창출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신뢰도의 부족으로 위험회피적 성향의 산업자본의 투자로 인한 과소투자의 시장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임⁶⁷⁾
 - 즉, 고위험·고수익의 산업 특성을 반영해서 벤처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낮은 업력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는⁶⁸⁾ 반면 우리나라 경제의 부족한 성장동력을 보충해서 잠재 성장률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들에 산업자금이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투자자 등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유인의 제공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창업기업 비과세 등의 조세지원에서는 정책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다음으로, 벤처기업들의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신규 자금조달액 중에서 정부의 정책자금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서 자발적인 민간의 비중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음
 - 즉, 중소벤처기업부(2021)에 의하면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조달액에서 정부의 정책자금이 65.8%를 차지해서 은행 등 일반금융(25.4%),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2.4%), 회사채 발행(0.9%) 및 IPO(0.2%) 등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실정이고, 이러한 경향은 업력이 낮은 벤처기업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정부자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운용 구조에 비효율적인 개입으로 정부실패의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민간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민간의 자금조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임
 - 이것은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필요한 재정지원에 비해 경제적 유인의 제공을

67) 김재진·기은선,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2016.

68)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21.

통해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조세지원이 보다 적절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한 전술한 분석과도 일치하는 것이고,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확대 등”을 통한 “순환 체계 강화”를 제시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도⁶⁹⁾ 부합하는 것임

나. 정책대상의 적절성

-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조세지원의 대상을 벤처·창업 생태계 참가자들인 투자자 등(투자자, 전문 출자자 및 전문 조합)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즉, 전술한 바와 같이 투자자 등은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식의 유형별로 구분한 개별 조세지원별로 별도로 규정되었고, 이러한 개별 유형은 사실상의 모든 자금조달 방식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성 및 완결성의 측면에서 정책대상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특히, 투자자 등에 해당하기 위해 전문투자자 및 전문 조합을 “창투조합 등” 및 “창업기업 등”으로 유형화해서 열거했고,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방법(최초출자방법, 유상증자방법, 무상증자방법, 출자전환방법 및 개인취득방법)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방만한 운영을 통한 조세지원의 악용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정책대상의 적절성 측면에서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단,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조세지원의 적용대상 업종 및 납세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정책대상을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먼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3조의 규정을 반영해서 창업 후 7년 이내면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유혹 및 사행성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조세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러한 측면을 반영해서 창업·벤처 관련 현행 조세특례들에서도 투자대상인 업종에 제한이 거의 없는 실정임
 - 그러나, 일부 적용배제 업종을 제외하고 조세지원을 전체 업종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신 취약·포화·강화업종 등으로 구분해서 개별 업종별 투자에 대한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조세지원의 효과

69)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2022. 6. 16.

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미세 조정(fine tuning)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조세혜택을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차등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

- 즉, 이러한 업종별 조세지원의 세분화를 통해 취약·필수 업종의 투자 증가와 함께 포화 업종의 투자 감소를 유도할 수 있고, 조세지원의 대상 업종의 편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임

□ 또한, 투자자 등이 특수관계인인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현행 조세법령상 창업·벤처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반영해서 정책대상을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하면 이혼이나 재혼으로 인해 변경된 관계와 함께 지배적 영향력의 기준인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30% 이상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창업·벤처 관련 조세특례를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조세지원의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서 사실상의 혼인을 매개로 한 친인척 관계를 적절하게 선별해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조세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투자자 등의 특성을 반영해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비율도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
- 즉, 이와 같이 조세혜택의 대상자인 투자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벤처투자자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악용하는 조세회피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고,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조세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임

다. 제도운영의 적절성

- 창투조합 비과세 등은 중소기업창투회사 등 및 투자자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거나(창투조합 비과세) 주식 취득가액 및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하는 것임(법인 과세특례 및 개인 소득공제)

- 먼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해 다양한 조세지원 방식 중에서 양도차익·배당소득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이들 수혜자들이 대부분 일반법인들과 다르게 소득의 대부분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 등의 일반적인 조세혜택의 실효성이 없는 특성을 반영해서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세지원의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즉, 특수목적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 및 주주 단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방식으로 법인 단계의 세금부담을 사실상 제거하기 위해 배당금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양도차익·배당소득의 비과세를 적용하면 소득공제보다 큰 과세소득에 대해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의 부담을 대부분 제거함으로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다 완전하게 일체의 과세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완결적인 조세혜택과 함께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더욱 기대할 수 있는 것임
- 다음으로, 한도액 내에서 개인 투자자의 주식 취득가액 및 법인 투자자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투자액의 일정 비율로 공제액을 규정한 것은 동(同) 취득가액 및 출자·투자액에 대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운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법인 투자자에 대한 5%의 세액공제는 벤처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고수익·고위험 투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위험한 투자를 기피하는 투자 환경에서 최소한의 기본 수익률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의 완화를 통해 벤처투자를 촉진시키는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또한, 개인 투자자에 대한 10%의 소득공제는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에서 충분한 과세소득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투자자에게 더욱 큰 절세효과가 발생해서 투자자를 선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한계세율이 높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10%의 소득공제율을 통한 (10%×한계세율)의 절세효과는 법인 투자자에 대한 5%의 세액공제율에 근접하기 때문에 역시 최소한의 기본 수익률의 보장으로 위험부담의 완화를 통해 벤처투자를 촉진시키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임

- 단,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구체적 시행과 관련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시장 실패 및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업종 및 경제적 가치가 유사한 투자대상들 중에서도 특정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비정상적 자금 운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면 집중적인 투자대상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 등의 투자·출자액에 대한 조세혜택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있음
 - 즉, 투자대상인 벤처기업에 대한 개별 투자자 등의 투자·출자액에 대하여 창투조합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대상금액의 한도액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비정상적 투자 집중의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등과 함께 투자대상인 벤처기업까지 포함해서 조세혜택의 한도를 제한하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이 창투조합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투자·출자액의 한도액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분산시켜서 국가 전체적으로 산업자금이 가장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추가적으로, 창투조합 비과세 중 양도차익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개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과 상이한 것을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예상하지 못한 사후적인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실무상 지적이 빈번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가급적 양자를 일원화해서 시장의 혼돈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
 - 즉, 이러한 적용대상의 차이는 창투조합 비과세에서 중소기업창투회사 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 출자시점에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정확한 투자비율을 알 수 없는 측면을 반영한 것이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벤처·창업 생태계에 투입되는 산업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자를 일원화하면서 실제 투자비율에 따라 사후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라. 여타 제도와의 중복성

-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개별 조세지원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조특법」 제132조에서 최저한세 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서 조세지원의 전체 한도 내에서는

과도한 중복지원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조특법」상의 개별적인 조세지원 항목들은 창투조합 비과세 등과 함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제13조의4),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4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조특법」 제16조의2) 및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조특법」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등이 있음
- 그러나, 이들 개별 조세지원 중에서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외하면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지원실적이 매우 작아서 일반적인 조세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세지원의 중복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의 전체적 체계에서 창투조합 비과세 등에서 규정하지 않은 투자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창투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조세지원을 보다 완결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보완적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조세지원의 중복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벤처·창업 생태계에서 최종적 지원대상인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제공과 별개로 조세지원의 대상자인 투자자 등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창투조합 비과세 등과 관련해서 여타 제도와의 중복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즉, 투자자 등에 대한 비조세혜택으로 위탁금 면제, 추가 용자 및 매칭투자 등이 있지만,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방식의 별도의 예산지원 항목은 발견하기 어렵고, 일반적 용도의 예산지원 항목의 경우에도 투자자 등이 지출하는 투자·출자액에는 부당적용으로 인한 사후적 불이익을 고려해서 적극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지원과의 중복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4.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가. 개요

- 이번 절에서는 창투조합 비과세, 법인 과세특례 및 개인 소득공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기로 함
 - 창투조합 비과세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이들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적이 있는 납세자(이하 “수혜자”)와 함께 이들 납세자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현재까지 이들 조세특례를 받은 적이 없는 납세자(이하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구체적인 설문조사 대상 표본의 구성은 <표 IV-2>와 같음
 - 75개의 설문조사 대상 표본의 세부적 구성은 <표 IV-3>과 같음

<표 IV-2> 설문조사 대상 납세자의 구성

(단위: 개, 명)

구분	수혜자				비수혜자	계
	①	②	③	소계		
창투조합 비과세	15(30.6%)	18(36.7%)	2(4.1%)	35(71.4%)	14(28.9%)	49
법인 과세특례	5(62.5%)				3(37.5%)	8
개인 소득공제	12(66.7%)				6(33.3%)	18
계	52(69.3%)				23(30.7%)	75

주: 1. 응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응답	내용
①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와 배당소득 비과세를 모두 받은 적이 있음
②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만 받은 적이 있음
③	배당소득 비과세만 받은 적이 있음

<표 IV-3> 설문조사 대상 표본의 세부적 구성

(단위: 개, 명)

구분		창투조합 비과세		법인 과세특례		개인 소득공제		계
		수혜자	비수혜자	수혜자	비수혜자	수혜자	비수혜자	
소득세법 상 지위	개인사업자	-	-	-	-	4	1	5
	비사업자	-	-	-	-	8	5	13
기업규모	중소기업	31	7	4	2	4	1	49
	중견기업	1	0	0	1	0	0	2
	대기업	2	0	1	0	0	0	3
	기타	1	7	0	0	0	0	8
상시 근로자 수	10명 이하	23	4	3	1	4	0	35
	11~30명	9	3	0	1	0	0	13
	31명 이상	3	7	2	1	0	1	14
연혁	10년 이하	21	8	3	2	2	1	37
	11~20년	8	3	1	0	2	0	14
	20년 이상	6	3	1	1	0	0	11

주: 개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자 중에서 「소득세법」상 지위가 개인사업자인 표본만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 이하의 구분을 적용함

나. 설문조사 결과

- 먼저,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IV-4>와 같이 전체의 65.2%가 개별 조세특례를 사전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나타남
 - 단, 법인 과세특례 및 개인 소득공제는 전체 비수혜자가 사전적으로 인지하는 반면 창투조합 비과세는 42.9%가 여기에 해당해서 중소기업창투회사 등의 조세특례의 인지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창투조합 비과세의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비인지 사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세법 내용이 복잡하고 업무에 적용하기 어려워서”(50%), “조세감면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사업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12.5%) 및 “조세감면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12.5%) 등으로 응답함⁷⁰⁾

70) “기타”로 응답한 표본(25%)은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는 않음

<표 IV-4> 개별 조세특례의 인지 여부(비수혜자 대상)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인지	비인지
창투조합 비과세	14	42.9%	57.1%
법인 과세특례	3	100.0%	0.0%
개인 소득공제	6	100.0%	0.0%
계	23	65.2%	34.8%

□ 다음으로, 수혜자 및 인지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인지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IV-5>와 같이 대다수의 표본이 투자대상(창업기업 등 및 창투조합·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전에 개별 조세특례를 사전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러한 분포는 수혜자의 여부에 따른 구분과 대체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5> 개별 조세특례의 인지 시기(수혜자 및 인지 비수혜자 대상)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41	80.5%	14.6%	4.9%	
	법인 과세특례	8	87.5%	0.0%	0.0%	
	개인 소득공제	18	66.7%	22.2%	11.1%	
	계	67	77.6%	14.9%	6.0%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35	80.0%	14.3%	5.7%
		법인 과세특례	5	100.0%	0.0%	0.0%
		개인 소득공제	12	58.3%	25.0%	16.7%
		계	52	76.9%	15.4%	7.7%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6	83.3%	16.7%	0.0%
		법인 과세특례	3	66.7%	0.0%	0.0%
		개인 소득공제	6	83.3%	16.7%	0.0%
		계	15	80.0%	13.3%	0.0%

주: 1. 응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응답	창투조합 비과세	법인 과세특례	개인 소득공제
①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결정 전에 알았음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결정 전에 알았음	창투조합·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결정 전에 알았음
②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결정 후 출자 준비과정에서 알게 되었음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결정 후 출자 준비과정에서 알게 되었음	창투조합·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결정 후 출자·투자 준비과정에서 알게 되었음
③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후에 알게 되었음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후에 알게 되었음	창투조합·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후에 알게 되었음

2. 비수혜자에 해당하는 1개의 법인 과세특례는 설문지의 객관식 문항과 무관하게 “창투조합결성시” 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 수혜자 및 인지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인지 경로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IV-6>과 같이 대다수의 표본이 동종 사업자나 다른 거주자들과의 비공식적 경로 또는 정부·공공기관의 홍보를 통해 개별 조세특례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러한 분포는 수혜자의 여부에 따른 구분과 대체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6> 개별 조세특례의 인지 경로(수혜자 및 인지 비수혜자 대상)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41	29.3%	46.3%	29.3%	12.2%	
	법인 과세특례	8	37.5%	25.0%	0.0%	62.5%	
	개인 소득공제	18	44.4%	50.0%	11.1%	11.1%	
	계	67	34.3%	44.8%	20.9%	17.9%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35	31.4%	51.4%	31.4%	5.7%
		법인 과세특례	5	40.0%	40.0%	0.0%	40.0%
		개인 소득공제	12	33.3%	50.0%	8.3%	8.3%
		계	52	32.7%	50.0%	23.1%	9.6%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6	16.7%	16.7%	16.7%	50.0%
		법인 과세특례	3	33.3%	0.0%	0.0%	100.0%
		개인 소득공제	6	66.7%	50.0%	16.7%	16.7%
		계	15	40.0%	26.7%	13.3%	46.7%

주: 1. 중복응답한 결과임

2. 응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응답	창투조합 비과세	법인 과세특례	개인 소득공제
①	정부나 공공기관의 홍보를 통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홍보를 통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홍보를 통해서
②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창투조합·벤처기업 등에 대해 출자·투자하는 다른 거주자로부터
③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④	기타	기타	기타

3. “④ 기타”의 사유로 창투조합 비과세에서는 “VC교육 및 선임자”, “관리교육 통해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및 “세법 연구를 통해”라고 응답했고, 법인 과세특례에서는 “벤처투자회사로서”, “교육연수”, “세법개정 사항 확인”, “고벤처포럼” 및 “직접 세법에서 확인”이라고 응답했으며, 개인 소득공제에서는 “지인” 및 “인터넷 검색”이라고 응답했음

- 다음으로, 인지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인지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IV-7>과 같이 적용요건 불충족이 가장 중요한 사유로 나타남

- 개별 조세특례별로 구분하면 법인 과세특례에서는 음(-)의 과세소득 및 세법 규정의 불확실성이 가장 중요한 사유이고, 개인 소득공제에서는 적용요건 불충족이 가장 중요한 사유로 나타남

<표 IV-7> 개별 조세특례의 비적용 사유(인지 비수혜자 대상)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창투조합 비과세	6	0.0%	16.7%	0.0%	16.7%	0.0%	16.7%	50.0%
법인 과세특례	3	0.0%	0.0%	33.3%	0.0%	0.0%	33.3%	33.3%
개인 소득공제	6	0.0%	50.0%	0.0%	16.7%	16.7%	0.0%	16.7%
계	15	0.0%	26.7%	6.7%	13.3%	6.7%	13.3%	33.3%

주: 1. 응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응답	창투조합 비과세	법인 과세특례	개인 소득공제
①	당시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가 시행되는 것을 알지 못해서	당시에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시행되는 것을 알지 못해서	당시에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것을 알지 못해서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③	주식양도차익 또는 배당소득에도 불구하고 전체 과세대상 소득이 “0”보다 크지 않아서 (전체 과세대상 소득이 “0”보다 컸지만, 이월결손금공제가 적용된 경우를 포함)	전체 과세대상 소득이 “0”보다 크지 않아서(전체 과세대상 소득이 “0”보다 컸지만, 이월결손금공제가 적용된 경우를 포함)	전체 과세대상 소득이 “0”보다 크지 않아서(전체 과세대상 소득이 “0”보다 컸지만, 이월결손금공제가 적용된 경우를 포함)
④	다른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아서(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서)	다른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아서(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서)	다른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아서(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서)
⑤	비과세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세액공제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소득공제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⑥	관련 세법규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비과세로 인한 조세감면액을 사후적으로 추징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해서	관련 세법규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액공제로 인한 조세감면액을 사후적으로 추징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해서	관련 세법규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감면액을 사후적으로 추징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해서
⑦	기타	기타	기타

2. “④ 기타”의 사유로 창투조합 비과세에서는 “주식양도를 한 적이 없음”, “담당 회계사의 의견으로 조합이 청산할 때 한번에 정리하자 등의 의견으로 당사의 실무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및 “요건 비해당”이라고 응답했고, 법인 과세특례에서는 “2년 기간 이내 예정”이라고 응답했으며, 개인 소득공제에서는 “2020년도에는 받지 않았지만 2021년도에 받았다”라고 응답했음

- 다음으로, 조사대상 연도인 2020년에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창투조합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개인 소득공제)의 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IV-8>과 같이 전체적으로 전부 간접투자, 혼합 투자 및 전부 직접투자의 순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단, 비수혜자의 경우에는 혼합투자의 비중이 전부 간접투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추가적으로, 혼합투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질문한 직·간접 투자의 상대적 비중을 바탕으로 전체 투자 중에서 직접투자의 비중을 계산하면 <표 IV-9>와 같이 전체 평균이 25.9%이고, 수혜자 및 비수혜자의 평균은 각각 28.8% 및 19.4%이며, 창투조합 비과세, 법인 과세특례 및 개인 소득공제의 평균은 각각 26.6%, 16.9% 및 28.1%로 나타남

<표 IV-8>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투자의 방식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전부 직접투자	혼합투자	전부 간접투자	출자·투자 없음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49	16.3%	32.7%	38.8%	12.2%	
	법인 과세특례	8	0.0%	25.0%	62.5%	12.5%	
	개인 소득공제	18	22.2%	16.7%	33.3%	27.8%	
	계	75	16.0%	28.0%	40.0%	16.0%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35	17.1%	34.3%	48.6%	0.0%
		법인 과세특례	5	0.0%	20.0%	80.0%	0.0%
		개인 소득공제	12	25.0%	25.0%	41.7%	8.3%
		계	52	17.3%	30.8%	50.0%	1.9%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14	14.3%	28.6%	14.3%	42.9%
		법인 과세특례	3	0.0%	33.3%	33.3%	33.3%
		개인 소득공제	6	16.7%	0.0%	16.7%	66.7%
		계	23	13.0%	21.7%	17.4%	47.8%

<표 IV-9> 전체 투자 중 직접투자의 비율

구분	전체	수혜자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26.6%	28.8%	21.1%
법인 과세특례	16.9%	17.0%	16.7%
개인 소득공제	28.1%	33.8%	16.7%
계	25.9%	28.8%	19.4%

- 다음으로, <표 IV-7>에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질문한 결과 <표 IV-10>과 같이 간접투자에 대한 지식 부족 및 낮은 수익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혜자의 경우에는 낮은 수익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비수혜자의 경우에는 지식 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0>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투자하지 않은 사유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14	21.4%	0.0%	50.0%	28.6%	
	법인 과세특례	1	0.0%	0.0%	100.0%	0.0%	
	개인 소득공제	9	55.6%	11.1%	22.2%	11.1%	
	계	24	33.3%	4.2%	41.7%	20.8%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6	50.0%	0.0%	33.3%	16.7%
		법인 과세특례	0	NA	NA	NA	NA
		개인 소득공제	4	100.0%	0.0%	0.0%	0.0%
		계	10	70.0%	0.0%	20.0%	10.0%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8	0.0%	0.0%	62.5%	37.5%
		법인 과세특례	1	0.0%	0.0%	100.0%	0.0%
		개인 소득공제	5	20.0%	20.0%	40.0%	20.0%
		계	14	7.1%	7.1%	57.1%	28.6%

주: 1. 응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응답	내용(공통)
①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투자하더라도 직접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충분히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②	창투조합 등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되어서
③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④	기타

- 2. “④ 기타”의 사유로 창투조합 비과세에서는 “법령 등 규제” 및 “예산의 절차에 따름”으로 응답했고, 개인 소득공제에서는 “2021년에 출자함”이라고 응답했음

- 다음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표 IV-8>에서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질문한 결과 <표 IV-11>과 같이 간접투자의 장점인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의 활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러한 분포는 수혜자의 여부에 따른 구분과 대체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11>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투자하지 않은 사유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25	12.0%	44.0%	8.0%	36.0%	
	법인 과세특례	6	0.0%	66.7%	16.7%	16.7%	
	개인 소득공제	11	0.0%	72.7%	18.2%	9.1%	
	계	42	7.1%	54.8%	11.9%	26.2%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17	17.6%	47.1%	11.8%	23.5%
		법인 과세특례	4	0.0%	100.0%	0.0%	0.0%
		개인 소득공제	6	0.0%	83.3%	16.7%	0.0%
		계	27	11.1%	63.0%	11.1%	14.8%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8	0.0%	37.5%	0.0%	62.5%
		법인 과세특례	2	0.0%	0.0%	50.0%	50.0%
		개인 소득공제	5	0.0%	60.0%	20.0%	20.0%
		계	15	0.0%	40.0%	13.3%	46.7%

주: 1. 응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응답	창투조합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개인 소득공제
①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하는 것이 직접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해서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투자하는 것이 직접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해서
②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해서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해서
③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성과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과다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④	기타	기타

2. “④ 기타”의 사유로 창투조합 비과세에서는 “출자재원 확보”, “전문가 부족 및 투자심의 문제”, “법령 등 규제”, “조합 투자가 목적인 회사임”, “예산상”, “조합운용을 위하여”, “LLC는 창투사와 달리 자본금이 적음”, “해당사항 없음” 및 “조합운용 및 수익창출에 집중”으로 응답했고, 법인 과세특례에서는 “자금소진”으로 응답했으며, 개인 소득공제에서는 “2021년에 출자”라고 응답했음

□ 다음으로, 조사대상 연도인 2020년에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투자하는 경우에 창투조합 등의 구체적 유형별로 전체 간접투자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질문한 결과 <표 IV-12>와 같이 벤처투자조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러한 분포는 개별 조세특례 및 수혜자의 여부에 따른 구분과 대체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 단, 개인 소득공제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2> 창투조합 등의 구체적 유형별 간접투자의 상대적 비중
(간접투자 납세자 대상)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35	0.6%	89.2%	8.3%	0.0%	1.9%	0.0%	
	법인 과세특례	7	10.0%	67.4%	7.0%	0.0%	5.6%	10.0%	
	개인 소득공제	9	92.8%	0.0%	0.0%	0.0%	0.0%	7.2%	
	계	51	18.8%	70.0%	6.7%	0.0%	1.3%	3.2%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29	0.4%	89.9%	9.3%	0.0%	0.3%	0.0%
		법인 과세특례	5	0.0%	71.8%	8.8%	0.0%	7.0%	12.5%
		개인 소득공제	8	91.9%	0.0%	0.0%	0.0%	0.0%	8.1%
		계	42	17.8%	70.4%	7.6%	0.0%	0.2%	3.9%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6	1.7%	85.7%	3.3%	0.0%	9.3%	0.0%
		법인 과세특례	2	50.0%	50.0%	0.0%	0.0%	0.0%	0.0%
		개인 소득공제	1	100.0%	0.0%	0.0%	0.0%	0.0%	0.0%
		계	9	23.3%	68.2%	2.2%	0.0%	6.2%	0.0%

주: 1. 응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응답	내용(공통)	응답	내용(공통)
①	개인투자조합	④	전문투자조합
②	벤처투자조합	⑤	농식품투자조합
③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⑥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 다음으로, 조사대상 연도인 2020년에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창투조합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개인 소득공제)의 방식 중에서 순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방식에 질문한 결과 <표 IV-13>과 같이 두 가지 방식 간의 무차별, 간접투자 및 직접투자의 순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러한 분포는 수혜자의 여부에 따른 구분과 대체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 단, 개별 조세특례에 따른 구분에서 개인 소득공제에서는 직접투자의 비중이 간접투자보다 크게 나타남

<표 IV-13> 순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출자·투자의 방식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직접투자	간접투자	무차별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16	18.8%	43.8%	37.5%	
	법인 과세특례	2	0.0%	0.0%	100.0%	
	개인 소득공제	3	33.3%	0.0%	66.7%	
	계	21	19.0%	33.3%	47.6%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12	25.0%	41.7%	33.3%
		법인 과세특례	1	0.0%	0.0%	100.0%
		개인 소득공제	3	33.3%	0.0%	66.7%
		계	16	25.0%	31.3%	43.8%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4	0.0%	50.0%	50.0%
		법인 과세특례	1	0.0%	0.0%	100.0%
		개인 소득공제	0	NA	NA	NA
		계	5	0.0%	40.0%	60.0%

- 다음으로, 조사대상 연도인 2020년에 창투조합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직·간접투자의 방식을 통한 창업기업 등의 출자대상에 대한 출자방법을 질문한 결과 <표 IV-14>와 같이 유상증자방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또한, 이러한 분포는 수혜자의 여부에 따른 구분과 대체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14> 창투조합 등에 대한 출자방식(창투조합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대상)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43	27.9%	81.4%	7.0%	14.0%	2.3%	
	법인 과세특례	7	0.0%	100.0%	0.0%	0.0%	0.0%	
	계	50	24.0%	84.0%	6.0%	12.0%	2.0%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35	22.9%	85.7%	5.7%	8.6%	0.0%
		법인 과세특례	5	0.0%	100.0%	0.0%	0.0%	0.0%
		계	40	20.0%	87.5%	5.0%	7.5%	0.0%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8	50.0%	62.5%	12.5%	37.5%	12.5%
		법인 과세특례	2	0.0%	100.0%	0.0%	0.0%	0.0%
		계	10	40.0%	70.0%	10.0%	30.0%	10.0%

- 주: 1. 창투조합 비과세는 중복응답한 결과임
 2. 응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응답	내용(공통)	응답	내용(공통)
①	최초출자방법	④	출자전환방법
②	유상증자방법	⑤	개인취득방법
③	무상증자방법		

□ 다음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동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투자성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출자방법을 질문한 결과 <표 IV-15>와 같이 유상증자방법 및 최초출자방법의 순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러한 분포는 수혜자의 여부에 따른 구분과 대체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15> 투자성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창투조합 등에 대한 출자방식
(창투조합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대상)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49	40.8%	55.1%	2.0%	2.0%	0.0%	
	법인 과세특례	8	12.5%	87.5%	0.0%	0.0%	0.0%	
	계	57	36.8%	59.6%	1.8%	1.8%	0.0%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35	42.9%	57.1%	0.0%	0.0%	0.0%
		법인 과세특례	5	0.0%	100.0%	0.0%	0.0%	0.0%
		계	40	37.5%	62.5%	0.0%	0.0%	0.0%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14	35.7%	50.0%	7.1%	7.1%	0.0%
		법인 과세특례	3	33.3%	66.7%	0.0%	0.0%	0.0%
		계	17	35.3%	52.9%	5.9%	5.9%	0.0%

주: 1. 응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응답	내용(공통)	응답	내용(공통)
①	최초출자방법	④	출자전환방법
②	유상증자방법	⑤	개인취득방법
③	무상증자방법		

□ 다음으로, 조사대상 연도인 2020년에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창투조합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투자(개인 소득공제)의 규모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IV-16>과 같이 개별 조세특례의 유형별로 창투조합 비과세, 법인 과세특례 및 개인 소득공제에서의 평균값이 각각 674만원, 98만원 및 3만원으로 나타나서 창투조합 비과세에서의 신규 출자·투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창투조합 비과세에서의 출자 규모를 원천별로 구분하면 자체 재원, 개인 투자자 모집금액 및 법인투자자 모집금액의 평균값이 각각 54만원, 38만원 및 582만원으로 나타나서 법인투자자를 통한 모집금액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추가적으로, 조사대상 연도인 2020년에 출자·투자대상으로부터의 회수 규모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IV-17>과 같이 개별 조세특례의 유형별로 창투조합 비과세, 법인 과세특례 및 개인 소득공제에서의 평균값이 각각 33만원, 53만원 및 1만원으로 나타나서 법인 과세특례에서 신규 출자·투자 규모와 비교한 회수 규모의 상대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⁷¹⁾

<표 IV-16> 투자대상에 대한 신규 출자·투자의 평균 규모

(단위: 개, 명, 천원)

구분		사례 수	자체 재원	개인투자자 모집금액	법인투자자 모집금액	계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49	540	380	5,819	6,739	
	법인 과세특례	7	-	-	-	983	
	개인 소득공제	13	-	-	-	28	
	계	69	-	-	-	4,891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35	572	199	7,622	8,393
		법인 과세특례	5	-	-	-	1,193
		개인 소득공제	11	-	-	-	29
		계	51	-	-	-	5,883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14	461	831	1,313	2,605
		법인 과세특례	2	-	-	-	459
		개인 소득공제	2	-	-	-	24
		계	18	-	-	-	2,080

<표 IV-17> 출자·투자대상으로부터의 회수의 평균 규모

(단위: 개, 명, 천원)

구분		사례 수	출자·투자 대상의 개수	회수액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49	9.2	330	
	법인 과세특례	7	5.7	530	
	개인 소득공제	13	2.6	10	
	계	69	7.6	290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35	10.2	365
		법인 과세특례	5	5.6	743
		개인 소득공제	11	2.5	10
		계	51	8.1	326

71) 추가적으로, 법인 과세특례 및 개인 소득공제에서 벤처투자자로 분류되지 않은 대상으로부터의 회수의 평균 규모는 각각 0원 및 3,000원으로 나타남

<표 IV-17>의 계속

(단위: 개, 명, 천원)

구분		사례 수	출자·투자 대상의 개수	회수액	
수혜 여부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14	6.7	240
		법인 과세특례	2	6.0	0
		개인 소득공제	2	3.0	13
		계	18	6.2	188

- 다음으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개별 조세특례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 (창투조합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투자(개인 소득공제)를 증가시키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IV-18>과 같이 전체적으로 납세자의 85.3%가 효과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효과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개별 조세특례 중에서는 개인 소득공제의 효과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8>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투자의 증가에 대한 개별 조세특례의 효과성 인식 여부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효과성 인식	효과성 불인식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49	83.7%	16.3%	
	법인 과세특례	8	75.0%	25.0%	
	개인 소득공제	18	94.4%	5.6%	
	계	75	85.3%	14.7%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35	91.4%	8.6%
		법인 과세특례	5	100.0%	0.0%
		개인 소득공제	12	100.0%	0.0%
		계	52	94.2%	5.8%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14	64.3%	35.7%
		법인 과세특례	3	33.3%	66.7%
		개인 소득공제	6	83.3%	16.7%
		계	23	65.2%	34.8%

주: 1. 조세혜택의 경험이 없어도 응답함

- 다음으로, <표 IV-17>에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효과성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질문한 결과 <표 IV-19>와 같이 불충분한 조세감면 규모 및 낮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혜자와 비수혜자는 각각 불충분한 조세감면 규모 및 낮은 수익성을 가장 중요한 사유로 응답함

<표 IV-19> 개별 조세특례의 효과성을 인식하지 않은 사유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8	37.5%	25.0%	25.0%	12.5%	
	법인 과세특례	2	50.0%	50.0%	0.0%	0.0%	
	개인 소득공제	1	0.0%	100.0%	0.0%	0.0%	
	계	11	36.4%	36.4%	18.2%	9.1%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3	66.7%	0.0%	33.3%	0.0%
		법인 과세특례	0	NA	NA	NA	NA
		개인 소득공제	0	NA	NA	NA	NA
		계	3	66.7%	0.0%	33.3%	0.0%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5	20.0%	40.0%	20.0%	20.0%
		법인 과세특례	2	50.0%	50.0%	0.0%	0.0%
		개인 소득공제	1	0.0%	100.0%	0.0%	0.0%
		계	8	25.0%	50.0%	12.5%	12.5%

주: 1. 응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응답	창투조합 비과세	법인 과세특례	개인 소득공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통한 조세감면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세액공제를 통한 조세감면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감면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
②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투자성과가 나빠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해서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투자성과가 나빠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세액공제를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해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를 통한 투자성과가 나빠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해서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행정적 지원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따라 감소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행정적 지원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따라 감소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행정적 지원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감소해서
④	기타	기타	기타

2. “④ 기타”의 사유로 창투조합 비과세에서는 “해당 없어 잘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했음

- 다음으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개별 조세특례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창투조합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투자(개인 소득공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표 IV-20>과 같이 전체적으로 평균값을 3.54점으로 응답해서 상당한 영향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수혜자(3.75점)가 비수혜자(2.79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영향을 인식하고, 개별 조세특례의 유형별로는 개인 소득공제(4.00점)의 영향을 창투조합 비과세(3.41점) 및 법인 과세특례(3.80점)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0> 개별 조세특례가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투자에 미친 영향

(단위: 개, 명,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영향이 없음	작은 영향을 미침	보통임	큰 영향을 미침	매우 큰 영향을 미침	평균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49	10.2%	8.2%	32.7%	28.6%	20.4%	3.41	
	법인 과세특례	5	0.0%	20.0%	20.0%	20.0%	40.0%	3.80	
	개인 소득공제	11	0.0%	9.1%	18.2%	36.4%	36.4%	4.00	
	계	65	7.7%	9.2%	29.2%	29.2%	24.6%	3.54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35	5.7%	5.7%	31.4%	31.4%	25.7%	3.66
		법인 과세특례	5	0.0%	20.0%	20.0%	20.0%	40.0%	3.80
		개인 소득공제	11	0.0%	9.1%	18.2%	36.4%	36.4%	4.00
		계	51	3.9%	7.8%	27.5%	31.4%	29.4%	3.75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14	21.4%	14.3%	35.7%	21.4%	7.1%	2.79
		법인 과세특례	0	NA	NA	NA	NA	NA	NA
		개인 소득공제	0	NA	NA	NA	NA	NA	NA
		계	14	21.4%	14.3%	35.7%	21.4%	7.1%	2.79

주: 1. 비수혜자는 개별 조세특례를 받았을 경우의 예상 영향을 응답함

- 다음으로, 조사대상 연도인 2020년에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개별 조세특례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창투조합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투자(개인 소득공제)를 얼마나 증가시켰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IV-21>과 같이 개별 조세특례의 유형별로 창투조합 비과세, 법인 과세특례 및 개인 소득공제에서 각각 8.4%, 12.5% 및 23.6%로 응답해서 개인 소득공제에 의한 출자·투자의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창투조합 비과세에 의한 출자 증가율을 원천별로 구분하면 자체 재원, 개인투자자 모집금액 및 법인투자자 모집금액에서 각각 7.7%, 9.0% 및 8.7%로 응답해서 원천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⁷²⁾

<표 IV-21> 개별 조세특례에 의한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투자의 증가비율

(단위: 개, 명, 천원)

구분		사례 수	자체 재원	개인투자자 모집금액	법인투자자 모집금액	계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41	7.7%	9.0%	8.7%	8.4%	
	법인 과세특례	5	-	-	-	12.5%	
	개인 소득공제	11	-	-	-	23.6%	
	계	57	-	-	-	11.7%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34	7.8%	8.6%	9.0%	8.5%
		법인 과세특례	5	-	-	-	12.5%
		개인 소득공제	11	-	-	-	23.6%
		계	50	-	-	-	12.2%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7	7.5%	10.8%	7.1%	8.0%
		법인 과세특례	0	-	-	-	NA
		개인 소득공제	0	-	-	-	NA
		계	7	-	-	-	8.0%

주: 1. 응답의 내용은 “① 5% 이하 ② 5% 초과 10% 이하 ③ 10% 초과 15% 이하 ④ 15% 초과 20% 이하 ⑤ 기타”인데, 개별 응답의 중간값(①부터 ④까지에서 각각 2.5%, 7.5%, 12.5% 및 17.5%) 및 ⑤에서 개별적으로 응답한 값을 이용해서 증가비율을 계산함

- 다음으로, <표 IV-20>과 유사하게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개별 조세특례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창투조합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투자(개인 소득공제)의 계획(투자·출자대상의 개수 및 투자·출자기간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표 IV-22>와 같이 전체적으로 평균값을 3.22점으로 응답해서 상당한 영향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수혜자(3.39점)가 비수혜자(2.57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영향을 인식하고, 개별 조세특례의 유형별로는 법인 과세특례(3.60점)의 영향을 창투조합 비과세 (3.10점) 및 개인 소득공제(3.55점)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72) 추가적으로, 창투조합 비과세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외부 재원(개인투자자 및 법인투자자 모집금액)을 통한 신규 출자·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값을 3.31점으로 응답해서 상당한 영향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혜자(3.53점)가 비수혜자(2.60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영향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2> 개별 조세특례가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투자의 계획에 미친 영향

(단위: 개, 명,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영향이 없음	작은 영향을 미침	보통임	큰 영향을 미침	매우 큰 영향을 미침	평균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49	12.2%	10.2%	40.8%	28.6%	8.2%	3.10	
	법인 과세특례	5	0.0%	20.0%	20.0%	40.0%	20.0%	3.60	
	개인 소득공제	11	9.1%	9.1%	36.4%	9.1%	36.4%	3.55	
	계	65	10.8%	10.8%	38.5%	26.2%	13.8%	3.22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35	2.9%	14.3%	40.0%	34.3%	8.6%	3.31
		법인 과세특례	5	0.0%	20.0%	20.0%	40.0%	20.0%	3.60
		개인 소득공제	11	9.1%	9.1%	36.4%	9.1%	36.4%	3.55
		계	51	3.9%	13.7%	37.3%	29.4%	15.7%	3.39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14	35.7%	0.0%	42.9%	14.3%	7.1%	2.57
		법인 과세특례	0	NA	NA	NA	NA	NA	0.00
		개인 소득공제	0	NA	NA	NA	NA	NA	0.00
		계	14	35.7%	0.0%	42.9%	14.3%	7.1%	2.57

주: 1. 비수혜자는 개별 조세특례를 받았을 경우의 예상 영향을 응답함

□ 다음으로, <표 IV-22>에서 개별 조세특례가 출자·투자의 계획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질문한 결과 <표 IV-23>과 같이 조세혜택과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출자·투자의 규모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러한 분포는 개별 조세특례 및 수혜자의 여부에 따른 구분과 대체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23> 개별 조세특례가 출자·투자의 계획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는 사유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6	50.0%	16.7%	0.0%	0.0%	33.3%
	법인 과세특례	0	NA	NA	NA	NA	NA
	개인 소득공제	1	100.0%	0.0%	0.0%	0.0%	0.0%
	계	7	57.1%	14.3%	0.0%	0.0%	28.6%

<표 IV-23>의 계속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1	100.0%	0.0%	0.0%	0.0%	0.0%
		법인 과세특례	0	NA	NA	NA	NA	NA
		개인 소득공제	1	100.0%	0.0%	0.0%	0.0%	0.0%
		계	2	100.0%	0.0%	0.0%	0.0%	0.0%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5	40.0%	20.0%	0.0%	0.0%	40.0%
		법인 과세특례	0	NA	NA	NA	NA	NA
		개인 소득공제	0	NA	NA	NA	NA	NA
		계	5	40.0%	20.0%	0.0%	0.0%	40.0%

주: 1. 응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응답	창투조합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개인 소득공제
①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가 전체 출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과세 혜택과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가 전체 출자·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공제 혜택과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②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다른 지원제도(보조금 등)가 존재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대한 다른 지원제도(보조금 등)가 존재하기 때문에
③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투자성과가 좋아서 수익성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를 통한 투자성과가 좋아서 수익성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경제적·행정적 지원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경제적·행정적 지원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해서
⑤	기타	기타

2. “④ 기타”의 사유로 창투조합 비과세에서는 “주식양도 해당 없음” 및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했음

□ 다음으로, 조사대상 연도인 2021년에 <표 IV-22>와 유사하게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개별 조세특례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창투조합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투자(개인 소득공제)에서 투자·출자대상의 개수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 <표 IV-24>와 같이 전체적으로 평균 0.7개를 증가시켜서 증가비율이 15.8%로 나타남

○ 단, 비수혜자에서는 투자·출자대상의 개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개별 조세특례의 유형별로는 증가개수는 법인 과세특례(2.0개)가 가장 높고, 증가비율은 개인 소득공제(25.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24> 개별 조세특례가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투자대상의 개수에 미친 영향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증가시킴	평균 증가개수	평균 증가비율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43	88.4%	11.6%	0.5	7.8%	
	법인 과세특례	5	80.0%	20.0%	2.0	10.0%	
	개인 소득공제	10	50.0%	50.0%	0.6	25.0%	
	계	58	81.0%	19.0%	0.7	15.8%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34	85.3%	14.7%	0.6	9.9%
		법인 과세특례	5	80.0%	20.0%	2.0	10.0%
		개인 소득공제	10	50.0%	50.0%	0.6	25.0%
		계	49	77.6%	22.4%	0.7	16.8%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9	100.0%	0.0%	0.0	0.0%
		법인 과세특례	0	NA	NA	NA	NA
		개인 소득공제	0	NA	NA	NA	NA
		계	9	100.0%	0.0%	0.0	0.0%

주: 1. 응답내용에는 “①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③ 증가시켰다” 외에 “② 감소시켰다”도 있지만 응답결과가 없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음
 2. 평균 증가개수 및 증가비율의 계산 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의 응답결과는 증가개수와 증가비율을 각각 0개 및 0%로 적용함

- 다음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개별 조세특례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창투조합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투자(개인 소득공제)에서 투자·출자기간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 <표 IV-25>와 같이 전체적으로 평균 1.7개월을 증가시켜서 증가비율이 7.3%로 나타남
 - 수혜자(3.4개월, 14.9%)의 투자·출자기간의 증가효과가 비수혜자(0.1개월, 1.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개별 조세특례의 유형별로는 증가기간은 법인 과세특례(4.8개월)가 가장 높고, 증가비율은 개인 소득공제(22.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25> 개별 조세특례가 투자대상에 대한 출자·투자기간에 미친 영향

(단위: 개, 명, 개월)

구분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증가시킴	평균 증가기간	평균 증가비율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43	88.4%	11.6%	1.7	7.3%	
	법인 과세특례	5	80.0%	20.0%	4.8	10.0%	
	개인 소득공제	10	60.0%	40.0%	4.4	22.0%	
	계	58	82.8%	17.2%	3.1	13.5%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34	88.2%	11.8%	2.1	9.0%
		법인 과세특례	5	80.0%	20.0%	4.8	10.0%
		개인 소득공제	10	60.0%	40.0%	4.4	22.0%
		계	49	81.6%	18.4%	3.4	14.9%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9	88.9%	11.1%	0.1	1.1%
		법인 과세특례	0	NA	NA	NA	NA
		개인 소득공제	0	NA	NA	NA	NA
		계	9	88.9%	11.1%	0.1	1.1%

주: 1. 응답내용에는 “①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③ 증가시켰다” 외에 “② 감소시켰다”도 있지만 응답결과가 없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음
 2. 평균 증가기간 및 증가비율의 계산 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의 응답결과는 증가기간과 증가비율을 각각 0개월 및 0%로 적용함

- 다음으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개별 조세특례를 최저한세의 대상에서 제외해서 다른 조세특례의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IV-26>과 같이 전체적으로 납세자의 82.7%가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러한 분포는 개별 조세특례 및 수혜자의 여부에 따른 구분과 대체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26> 개별 조세특례를 최저한세와 무관하게 적용할 필요성의 인식 여부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필요성 인식	필요성 불인식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49	85.7%	14.3%
	법인 과세특례	8	62.5%	37.5%
	개인 소득공제	18	83.3%	16.7%
	계	75	82.7%	17.3%

<표 IV-26>의 계속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필요성 인식	필요성 불인식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35	82.9%	17.1%
		법인 과세특례	5	60.0%	40.0%
		개인 소득공제	12	83.3%	16.7%
		계	52	80.8%	19.2%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14	92.9%	7.1%
		법인 과세특례	3	66.7%	33.3%
		개인 소득공제	6	83.3%	16.7%
		계	23	87.0%	13.0%

□ 다음으로,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창투조합 비과세 및 법인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개인 소득공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방식의 출자·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IV-27>과 같이 법인 투자자의 직·간접투자 방식 및 중소기업창투회사 등의 간접투자 방식의 상대적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분포는 수혜자의 여부에 따른 구분과 대체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 단, 개인 소득공제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직·간접투자 방식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냄

<표 IV-27>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출자·투자의 방식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49	24.5%	28.6%	0.0%	8.2%	6.1%	32.7%	0.0%	
	법인 과세특례	8	12.5%	37.5%	0.0%	0.0%	12.5%	37.5%	0.0%	
	개인 소득공제	18	27.8%	22.2%	22.2%	16.7%	0.0%	11.1%	0.0%	
	계	75	24.0%	28.0%	5.3%	9.3%	5.3%	28.0%	0.0%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35	17.1%	31.4%	0.0%	5.7%	8.6%	37.1%	0.0%
		법인 과세특례	5	0.0%	20.0%	0.0%	0.0%	20.0%	60.0%	0.0%
		개인 소득공제	12	25.0%	16.7%	33.3%	16.7%	0.0%	8.3%	0.0%
		계	52	17.3%	26.9%	7.7%	7.7%	7.7%	32.7%	0.0%

<표 IV-27>의 계속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혜 여부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14	42.9%	21.4%	0.0%	14.3%	0.0%	21.4%	0.0%
		법인 과세특례	3	33.3%	66.7%	0.0%	0.0%	0.0%	0.0%	0.0%
		개인 소득공제	6	33.3%	33.3%	0.0%	16.7%	0.0%	16.7%	0.0%
		계	23	39.1%	30.4%	0.0%	13.0%	0.0%	17.4%	0.0%

주: 1. 응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응답	내용(공통)	응답	내용(공통)
①	법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직접투자 방식
②	법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③	개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⑦	기타
④	개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 다음으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개별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납세자별로 구분해서 해당 조세특례를 통한 조세지원의 수준에 어떠한지에 대해 -2점부터 2점까지의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표 IV-28>과 같이 전체적으로 평균값을 -0.41점으로 응답해서 조세지원의 수준이 다소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수혜자(-0.51점)가 비수혜자(-0.20점)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조세지원의 수준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개별 조세특례의 유형별로는 법인 과세특례(-0.75점) 및 개인 소득공제(-0.83점)가 창투조합 비과세(-0.20점)보다 동(同) 수준이 더욱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8> 개별 조세특례의 조세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개, 명, 점)

구분		사례 수	자나치게 충분	비교적 충분	적당	다소 부족	자나치게 부족	평균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양도차익	49	2.0%	8.2%	61.2%	24.5%	4.1%	-0.20
		배당소득	49	2.0%	6.1%	67.3%	18.4%	6.1%	-0.20
		소계	49	2.0%	7.1%	64.3%	21.4%	5.1%	-0.20
	법인 과세특례	8	0.0%	0.0%	37.5%	50.0%	12.5%	-0.75	
	개인 소득공제	18	5.6%	0.0%	33.3%	33.3%	27.8%	-0.83	
	계	75	2.7%	4.7%	54.0%	27.3%	11.3%	-0.41	

<표 IV-28>의 계속

(단위: 개, 명, 점)

구분			사례 수	지나치게 충분	비교적 충분	적당	다소 부족	지나치게 부족	평균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 조합 비과세	양도차익	35	0.0%	5.7%	68.6%	22.9%	2.9%	-0.23
			배당소득	35	0.0%	2.9%	74.3%	17.1%	5.7%	-0.26
			소계	35	0.0%	4.3%	71.4%	20.0%	4.3%	-0.24
		법인 과세특례	5	0.0%	0.0%	40.0%	40.0%	20.0%	-0.80	
		개인 소득공제	12	0.0%	0.0%	25.0%	33.3%	41.7%	-1.17	
		계	52	0.0%	2.9%	57.7%	25.0%	14.4%	-0.51	
	비수혜자	창투 조합 비과세	양도차익	14	7.1%	14.3%	42.9%	28.6%	7.1%	-0.14
			배당소득	14	7.1%	14.3%	50.0%	21.4%	7.1%	-0.07
			소계	14	7.1%	14.3%	46.4%	25.0%	7.1%	-0.11
		법인 과세특례	3	0.0%	0.0%	33.3%	66.7%	0.0%	-0.67	
		개인 소득공제	6	16.7%	0.0%	50.0%	33.3%	0.0%	-0.17	
		계	23	8.7%	8.7%	45.7%	32.6%	4.3%	-0.20	

주: 1. 평균 점수는 지나치게 부족한 수준부터 지나치게 충분한 수준까지를 -2점부터 2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후에 가중평균한 계산결과임

□ 다음으로, <표 IV-28>에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개별 조세특례의 조세지원 수준이 다소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응답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세지원의 규모를 얼마나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IV-29>와 같이 전체적으로 평균값을 93.0%으로 응답해서 개별 조세특례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유사하게 개별 조세특례의 조세지원 수준이 비교적 충분하거나 지나치게 충분하다고 응답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세지원의 규모를 얼마나 축소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값을 19.4%로 응답해서 비대칭적인 인식을 나타냈고, 특히 수혜자는 충분한 조세지원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세특례를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함

<표 IV-29> 부족한 개별 조세특례에 필요한 확대 비율 및 충분한 개별 조세특례에 필요한 축소 비율의 평균값

(단위: 개, 명)

구분			부족한 조세특례의 응답		충분한 조세특례의 응답		
			사례 수	확대 비율	사례 수	축소 비율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양도차익	14	78.6%	5	20.0%	
		배당소득	12	70.8%	4	25.0%	
		소계	14	75.0%	5	22.2%	
	법인 과세특례	5	100.0%	0	NA		
	개인 소득공제	11	112.7%	1	5.0%		
	계	30	93.0%	6	19.4%		
	수혜 여부	수혜자	양도차익	9	77.8%	2	0.0%
배당소득			8	68.8%	1	0.0%	
소계			9	73.5%	2	0.0%	
법인 과세특례			3	66.7%	0	NA	
개인 소득공제			9	123.3%	0	NA	
계			21	93.9%	2	0.0%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양도차익	5	80.0%	3	33.3%
			배당소득	4	75.0%	3	33.3%
			소계	5	77.8%	3	33.3%
		법인 과세특례	2	150.0%	0	NA	
		개인 소득공제	2	65.0%	1	5.0%	
		계	9	91.0%	4	26.3%	

주: 1. 창투조합 비과세의 소계에서 사례 수는 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비과세의 개별 사례 수 중에서 큰 값을 적용함

□ 마지막으로, 창업기업 등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유형의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IV-30>과 같이 대다수의 표본이 조세지원의 강화라고 응답함

○ 또한, 이러한 분포는 개별 조세특례 및 수혜자의 여부에 따른 구분과 대체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30>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정책적 지원의 유형

(단위: 개, 명)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창투조합 비과세	49	79.6%	16.3%	2.0%	2.0%	0.0%	
	법인 과세특례	8	100.0%	0.0%	0.0%	0.0%	0.0%	
	개인 소득공제	18	66.7%	16.7%	5.6%	11.1%	0.0%	
	계	75	78.7%	14.7%	2.7%	4.0%	0.0%	
수혜 여부	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35	80.0%	14.3%	2.9%	2.9%	0.0%
		법인 과세특례	5	100.0%	0.0%	0.0%	0.0%	0.0%
		개인 소득공제	12	75.0%	16.7%	0.0%	8.3%	0.0%
		계	52	80.8%	13.5%	1.9%	3.8%	0.0%
	비수혜자	창투조합 비과세	14	78.6%	21.4%	0.0%	0.0%	0.0%
		법인 과세특례	3	100.0%	0.0%	0.0%	0.0%	0.0%
		개인 소득공제	6	50.0%	16.7%	16.7%	16.7%	0.0%
		계	23	73.9%	17.4%	4.3%	4.3%	0.0%

주: 1. 응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응답	내용(공통)
①	법인·개인 투자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의 강화
②	창업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및 보조금 지급
③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선별적 근로 규제 완화
④	창업기업 등에 대한 기술·교육 및 구매·마케팅 지원
⑤	기타

2. “④ 기타”의 사유로 개인 소득공제에서는 “조세의 기타 법인들의 간접/직접투자 촉진 지원” 및 “개인투자조합 투자자 양도차익에서 조합보수 경비 인정”이라고 응답했음

다.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 이상의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개별 조세지원 중에서 창투조합 비과세의 사전적 인지의 정도가 세법 내용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낮게 나타나서 벤처·창업 생태계의 참가자들 중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조세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단, 대다수의 수혜자들은 투자 의사결정 전에 개별 조세특례를 사전적으로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인지해서 조세지원이 이들 참가자들의 사업활동을 위한 중요한 사전적 고려대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세법 규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별 조세지원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들도

일부 나타나서 관련 조세법령의 정비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음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은 창투조합 등의 전문적 경험과 지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간접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개별 조세지원 중에서 창투조합 비과세를 통한 법인투자자의 신규 출자·투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조건의 일반적 인식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대다수의 납세자가 개별 조세지원의 효과성과 함께 신규 출자·투자의 규모 및 대상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높게 인식해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이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조건으로 과세 실무상의 중요성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단, 불충분한 조세감면 규모 및 조세혜택과 무관한 투자의사결정 등으로 인해 효과성을 인식하지 않는 사례들도 일부 나타났고, 안정적인 조세지원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저한세의 배제 필요성에 대한 요청도 매우 높게 나타나서 조세지원의 수준 및 방식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도 도출할 수 있음
 - 즉,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비조세혜택에 비해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조세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는 반면 개별 조세지원의 수준이 대체로 다소 부족하고,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설문조사의 결과는 앞선 절에서 분석한 조세특례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창투조합 비과세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납세자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충분한 조세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임

5. 소결

-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먼저, 정부 역할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벤처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외부경제에 대한 조세지원의 제공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부 개입 적절성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음

- 또한,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수혜자의 특성, 보조대상 및 수준, 행정집행 및 부작용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창투조합 비과세 등을 통해 조세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먼저, 산업자금의 효율적 조달 및 이를 통한 벤처기업의 만성적인 과소투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조달액 중에서 과도하게 높은 정부의 정책자금 대신 자발적인 민간의 비중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정책목표는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조세지원의 대상을 벤처·창업 생태계 참가자들인 투자자 등(투자자, 전문 출자자 및 전문 조합)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단,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조세지원의 적용대상 업종 및 납세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개별 업종별 투자에 대한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투자자 등이 특수관계인인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현행 조세법령상 창업·벤처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을 반영해서 정책대상을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규정 방식은 특수목적법인인 중소기업창업회사 등의 특성을 반영해서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를 통해 완결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위험한 투자를 기피하는 투자 환경에서 법인 및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액공제·소득공제를 통해 위험부담을 완화시켜서 벤처투자를 촉진시키는 정책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도운영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단, 구체적 시행과 관련해서는 시장 실패 및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특정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비정상적 자금 운영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집중적인 투자대상인 벤처기업의 투자·출자액에 대한 조세혜택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있음
 - 마지막으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은 최저한세의 적용과 함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른 조세지원 항목들과의 적용범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조세지원의 중

복성의 문제점이 없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재정지원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타 제도와의 중복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추가적으로, 구체적 설문조사를 통해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개별 조세지원이 벤처·창업 생태계의 참가자들의 사업활동을 위한 중요한 사전적 고려대상이면서 세법 규정의 불확실성이 실무상 제약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대다수의 납세자가 개별 조세지원의 효과성과 함께 신규 출자·투자의 규모 및 대상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높게 인식해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이 벤처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조건으로 과세 실무상의 중요성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혜택의 제공이 필수적이고, 대폭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과는 별도로 개별 조세지원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제도적 운영을 통해 납세자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충분한 조세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음

V. 효과성 분석



V. 효과성 분석

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 원천세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

□ 수혜자 집단의 특징

○ 수혜자 집단과 비수혜자 집단 간 차이

- 투자조합출자 등의 소득공제 수혜자의 총급여는 1억 3,500만원으로 비수혜자 표본의 평균 3,880만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
 - 수혜자 집단의 근로소득금액 평균은 1억 2,000만원인 반면, 비수혜자 표본의 평균은 2,950만원임
 - 소득공제 전체에서 투자조합출자 등의 소득공제를 제외한 여타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수혜자 집단의 평균은 1,430만원인 반면, 비수혜자 표본의 평균은 650만원. 소득공제 전체도 수혜자집단의 평균이 비수혜자 표본의 평균에 비하여 약 4배가 큼
 - 과세표준의 경우에도 수혜자 집단의 평균은 9,480만원인 반면, 비수혜자 표본의 평균은 2,300만원임
 - 수혜자집단의 세액공제 평균은 179만원으로 비수혜자 표본 평균 72만원의 약 2.5배임
 - 수혜자집단의 세대주 비중은 74%인 반면, 비수혜자 표본의 세대주 비중은 77%임
- 총급여, 소득공제규모, 과세표준 및 세액공제 등 주요 근로소득 관련 변수들의 평균은 수혜자집단이 비수혜자집단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수혜자집단과 비수혜자집단이 상호 이질적인 집단임을 시사

<표 V-1> 수혜자집단과 비수혜자집단 요약 통계(제16조, 원천세)

(단위: 만원)

	수혜자 (n=65,436)				비수혜자 (n=285,000)			
	Mean	SD	Min	Max	Mean	SD	Min	Max
총급여	13,500	24,300	560	1,620,000	3,880	8,720	0	1,870,000
근로소득금액	12,000	23,800	186	1,590,000	2,950	8,450	0	1,830,000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1,100	1,960	0	93,900	0	0	0	0
여타 소득공제	1,430	1,150	-41,900	19,100	650	566	0	30,300
소득공제전체	2,540	1,970	151	101,000	650	566	0	30,300
과세표준	9,480	22,900	0	1,570,000	2,300	8,200	0	1,830,000
세액공제	179	273	0	32,300	72	109	0	31,100
세대주더미	0.74	0.44	0.00	1.00	0.77	0.42	0.00	1.00

주: 1. 그밖의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전체에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

2. 세대주더미는 세대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변수

□ 전체 표본(수혜자 및 비수혜자)을 이용한 회귀분석

○ 수혜더미와 소득공제 전체의 교차항을 이용하여 소득공제 효과 추정

- 교차항 부호가 음수이면 수혜자가 비수혜자에 비하여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에 주는 절세효과가 더 큰 것을 의미
- 추정결과, 수혜자의 소득공제 절세효과가 비수혜자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혜자의 경우, 소득공제액 1원 증가는 과세표준을 1.1원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수혜자의 경우 소득공제액 1원 증가는 과세표준을 0.99원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연도별 수혜자의 소득공제 효과

- 납세자별 고정효과와 연도별 고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연도별 출자 소득공제 수혜가 과세표준에 미치는 추가적인 효과는 0.16~0.27로 추정되어 수혜자의 절세효과가 비수혜자보다 작음을 시사
- 해당 소득공제 수혜자의 소득공제 한 단위가 증가하면 과세표준은 약 1.21 단위 감소(2016년), 1.21 단위 감소(2017년), 1.20 단위 감소(2018년), 1.12 단위 감소(2019년), 1.12 단위 감소(2020년)하는 것으로 추정됨

- 비수혜자의 소득공제 한 단위가 증가하면 과세표준은 약 1.48 단위 감소(2016년), 1.37 단위 감소(2017년), 1.40 단위 감소(2018년), 1.32 단위 감소(2019년), 1.39 단위 감소(2020년)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 -2> 과세표준 회귀분석 추정 결과(제16조, 원천세)

(단위: %)

변수	전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소득공제	-1.10** (0.002)	-1.48** (0.022)	-1.37** (0.004)	-1.40** (0.009)	-1.32** (0.008)	-1.29** (0.004)
소득공제×수혜더미	0.11** (0.002)	0.27** (0.023)	0.16** (0.003)	0.20** (0.009)	0.20** (0.006)	0.17** (0.001)
총급여	0.98** (0.001)	0.99** (0.002)	0.98** (0.0004)	0.98** (0.001)	0.98** (0.001)	0.98** (0.0004)
세대주더미	16,848** (6507.2)	471,760** (48099.8)	140,640** (30308.2)	144,567** (26274.9)	115,885** (19711.1)	-10,238** (15837.3)
연도 고정효과	○	×	×	×	×	×
납세자별 고정효과	○	×	×	×	×	×
표본크기	123,074	18,576	25,267	61,059	122,460	123,074

주: 1. 상수에 대한 계수 추정 결과는 생략하였음

2. **는 해당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의 p-값이 0.001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와 여타 소득공제의 단순 상관관계 추정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가 여타 소득공제를 구축하는가를 개략적으로 가늠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추정
- 2016~2020년 기간의 상관계수는 -0.28로 상호 대체하는 관계를 보임
- 2016, 2017, 2018년에는 상관계수가 -0.7에서 -0.8 사이로 나타나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줌. 즉, 강한 대체관계를 보임
- 그러나, 2019년 및 2020년에는 거의 0에 가까운 모습으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동 기간에는 상호 대체관계라고 보기 어려움
- 단순 상관관계는 다른 주요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 추정 결과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움

<표 V-3> 출자 소득공제와 여타 소득공제와의 상관계수(제16조, 원천세)

(단위: 개)

기간	2016~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상관계수	-0.284	-0.756	-0.818	-0.711	-0.003	0.011
관측치	123,074	3,576	5,267	11,059	22,460	23,074

□ 매칭을 이용한 분석

- 수혜자집단과 비수혜자집단의 이질성을 제거하고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매칭을 이용하여 분석
- 수혜자집단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비수혜자집단과 비교하는 것임
 - 수혜자집단과 이질적인 비수혜자집단 전체와 비교하는 것은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임
 - 수혜자집단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갖는 비수혜자집단을 비교집단(comparison group)이라 부르며, 해당 소득공제의 수혜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처치집단(treatment group)인 수혜자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결과변수 평균의 차이인 처치집단에 대한 평균 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ET)로 측정

□ 매칭 통제변수

- 매칭에 이용한 통제변수로는 총급여, 과세대상 근로소득, 세대주더미, 세액공제 한도 합계를 이용
- Mahalanobis distance를 이용하여 수혜자와 가장 유사한 통제변수를 가진 비수혜자를 매칭시키는 페어 매칭(pair matching)을 이용하여 비교집단을 구축
- 소득공제 이전에 결정된 변수와 소득공제 수혜 여부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서 이들 변수가 유사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수혜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이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해당 소득공제 수혜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함

□ 결과변수 선택

- 과세표준, 소득공제총액, 투자조합 등 소득공제를 제외한 여타 소득공제(이하 '여타 소득공제'), 소득공제한도 초과액을 결과변수로 선택하여 분석

- 처치집단인 수혜집단과 처치집단 납세자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통제집단 C 에 속한 근로소득세 납세자로 이루어진 비교집단 간 결과변수 평균의 차이인 ATET(average treatment effect of the treated)를 추정
- 처치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 $ATE = \frac{1}{N_T} \sum_{i \in T} (Y_i - Y_{m,i})$, 여기에서 처치집단 T 에 속한 납세자 i 에 대하여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갖는 통제집단에 속한 납세자의 결과변수와 설명변수는 각각 $Y_{m,i}$ 와 $x_{m,i}$ 임
 -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는 것은 Mahalanobis distance가 가장 짧은 것을 의미함
 - $x_{m,i}$ 은 $\arg \min_{m \in C} (x_i - x_m)' \Sigma_X^{-1} (x_i - x_m)$ 이며, 여기에서 Σ_X 는 설명변수 벡터 x 의 표본 표준편차를 대각원소로 하는 대각행렬이고, $(x_i - x_m)' \Sigma_X^{-1} (x_i - x_m)$ 을 Mahalanobis distance라고 함
 - $x_{m,i}$ 을 찾으면 해당 납세자의 결과변수 $Y_{m,i}$ 를 찾을 수 있음
 - 이렇게 i 에 매칭된 $(Y_{m,i}, x_{m,i})$ 를 갖는 통제집단(control group) 내 구성원들의 집합이 비교집단(comparison group)임

□ 매칭을 이용한 ATET 추정 결과

-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ATET 추정 결과
 - 최근 5년간 모두 음수로 추정되었으나 2017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유의성 있는 추정 결과에 의하면, 해당 소득공제는 수혜자의 과세표준을 유사한 특징을 가진 비수혜자보다 평균적으로 약 723만~1,055만원을 낮춘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최근 5년 가운데 4년 동안 해당 소득공제의 절세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
- 총소득공제에 대한 ATET 추정 결과
 - 해당 소득공제의 총소득공제에 대한 ATET는 모든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로 나타남
 - 해당 소득공제의 수혜자는 유사한 특징의 비수혜자보다 총소득공제액이 약 896만~1,459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이 1,459만원으로 가장 높고, 2017년이 896만원으로 가장 낮음
- 여타 소득공제에 대한 ATET 추정 결과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이외의 여타 소득공제에 대한 ATET는 3개년도(2017, 2018, 2020)에는 유의한 음수로 추정되어 구축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2017년에는 여타 소득공제가 4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어 해당 소득공제가 여타 소득공제를 구축(또는 대체)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는 가장 작은 구축효과(-44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2020년에도 해당 소득공제의 수혜자는 여타 소득공제를 약 107만원 줄인 것으로 나타남
 - 2019년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로 추정되어 해당 소득공제가 여타 소득공제를 보완하는 효과(complementary effect)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추정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공제한도 초과액에 대한 ATET 추정 결과
 - 모든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남
 - 수혜자는 유사한 특징을 가진 비수혜자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소득공제한도 초과액이 약 45만~396만원 더 큰 것으로 추정됨
 - 2016~2018년에는 각각 396만, 335만, 355만원으로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 반면, 2019~2020년에는 각각 45만 및 39만원으로 유사한 규모의 효과가 나타남

<표 V-4> 연도별 ATET 추정결과(제16조, 원천세)

결과변수	ATET				
	2016	2017	2018	2019	2020
과세표준	-918** (-5.51)	-138 (-0.77)	-1,055** (-27.49)	-981** (-19.76)	-723** (-18.58)
총소득공제	1,459** (76.38)	896** (60.55)	1,209** (104.72)	1,096** (83.74)	1,007** (74.63)
여타 소득공제	27 (1.02)	-400** (-16.75)	-44** (-3.07)	170** (24.37)	-107** (-16.47)
소득공제한도 초과액	396** (16.02)	335** (14.27)	355** (28.82)	45** (10.26)	39** (9.24)

주: 1. 결과변수 단위는 만원
 2. () 안의 값은 t-값
 3. ** 및 *는 모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의 p-value가 각각 0.01 및 0.05보다 작음을 의미

□ 2016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 매칭 변수들의 평균 및 중위값은 전반적으로 유사
- 총급여 및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경우 두 집단 간 표준편차의 차이가 큼. 이는 두 집단 간 최댓값의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추측됨

<표 V-5> 귀속연도 2016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매칭 기준 변수	처치집단(n=3576)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13,224	8,400	23,936	622,100	730
과세대상 근로소득	11,776	7,005	23,423	608,400	288
세대주더미	0.76	1.00	0.42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183	149	193	3,575	0
매칭 기준 변수	비교집단(n=3576)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12,669	8,280	17,915	272,000	734
과세대상 근로소득	11,235	6,891	17,513	265,300	290
세대주더미	0.76	1.00	0.43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180	148	185	3,068	0

주: 세대주더미를 제외한 결과변수 단위는 만원

□ 2017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 매칭 변수들의 평균 및 중위값은 두 집단 간 전반적으로 유사
- 총급여 및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경우 두 집단 간 표준편차의 차이가 큼. 이는 두 집단 간 최댓값의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추측됨

<표 V-6> 귀속연도 2017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매칭 기준 변수	처치집단(n=5267)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13,390	8,919	23,675	787,800	570
과세대상 근로소득	11,929	7,498	23,171	770,800	192
세대주더미	0.76	1.00	0.42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187	154	209	7,257	0

<표 V-6>의 계속

매칭 기준 변수	비교집단(n=5267)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12,615	8,914	15,646	199,900	570
과세대상 근로소득	11,171	7,493	15,289	194,600	192
세대주더미	0.77	1.00	0.42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181	152	158	2,643	0

주: 세대주더미를 제외한 결과변수 단위는 만원

□ 2018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 매칭변수들의 평균, 중위값 및 표준편차 등 두 집단 간 전반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임

<표 V-7> 귀속연도 2018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매칭 기준 변수	처치집단(n=11059)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14,056	9,414	24,440	1,028,000	600
과세대상 근로소득	12,570	7,969	23,924	1,006,000	210
세대주더미	0.75	1.00	0.43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190	161	185	6,882	0
매칭 기준 변수	비교집단(n=11059)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13,898	9,356	22,692	781,800	600
과세대상 근로소득	12,416	7,913	22,210	764,900	210
세대주더미	0.75	1.00	0.43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189	160	190	7,318	0

주: 세대주더미를 제외한 결과변수 단위는 만원

□ 2019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 매칭변수들의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및 최소까지 두 집단 간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임

<표 V-8> 귀속연도 2019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매칭 기준 변수	처치집단(n=22460)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13,171	8,860	26,288	1,624,000	560
과세대상 근로소득	11,719	7,442	25,732	1,590,000	186
세대주더미	0.73	1.00	0.44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182	151	343	32,290	0
매칭 기준 변수	비교집단(n=22460)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13,054	8,860	23,598	1,724,000	560
과세대상 근로소득	11,605	7,442	23,094	1,688,000	186
세대주더미	0.73	1.00	0.44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179	150	246	14,900	0

주: 세대주더미를 제외한 결과변수 단위는 만원

□ 2020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 매칭변수들의 평균, 중위값 및 표준편차 등 두 집단 간 전반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임

<표 V-9> 귀속연도 2020년 매칭 결과: 처치집단 vs 비교집단

매칭 기준 변수	처치집단(n=23074)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13,575	8,946	22,400	565,000	560
과세대상 근로소득	12,113	7,523	21,917	552,400	186
세대주더미	0.74	1.00	0.44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174	146	253	22,360	0
매칭 기준 변수	비교집단(n=23074)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급여	13,284	8,944	20,937	437,100	560
과세대상 근로소득	11,829	7,522	20,485	427,100	186
세대주더미	0.74	1.00	0.44	1.00	0.00
세액감면공제 합	171	146	214	11,150	0

주: 세대주더미를 제외한 결과변수 단위는 만원

나.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

□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이질성

- 종합소득세의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납세자(이하 ‘수혜자’)와 받지 않은 납세자(이하 ‘비수혜자’) 관련 주요 변수들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의 이질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종합소득의 경우, 수혜자 집단의 평균은 3억 4,783만원인 반면, 비수혜자 집단의 표본 평균은 4,080만원으로 양자의 차이가 매우 큼
 - 이는 종합소득이 매우 높은 납세자들이 해당 소득공제의 수혜자임을 시사
 - 총소득공제의 경우, 수혜자 집단의 평균은 3,888만원인 반면, 비수혜자 집단의 표본 평균은 382만원으로 큰 차이가 남
 - 과세표준의 경우, 수혜자 집단의 평균이 3억 899만원인 반면, 비수혜자 집단의 표본 평균은 3,515만원으로 차이가 매우 큼
- 총소득공제에서 해당 소득공제를 제외한 여타 소득공제의 경우, 수혜자 집단의 평균은 1만원인 반면, 비수혜자 집단의 표본 평균은 382만원으로 나타남
 - 이는 수혜자의 경우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전체 소득공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을 시사함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 수혜자집단(처치집단)과 비수혜자 표본(통제집단)의 신고유형 분포는 아래의 두 히스토그램과 같이 상이함을 알 수 있음

<표 V -10> 수혜자집단과 비수혜자집단 요약 통계(제16조, 종합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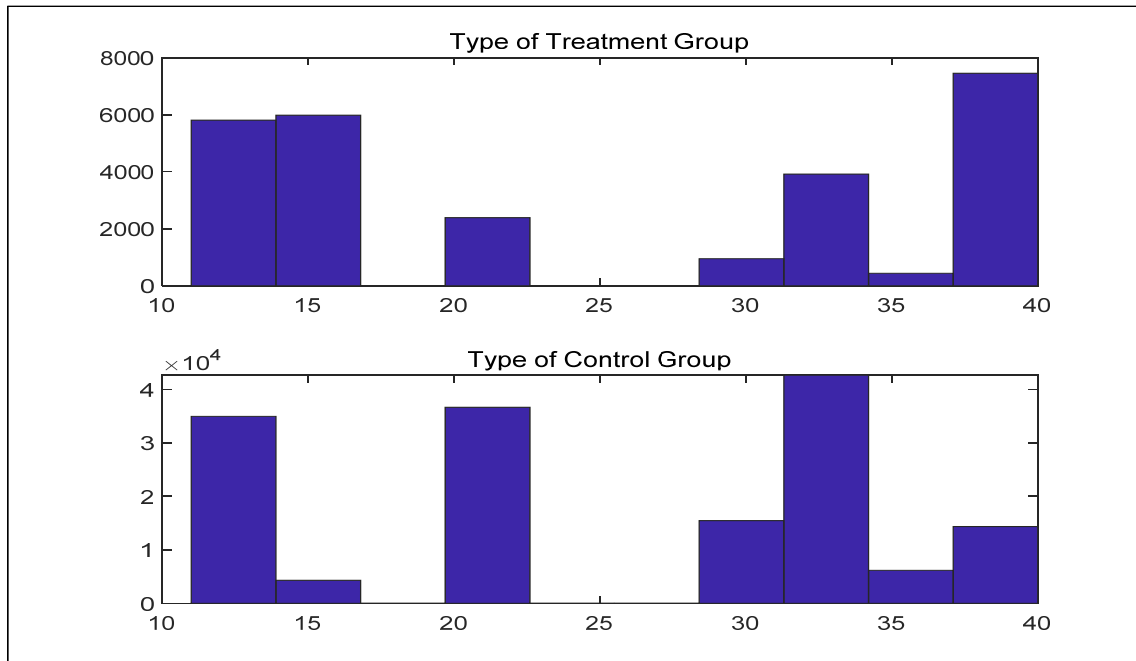
변수	처치집단(n=26958)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과세표준	30,899	11,870	110,937	7,043,675	0
총소득공제	3,888	3,192	5,045	367,960	150
여타소득공제	1	1	1	3	0
출자소득공제	2,555	1,783	5,802	503,000	0
세액감면공제 합	1	1	1	3	0
종합소득	34,783	15,625	112,846	7,411,634	0
근로소득더미	0.68	1.00	0.47	1.00	0.00
신고유형	25	20	12	40	11
인적공제	476	400	334	2,550	150

<표 V-10>의 계속

변수	통제집단(n=154483)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과세표준	3,515	845	47,950	13,659,000	0
총소득공제	382	261	378	33,970	6
여타소득공제	382	261	378	34,000	6
출자소득공제	0	0	0	0	0
세액감면공제 합	110	9	2,788	524,000	0
종합소득	4,080	1,232	48,722	13,676,000	0
근로소득더미	0.24	0.00	0.43	1.00	0.00
신고유형	25	31	9	40	11
인적공제	280	250	151	2,300	120

주: 1. 근로소득더미와 신고유형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단위는 만원
 2. 신고유형은 종합소득 신고유형으로 범주형 변수임

[그림 V-1] 중소기업 신고유형 분포: 처치집단 vs 통제집단



□ 매칭을 이용한 분석

- 수혜자와 비수혜자 집단 간 이질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벤처기업출자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매칭을 이용

- 근로소득세의 경우와 같은 방식의 매칭인 페어 매칭(pair matching)을 이용하여 분석

○ 결과변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총소득공제, 여타 소득공제를 결과변수로 고려
- 해당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고려
- 해당 소득공제가 여타 소득공제를 구축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여타 소득공제 및 총소득공제를 결과변수로 고려

○ 매칭 기준 변수

- 결과변수 이전 단계의 변수로 선정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유무 더미, 신고유형, 인적공제 합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종합소득만을 이용. 이는 다른 변수들을 추가로 매칭에 이용하는 경우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불균형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임

○ ATET의 추정

- 처치집단인 수혜집단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통제집단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비교집단 간의 결과변수 평균의 차이인 ATET(average treatment effect of the treated)를 추정
- 관련 상세한 설명은 근로소득세 소득공제의 해당 부분에 기술되어 있음

□ 매칭을 이용한 ATET 추정 결과

○ 과세표준

- 2016년 해당 소득공제의 수혜는 평균적으로 과세표준을 약 1,869만원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됨. 이는 2016년에는 해당 소득공제의 절세효과가 있었음을 시사
- 그러나, 2018년 및 2019년에는 해당 소득공제의 수혜가 과세표준을 각각 1,287만원 및 682만원 높이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이는 해당 소득공제 제도가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 달리 말하여, 절세 수단이 아닌 투자 수단으로서의 출자가 종합소득 납세자에게 활용된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및 2020년의 수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총소득공제
 - 모든 연도에서 ATET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로 추정됨
 - 수혜자의 총소득공제는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비수혜자에 비하여 약 2,643만 ~3,246만원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여타 소득공제
 - 모든 연도에서 ATET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수로 추정됨
 - 수혜자의 여타 소득공제는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비수혜자에 비하여 684만 ~1,226만원 낮은 것으로 추정됨. 이는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해당 소득공제 수혜가 여타 소득공제를 구축하였음을 시사

<표 V-11> 연도별 ATET 추정결과(제16조, 종합소득세)

결과변수	ATET				
	2016	2017	2018	2019	2020
과세표준	-1,869** (635.5)	2,991 (2199.3)	1,287** (474.0)	682* (337.3)	73 (323.0)
총소득공제	2,643** (103.8)	3,080** (150.9)	3,246** (67.9)	2,930** (56.1)	3,105** (38.7)
여타 소득공제	-1,226** (24.3)	-684** (14.8)	-729** (12.5)	-841** (12.5)	-880** (14.4)

- 주: 1. 결과변수 단위는 만원
 2. () 안의 값은 표준오차
 3. ** 및 *는 모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의 p-value가 각각 0.01 및 0.05보다 작음을 의미

□ 매칭 결과

- 종합소득, 근로소득더미, 인적공제, 신고유형 등 다양한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매칭을 시도하였으나,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 불균형이 매우 심한 경우가 발생하여 종합소득만을 매칭에 이용하여 비교집단 구성
 - 종합소득만으로 매칭을 하는 것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가장 유사하게 구성되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
 - (종합소득, 인적공제), 또는 (종합소득, 인적공제, 신고유형, 근로소득유무) 등을 기준으로 매칭을 하면 종합소득에서 두 집단 간 불균형이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종합소득만으로 매칭을 수행함
-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연도별 매칭 결과, 종합소득의 평균 및 중위값이 두

집단 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연도에서 표준편차 및 최댓값의 차이가 큰 경우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두 집단 간 유사한 매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표 V-12> 종합소득을 이용한 연도별 매칭 결과

연도	(표본수)	처치집단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2016	(n=1515)	33,713	14,099	86,572	1,481,400	60
2017	(n=2714)	33,277	14,371	89,978	1,492,600	0
2018	(n=5087)	32,374	16,109	76,396	2,413,500	0
2019	(n=8499)	34,703	16,172	104,340	3,314,700	0
2020	(n=9143)	34,951	15,351	100,955	3,454,500	0
연도	(표본수)	비교집단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2016	(표본수)	34,231	14,102	91,363	2,068,656	60
2017	(n=2714)	36,379	14,364	175,703	7,411,634	1
2018	(n=5087)	33,072	16,110	90,595	3,503,042	0
2019	(n=8499)	35,001	16,179	112,316	4,551,718	0
2020	(n=9143)	35,151	15,354	103,491	3,511,354	0

다.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목표 달성도 평가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정책목표 달성도 파악을 위하여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개인투자자부터 대규모 개인투자자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개인정보의 획득 및 접근이 불가함
 - 차선책으로 한국엔젤투자협회를 통하여 엔젤투자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효과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다만 엔젤투자자로 등록한 투자자들은 적극적이고 투자규모가 비교적 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문 응답 시 본 과세특례제도의 확장을 의도하여 답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설문조사 업체에서 직접 설문자들에게 연락할 수 없

었으며 한국엔젤투자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협조를 받아 한국엔젤투자 협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대략 12% 정도의 수득률을 보여 다른 설문조사와 비교할 때 평균적인 수득률을 보였으나 설문조사를 실시한 전체표본 자체가 작아 총 수득된 사례 수는 18명임
- 따라서 해당 결과를 일반화한 확대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를 응답한 개인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분포 및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전체 18명 중 귀속년도 2020년 기준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은 투자자는 66.7%(12명)이었음
 - 응답한 엔젤투자자 중 비사업자가 72.2%(13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 남성이 83.3%으로 15명이었으며,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30~40대이었음

<표 V-13> 개인투자자 응답자 특성 요약 통계

(단위: 명, %)

		사례 수	비중
전 체		18	100.0
수혜여부	수혜자	12	66.7
	비수혜자	6	33.3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5	27.8
	비사업자	13	72.2
성별	남성	15	83.3
	여성	3	16.7
연령별	19~29세	2	11.1
	30대	5	27.8
	40대	8	44.4
	50대	3	16.7

- 설문조사에 응답한 엔젤투자자들의 2020년 신규 출자·투자금액의 평균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임
 - 수혜자의 신규 출자 및 투자금액 평균이 비수혜자보다 높음
 - 개인사업자의 신규 출자 및 투자금액 평균이 비사업자보다 훨씬 높음

○ 40대의 신규 출자 및 투자금액 평균이 여타 연령 그룹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V-14> 2020년 신규 출자·투자금액 평균

(단위: 명, 만원)

		사례 수	평균
전 체		13	28,462
수혜여부	수혜자	11	29,364
	비수혜자	2	23,500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5	45,400
	비사업자	8	17,875
성별	남성	13	28,462
	여성	0	-
연령별	19~29세	1	10,000
	30대	2	9,000
	40대	8	35,875
	50대	2	27,500

□ 설문조사 결과, 개인투자자들은 동 과세특례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함

○ 소득공제 혜택의 출자 증가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94.4%로 동 제도의 효과를 매우 높게 평가함

- 수혜자들은 전부 출자 증가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비수혜자의 경우에도 83.3%가 출자 증가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해당 제도의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효과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40대의 신규 출자 및 투자금액 평균이 여타 연령 그룹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모든 그룹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출자금액, 출자·투자대상의 개수, 출자·투자기간에 대한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

- 소득공제 혜택의 수혜자들은 대략 23.6%의 출자금액 증가효과가 있다고 응답함

- 해당 제도의 수혜자들 중 50%는 해당 제도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투자대상의 개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적으로 0.6개의 투자대상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응답함

- 동 제도의 수혜자들 중 40%는 해당 제도가 출자·투자기간을 증가시켰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적인 증가기간은 약 4.4개월인 것으로 추정됨

<표 V-15> 소득공제 혜택의 출자 증가효과 유무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사례 수	충분한 효과 있음	효과 없음
전체		18	94.4	5.6
수혜여부	수혜자	12	100.0	0.0
	비수혜자	6	83.3	16.7
소득세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5	100.0	0.0
	비사업자	13	92.3	7.7
성별	남성	15	100.0	0.0
	여성	3	66.7	33.3
연령별	19~29세	2	100.0	0.0
	30대	5	80.0	20.0
	40대	8	100.0	0.0
	50대	3	100.0	0.0

<표 V-16> 소득공제 혜택이 출자·투자대상의 개수에 미친 영향(2020년)

(단위: 명, %, 개)

구분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증가시킴	평균 증가개수	평균 증가비율
전체	10	50.0	50.0	0.6	10.0

주: 응답내용에는 “①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③ 증가시켰다” 외에 “② 감소시켰다”도 있지만 응답결과가 없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음

<표 V-17> 소득공제 혜택이 출자·투자기간에 미친 영향(2020년)

(단위: 명, %, 개월)

구분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증가시킴	평균 증가 개월	평균 증가비율
전체	10	60.0	40.0	4.4	22.0

주: 응답내용에는 “①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③ 증가시켰다” 외에 “② 감소시켰다”도 있지만 응답결과가 없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음

라. 원천세 자료를 활용한 개인투자자의 직·간접투자 현황

국세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원천세 자료에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음

○ 확보 가능한 자료 수준에서는 귀속년도 기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관련 정보를 국세청 미시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음

- 자료의 기간 사이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벤처투자신탁 투자금액의 최대 금액 기준이 신설되었지만 국세청 미시자료에서는 해당 부분을 식별할 수 없음
 - 귀속년도 2021년도부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나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투자에서 벤처투자신탁 투자금액 부분을 개별적으로 기입하게 되어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나누어 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원천세 자료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금액이 나누어져 있지만, 종합소득세 자료와 법인세 자료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
- 추후 본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투자 종류에 대한 구분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수적임
 -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구분된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본 조세특례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따라 세액감면 비율이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질적인 세액감면 비율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세액공제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 자료가 필수적임
- 원천세의 표본과 종합소득세 표본의 개별적 특성이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에 가용한 자료인 원천세 표본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분석에 활용한 자료 특성

- 귀속년도 기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금액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함
- 다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인한 총세액공제 금액만 알 수 있음
 - 2018년 2월 18일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의 제한 요건이 신설되었으나, 이 부분을 간접투자 항목에서 분리한 정보를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또한 2016년까지 귀속년도를 중소기업창업투자년도로 동일시하여 납세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6년과 2017년 투자금액을 분리하여 기록하였고, 그 이후인 2018년부터 본 제도의 신청기간 요건(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에 해당하는 3개년도의 투자금액을 분리하여 기입하는 형태로 바뀜

- 위의 한계점을 고려하고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함

□ 기술 통계 분석

○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의 분포

- 원천세 자료를 기준으로 2018년에 세액공제를 신청한 납세자는 총 11,458명이며, 직접투자가 68.24%(7,819명) 간접투자가 27.64%(3,167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직접투자의 형태로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음
- 귀속년도 2019년에는 직전년도에 비해 조세특례 혜택을 신청한 납세자가 149.37% 증가하였으며, 모든 투자 형태에서 그 수가 증가함
- 또한, 2019년에는 직접투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에 간접투자 비중이 증가하여 간접투자 비중이 절반 이상이 되었음
- 2020년에는 2019년도에 비하여 수혜자가 대략 17.63% 증가하였으며 모든 투자 형태에서 그 수가 증가하였음
- 구체적으로 2020년 간접투자 증가폭에 비하여 직접투자 증가폭이 더 큰 편이며, 이에 따라 두 투자 형태의 비중이 비슷해짐

<표 V-18> 투자 종류의 분포(원천세)

(단위: %, 명)

구 분	2018		2019		2020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직접투자	68.24	7,819	44.65	12,759	48.11	16,169
간접투자	27.64	3,167	52.62	15,035	48.40	16,266
혼합투자	4.12	472	2.73	779	3.50	1,175
총합계	100.00	11,458	100.00	28,573	100.00	33,610
증가율				149.37%		17.63%

주: 1. 혼합투자는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를 모두 실시한 경우임
 2.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

○ 귀속년도 기준 2018년도의 투자금액의 분포

- 2018년의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의 총금액은 각각 5,136억원과 4,438억원으로 직접투자의 총액이 더 크나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53.65%와 46.35%로 납세자 수의 비율보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이러한 차이는 절반에 가까운 직접투자자들이 3천만원 이하에 분포하고 있는 사실에서 기인함
- 사례 수 기준으로 3천만원 이하의 직접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천만원 초과 직접투자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직접투자자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반면에 직접투자 금액을 기준으로는 5천만원 초과 직접투자자, 3천만원 이하의 직접투자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직접투자자 순으로 총투자금액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표 V-19〉 투자 금액의 분포(원천세, 귀속년도 2018년)

(단위: %, 명, 억원)

직접투자 금액	비율	사례 수	직접투자 금액	간접투자 금액
0	27.64	3,167	0	3,631
3천만원 이하	49.54	5,676	572	126
5천만원 이하	6.71	769	320	49
5천만원 초과	16.11	1,846	4,244	633
총합계	100.00	11,458	5,136	4,438

주: 직접투자 금액과 간접투자 금액이 모두 있는 경우는 해당 직접투자 금액 분위에 있는 납세자들의 간접투자 금액의 총합을 의미함

○ 귀속년도 2019년도의 투자금액의 분포

- 2019년의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의 총액은 각각 9,456억원과 1조 4,725억원으로 간접투자자의 총액이 직접투자 금액을 넘음
- 비율로 환산하면 직접투자 금액은 총투자금액의 39.11%를, 간접투자 금액은 60.89%를 차지하여 납세자 수의 비율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임
- 이는 간접투자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직접투자에 비하여 세금공제 혜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여, 현행 제도인 간접투자 금액 대비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투자자들을 제한적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다만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율은 2018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경제적 요소들이 세액공제 혜택보다 훨씬 크게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납세자 수 기준으로 3천만원 이하의 직접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5천만원 초과 직접투자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직접투자자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전년도와 동일함
- 반면에 직접투자 금액을 기준으로는 5천만원 초과 직접투자자, 3천만원 이하의 직접투자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직접투자자 순으로 총투자금액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전년도와 동일함

〈표 V-20〉 투자 금액의 분포(원천세, 귀속년도 2019년)

(단위: %, 명, 억원)

직접투자 금액	비율	사례 수	직접투자 금액	간접투자 금액
0	52.92	15,122	0	13,461
3천만원 이하	31.75	9,072	893	184
5천만원 이하	4.23	1,210	498	0
5천만원 초과	11.09	3,169	8,066	1,080
총합계	100.00	28,573	9,456	14,725

주: 직접투자 금액과 간접투자 금액이 모두 있는 경우는 해당 직접투자 금액 분위에 있는 납세자들의 간접투자 금액의 총합을 의미함

○ 귀속년도 2020년도의 투자금액의 분포

- 2020년의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의 총액은 각각 1조 1,697억원과 1조 3,828억원으로 2019년과 동일하게 간접투자자의 총액이 직접투자 금액을 넘으나 간접투자자의 총액은 다소 감소하였음
- 총금액 대비 비율을 보면 직접투자 금액은 총투자금액 대비 45.83%를, 간접투자 금액은 54.17%를 차지하여 납세자 수의 비율에 비하여 간접투자가 다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직접투자에 비하여 간접투자가 조세특례 혜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현행 제도인 간접투자 금액 대비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그러나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율은 이전과 대비하여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경제적 요소들이 세액공제 혜택보다 훨씬 크게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납세자 수는 3천만원 이하의 직접투자자, 5천만원 초과 직접투자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직접투자자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여 과거와 동일함
- 직접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5천만원 초과 직접투자자, 3천만원 이하의 직접투자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직접투자자 순으로 총액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과거 2개년도와 동일한 형태를 보임

<표 V-21> 투자 금액의 분포(원천세, 귀속년도 2020년)

(단위: %, 명, 억원)

직접투자 금액	비율	사례 수	직접투자 금액	간접투자 금액
0	48.40	16,266	0	11,390
3천만원 이하	32.78	11,017	1,217	328
5천만원 이하	5.66	1,903	777	181
5천만원 초과	13.16	4,424	9,703	1,930
총합계	100.00	33,610	11,697	13,828

- 주: 1. 혼합투자자는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를 모두 실시한 경우임
 2.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

- 종합적으로 원천세 자료 기준으로 투자자와 투자금액이 모두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최근 간접투자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 현행 제도인 간접투자 금액의 10% 세액공제 혜택이 간접투자자를 제한적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 다만 간접투자자와 직접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이전부터 유지가 되어 왔으나 2018년 대비 2019년과 2020년에 간접투자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세액공제 혜택 이외의 다른 경제적 요소가 훨씬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가. 법인세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

- 이용 데이터
 - 국세청 법인세 행정자료

- 법인의 특징(업태, 업종, 기업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 감면세액총액 등)과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포함된 국세청 추출 표본 활용
- 제도가 시행된 시기인 귀속연도 2017~2019년(시행연도 기준으로 2018~2020년) 표본 활용
-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시기인 귀속연도 2016년과 시행된 귀속연도 2017년(시행연도 기준으로는 각각 2017 및 2018년)의 경우 동일한 법인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 형식의 추출 표본 이용

□ 세액공제 자료 현황

- 2018~2020년 세액공제감면
 -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건수 기준으로 약 54.5%를 차지함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18E)는 건수 기준으로 약 17.0%를 차지. 그다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로 약 11.6%를 차지함
- 세부 세액공제 자료를 수혜기업의 주요 세무변수 자료와 통합하여 분석에 활용

<표 V-22> 2018~2020년 세액공제감면 빈도 및 비중

(단위: 건, %)

공제감면명	빈도 수	비중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40	8.6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33	1.19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471	17.0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14	0.51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14	0.51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139	5.02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322	11.6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508	54.46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8	1.01
계	2,769	100

□ 시행연도 2018~2020년 자료의 요약 통계

-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이질성

- 수혜기업의 과세표준 평균은 2,320억원인 반면, 비수혜기업의 표본 평균은 1.8억원으로 매우 큰 차이가 남
 - 수혜기업의 과세표준 중위값은 122억원인 반면, 비수혜기업의 중위값은 500만원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산출세액의 경우, 수혜집단의 평균은 551억원인 반면, 비수혜집단의 평균은 약 0.9억원으로 역시 큰 차이를 보임. 중위값의 경우에도 평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격차는 작지만 여전히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큼
 - 영업손익의 경우, 수혜집단의 평균은 2,230억원인 데 비하여 비수혜집단의 표본 평균은 2.2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임
 - 세액감면공제의 경우, 수혜집단의 평균은 94억원인 반면, 비수혜집단의 표본 평균은 0.2억원으로 큰 격차를 보임
 - 총부담세액의 경우, 수혜집단 평균은 473억원인 반면, 비수혜집단 표본 평균은 0.8억원으로 격차가 매우 큼
- 수혜집단 내 이질성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수혜집단 내 과세표준, 산출세액, 영업손익 및 세액감면공제액의 표준편차가 매우 커서 수혜집단 내의 격차도 매우 큼을 알 수 있음

<표 V -23>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요약 통계(제13조의2, 법인세)

(단위: 억원)

변수	수혜집단(처치집단)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관측치수
과세표준	2,320	122.0	10,500	0	200,000	471
산출세액	551	25.3	2,600	0	49,800	471
영업손익	2,230	114.0	8,270	-35	141,000	471
세액감면공제	94	1.5	1,150	0	24,400	471
총부담세액	473	24.6	1,660	0	25,500	455
변수	비수혜집단(통제집단)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관측치수
과세표준	1.8	0.05	34.8	-338	1,540	5,162
산출세액	0.9	0.06	9.8	0	342	2,847
영업손익	2.2	0.08	52.4	-406	3,200	5,406
세액감면공제	0.2	0.02	2.8	0	95	1,868
총부담세액	0.8	0.05	9.1	0	339	2827

□ 회귀분석 1: before-after 분석

-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7년과 시작된 2018년 자료를 이용한 분석
 - 이 시기 자료는 패널데이터 구조로 동일한 법인의 변수에 대한 변화분을 관측할 수 있음
 - 2017년은 제도 시행 이전으로 수혜자가 없음
- 2018년 수혜법인
 - 2018년 공제감면세액은 2017년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12.2억원 감소하여 해당 세액공제 수혜가 전체 공제감면 세액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음
 - 2018년 총부담세액은 2017년에 비하여 평균 189억원 증가하여, 해당 세액공제 수혜가 총부담세액의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였음
 - 전체 공제감면세액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제외한 여타 세액공제는 2018년 수혜법인의 경우 2017년에 비하여 평균 약 14.2억원이 감소
- 2018년 비수혜법인
 - 2018년 공제감면세액은 2017년에 비하여 평균 43만원 감소
 - 2018년 총부담세액은 2017년에 비하여 평균 580만원 증가
 - 2018년 여타 세액공제는 2017년에 비하여 평균 약 43만원 감소
- 2017~2018년 이중차분
 - 별도의 설명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중차분 평균을 추정
 - 해당 제도의 시행은 수혜법인의 공제감면세액을 비수혜법인에 비하여 약 12.2억원 더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제도의 시행은 수혜법인의 총부담세액을 비수혜법인에 비하여 약 188.9억원 더 증가시킨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남. 이는 벤처기업출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절세 수단으로서 기능이 약하였음을 시사함
 - 해당 제도의 시행은 수혜법인의 여타 세액공제액을 비수혜법인에 비하여 약 14.2억원 더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해당 세액공제가 여타 세액공제를 구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을 시사함
- 분석의 한계
 - 단순한 평균의 이중차분 결과이기 때문에 R&D 세액공제 축소 등 2018년 세제개편 효과를 반영하지 못함

- 해당 제도의 도입뿐 아니라 여타 제도의 변화가 2018년에 이루어졌지만, 그에 대한 통제가 분석상 어려운 한계 존재

<표 V -24> 2017~2018년 공제감면세액 및 총부담세액 증가분: 수혜기업 vs 비수혜기업

수혜기업					
	Obs	Mean (A)	Std. Dev.	Min	Max
공제감면세액 증가분	64	-122,000	1,250,000	-9,780,000	1,110,000
총부담세액 증가분	78	1,890,000	7,590,000	-15,500,000	49,800,000
여타 세액공제 증가분	64	-142,000	1,250,000	-9,790,000	1,090,000
비수혜기업					
	Obs	Mean (B)	Std. Dev.	Min	Max
공제감면세액 증가분	247	-43	1,970	-18,700	7,020
총부담세액 증가분	426	580	6,810	-24,400	76,700
여타 세액공제 증가분	247	-43	1,970	-18,700	7,020
이중차분 평균(mean difference-in-difference, A-B)					
공제감면세액			-121,957		
총부담세액			1,889,420		
여타세액공제			-141,957		

주: 1. 단위는 만원
2. 시행연도 기준 2017년과 2018년 증가분

- 2017~2018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한 선형회귀분석
 - 제도 시행 이후 더미변수(after), 수혜더미(treat), treat와 after의 교차항, 통제변수로서 산출세액을 이용하여 고정효과 모형으로 회귀분석
 - treat는 2018년에 해당 세액공제를 받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며, 2017년에는 0의 값을 가짐
 - after더미는 2018년에 1이며 그렇지 않으면 0임
 - 정책 시행 효과인 교차항 계수의 추정값이 모두 0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제도 시행은 수혜법인의 공제감면세액을 16.8억원 줄이고, 총부담세액을 13.5억원 높이고, 여타 세액공제를 17.9억원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V-25> 선형회귀분석 결과(제13조의2, 법인세)

설명변수	피설명변수(dependent variable)		
	공제감면세액	총부담세액	여타세액공제
after 더미	-526,013.3 (-0.43)	164,158.7 (0.23)	-508,782.5 (-0.42)
treat* after	-1.68×10^9 (-0.97)	1.35×10^9 (0.94)	-1.79×10^9 (-1.04)
산출세액	0.0216506 (1.62)	0.9796** (76.1)	0.0176 (1.49)

주: 1. () 안의 숫자는 t-값임

2. **는 모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의 p-value가 0.01보다 작음을 의미

□ 매칭을 이용한 분석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집단 간의 이질성을 배제
 - 처치집단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통제집단 내 법인으로 구성된 비교 집단을 구축하여 처치집단과 비교
 -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결과변수 평균의 차이인 ATET를 추정
- DID 매칭을 이용한 수혜법인과 비수혜법인의 정책 시행 전후 비교
 - 수혜법인과 비수혜법인의 시행 전과 후의 전체 세액공제 증가분을 비교하여 동 제도가 추가적인 세액공제 증대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단순히 여타 세액공제를 구축한 것인지를 분석
 - 이는 시행 연도 이전인 2017년 자료와 시행 첫 해인 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가능
 - 시행 전의 과세표준 등 여타 변수를 통제한 후 상술한 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공제감면세액 및 총부담세액 이전 단계에서 결정되는 변수들은 통제변수들로 이용 가능
 - ※ 과세표준 => 세율적용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총부담세액
- 연도별 횡단면 매칭(cross sectional matching)
 - 2018년부터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해당 세액공제의 수혜 효과 분석 가능
 - 이는 앞에서 이루어진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매칭과 동일한 방법임

□ 2017~2018 DID 매칭 분석

- 2017년과 2018년에 모두 존재하면서 벤처기업출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과 모두 존재하면서 2018년에 해당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을 비교
 - 2017년 산출세액과 영업이익을 매칭 변수로 이용
 - 처치집단의 크기는 48개이며 248개의 통제집단에서 가장 유사한 48개의 기업을 매칭하여 비교집단 구성
- 추정결과
 - 해당 세액공제의 수혜는 수혜집단 총부담세액을 약 0.06원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는 매우 작은 규모이며 통계적인 유의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세액공제의 수혜는 수혜집단의 여타 세액공제를 약 4.9억원 늘리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표 V-26> 매칭을 이용한 ATET 추정결과(제13조의2, 법인세)

	ATET 추정값
결과변수	2018
총부담세액(단위: 원)	0.06 (0.02)
여타세액공제(단위: 억원)	4.9* (3.03)

- 주: 1. 여타세액공제는 벤처기업출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공제
 2. () 안의 값은 표준오차
 3. * 은 모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의 p-value가 0.05보다 작음을 나타냄

□ 매칭 결과

- 산출세액과 영업손익을 이용한 매칭 결과,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은 관측가능한 특징들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표 V-27> 수혜집단과 매칭된 비수혜집단 요약 통계

(단위: 억원)

변수	처치집단(n=48)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산출세액	184.5	0.2	646.1	4270.0	0.0
영업손익	738.7	1.8	2697.6	17800.0	-30.9

<표 V-27>의 계속

(단위: 억원)

변수	비교집단(n=48)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산출세액	195.8	0.2	646.1	4120.0	0.0
영업손익	496.2	1.8	3393.8	18100.0	-12700.0

□ 회귀분석 2: 2017~2020년 회귀분석

○ 공제감면세액

- 동 제도의 시행은 수혜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을 약 120.1억원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남
- 동 제도의 시행이 수혜기업의 절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이는 벤처출자 자체가 법인의 절세 수단보다는 잠재적인 이윤을 기대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시사

○ 총부담세액

- 동 제도의 시행은 수혜기업의 총부담세액을 약 125억원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절세의 목적이 아닌 잠재적인 이윤을 위한 투자임을 시사

○ 여타 세액공제

- 동 제도의 시행은 수혜기업의 여타 공제감면세액을 약 121억원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 출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여타 세액공제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V-28> 2017~2020년 회귀분석 결과(제13조의2, 법인세)

(단위: 원)

설명변수	피설명변수(dependent variable)		
	공제감면세액	총부담세액	여타세액공제
after 더미	$5.00 \times 10^9^{**}$ (3.3)	$-3.40 \times 10^9^{**}$ (-3.34)	$5.01 \times 10^9^{**}$ (3.3)
treat* after	$-1.21 \times 10^{10}^{**}$ (-3.6)	$1.25 \times 10^9^{**}$ (3.61)	$-1.21 \times 10^9^{**}$ (-3.61)

<표 V-28>의 계속

(단위: 원)

설명변수	피설명변수(dependent variable)		
	공제감면세액	총부담세액	여타세액공제
산출세액	0.39** (4.99)	0.61** (7.83)	0.39** (4.99)
연도별 더미	고려	고려	고려
표본 크기	2704	3727	2704

- 주: 1. after더미는 2018년 이후에 1이며 그렇지 않으면 0
 2. treat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3. **는 모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의 p-value가 0.01보다 작음을 의미
 4. () 안은 t값임

□ 횡단면 매칭 분석

- 관측 가능한 특징 측면에서 수혜기업과 유사한 비수혜기업을 찾아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수혜가 결과변수에 미친 처치집단에 대한 평균 처치효과(ATET)를 추정
 - 결과변수로는 총부담세액, 벤처기업 출자 이외의 여타 세액공제, 세액공제/산출세액 비율, 총부담세액/산출세액 비율을 각각 이용
 - 관측가능한 특징인 산출세액과 영업이익을 이용하여 Mahalanobis distance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법인과 매칭

□ ATET 추정 결과

- 총부담세액에 대한 ATET 추정 결과
 - 벤처기업출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수혜기업은 유사한 비수혜기업에 비하여 시행연도 기준으로 2018년 및 2019년에는 총부담세액이 각각 약 20.8억원 및 4.1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2020년에는 8.1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추정결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여타 세액공제에 대한 ATET 추정 결과
 - 벤처기업출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수혜기업은 유사한 특징을 가진 비수혜기업에 비하여 여타 세액공제가 큰 것으로 추정됨
 - 시행연도 기준으로 2018년에는 10.4억원, 2019년 8.4억원, 그리고 2020년에는 22.8억원 더 큰 것으로 추정됨

- 추정 결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추정 결과는 벤처기업출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여타 세액공제를 구축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시사함
- ‘총세액공제/산출세액’ 및 ‘총부담세액/산출세액’에 대한 ATET 추정 결과
 - 두 결과 변수 모두 연도별로 추정 결과의 부호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총세액공제/산출세액’의 경우, 수혜기업은 2018년에는 0.26%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 및 2020년에는 각각 1.21%p 및 1.39%p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됨
- ‘총부담세액/산출세액’의 경우, 수혜기업은 2018년에는 0.22%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 및 2020년에는 각각 1.38%p 및 1.63%p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됨
 - 두 결과변수 모두 각 시행연도에서 추정 결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됨

〈표 V-29〉 연도별 ATET 추정결과(제13조의2, 법인세)

결과변수	ATET		
	2018	2019	2020
총부담세액(단위: 억원)	-20.8 (-0.80)	-4.1 (-0.57)	8.1 (0.30)
여타 세액공제(단위: 억원)	10.4 (1.09)	8.4 (1.25)	22.8 (0.62)
총세액공제/산출세액 비중(단위: %p)	0.26 (0.09)	-1.21 (-0.48)	-1.39 (-0.57)
총부담세액/산출세액(단위: %p)	-0.22 (-0.08)	1.38 (0.53)	1.63 (0.68)

주: 1. 여타 세액공제는 벤처기업출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공제
 2. () 안의 값은 *t*-값

- 매칭을 이용한 추정 결과는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매칭을 이용한 추정 결과와 회귀분석 결과가 일관된 유의성 있는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이는 해당 제도의 효과가 데이터에 의해서 뚜렷하지 증명되지 않음을 시사

□ 처치집단과 매칭된 집단의 통제변수 분포 요약

- 시행연도 기준 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처치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통제집단 내 기업을 매칭하여 통제집단을 구성한 결과, 요약 통계값이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V-30> 2018년 매칭 결과

(단위: 억원)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처치집단					
산출세액	109	0	713	5,724	0
영업이익	441	2	2,852	22,930	-2
통제집단					
산출세액	119	0	842	6,789	0
영업이익	488	2	3,233	26,000	-2

- 주: 1. 2018년 처치집단 수는 65개
 2. 통제집단은 페어매칭(pair matcing)을 이용

- 시행연도 기준 2019년 자료를 이용한 매칭 결과, 요약 통계값이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영업이익의 최댓값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임

<표 V-31> 2019년 매칭 결과

(단위: 억원)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처치집단					
산출세액	37	0	184	1,650	0
영업이익	151	2	698	5,824	-6
통제집단					
산출세액	33	0	176	1,690	0
영업이익	169	2	812	6,917	-9

- 주: 1. 2019년 처치집단 수는 100개
 2. 통제집단은 페어매칭(pair matcing)을 이용

- 시행연도 기준 2020년 자료를 이용한 매칭 결과, 처치집단과 요약집단의 요약 통계값은 2018년 및 2019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산출세액의 경우 처치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및 최댓값이 통제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업이익은 통제집단이 처치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표 V-32> 2020년 매칭 결과

(단위: 억원)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대	최소
처치집단					
산출세액	199	0	951	8,457	0
영업이익	544	2	2,437	16,800	-15
통제집단					
산출세액	168	0	769	6,874	0
영업이익	658	2	3,031	25,400	-23

- 주: 1. 2020년 처치집단 수는 137개
 2. 통제집단은 페어매칭(pair matcing)을 이용

나.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목표 달성도 평가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정책목표 달성도 파악을 위하여 법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대략 평균적으로 100여 개 내외의 본 조세특례의 수혜자들이 있지만, 정보 보호 때문에 기업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의 접근이 불가능함
 - 차선책으로 벤처캐피탈협회를 통하여 법인투자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효과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다만 벤처캐피탈협회가 정보 보호 때문에 법인투자자의 목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창투사 등에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설문을 실시함
 - 정보 보호 때문에, 설문조사 업체에서 직접 설문기업들에게 연락할 수 없었으며 벤처캐피탈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창투사 등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16% 정도의 수득률을 보여 다른 설문조사와 비교할 때 평균적인 수득률을 보였으나 설문조사를 실시한 전체표본 자체가 작아 총수득된 사례 수는 8개임

- 따라서 해당 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에는 주의해야 함

- 설문조사를 응답한 법인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분포 및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전체 8개의 일반기업 중 귀속년도 2020년 기준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은 투자자는 62.5%(5개)이었음
 -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개사,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1개사가 응답함
 - 응답기업의 수가 매우 적어서 통계적인 의미는 낮음

<표 V-33> 법인투자자 응답자 특성

(단위: 개, %)

		사례 수	비중
전 체		8	100.0
수혜 여부	수혜기업	5	62.5
	비수혜기업	3	37.5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6	75.0
	중견기업	1	12.5
	대기업	1	12.5

- 귀속년도 2020년 기준 수혜자의 평균 투자금액이 비수혜자의 평균 투자금액보다 높은 경향을 보임
 - 수혜기업의 높은 투자금액은 대부분 수혜기업 중 대기업의 벤처투자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수혜기업의 평균이 비수혜기업보다 더 낮음
 - 다만 사례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음

<표 V-34> 2020년 법인투자자의 벤처기업 등에 투자 규모

(단위: 개, 만원)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전 체		7	982,917	1,961,819.0
수혜여부	수혜기업	5	1,192,675	2,341,562.6
	비수혜기업	2	458,521	625,111.4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6	250,442	334,237.8
	중견기업	0	-	-
	대기업	1	5,377,767	-

- 설문조사 결과, 법인투자자들은 동 과세특례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함
 - 과세특례 혜택의 출자 증가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5.0%로 동 제도의 효과를 매우 높게 평가함
 - 수혜기업들은 전부 출자 증가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비수혜기업의 경우에는 33.3%가 출자 증가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해당 제도의 수혜 여부에 따라 효과성의 인식이 극명하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례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이질적인 인식이 전체 분포에서도 나타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표 V-35>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의 출자 증가 효과에 대한 응답

(단위: 개, %)

		사례 수	충분한 효과 있음	효과 없음
전 체		8	75.0	25.0
수혜여부	수혜기업	5	100.0	0.0
	비수혜기업	3	33.3	66.7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6	83.3	16.7
	중견기업	1	0.0	100.0
	대기업	1	100.0	0.0

- 전반적으로 법인투자자들은 과세특례 혜택이 출자금액, 출자·투자대상의 개수, 출자·투자기간에 대한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함
 - 과세특례 혜택의 수혜기업들은 대략 12.5%의 출자금액 증가효과가 있다고 응답함
 - 수혜기업의 20%는 본 과세특례제도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투자 대상의 개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적으로 2.0개의 투자대상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응답함
 - 동 제도의 수혜기업의 20%는 해당 제도가 출자·투자기간을 증가시켰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적인 증가기간은 약 4.8개월인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응답기업 수가 적어 응답 결과가 전체 분포를 대변한다고 확대 해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표 V-36>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출자대상의 개수에 미친 영향(2020년)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증가시킴	평균 증가개수	평균 증가비율
전체	5	80.0%	20.0%	2.0	10.0%

주: 응답내용에는 “①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③ 증가시켰다” 외에 “② 감소시켰다”도 있지만 응답결과가 없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음

<표 V-37>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투자기간에 미친 영향(2020년)

(단위: 개, %, 개월)

구분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증가시킴	평균 증가 개월	평균 증가비율
전체	5	80.0%	20.0%	4.8	10.0%

주: 응답내용에는 “①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③ 증가시켰다” 외에 “② 감소시켰다”도 있지만 응답결과가 없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음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가. 설문조사를 통한 효과성 분석

□ 설문조사 분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하 창투자 등)의 자료는 동일 성향을 가진 대조군을 설정하기 어렵고 비교적 생존기간이 짧아 회귀분석보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성을 파악함
- 설문조사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하는 창투자 등의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시스템에서는 총 294개의 창투자, 창업기획자, LLC, 신기술사, 기금운용사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음
 - 총 49개의 창투자 등이 응답하였으며, 이는 16.7% 정도의 수득률을 의미함
-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 해당 제도의 기대효과: 양도차익 등이 인센티브가 되어 창투자 등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이는 벤처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음
 - 상술한 기대효과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상술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

- 설문조사에 응답한 창투사 등은 다음과 같은 분포 및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창투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총 49개 응답기업 가운데 35개사로 69.4%임
 -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만 받은 기업이 18개,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에 대해 모두 비과세를 받은 기업이 15개, 배당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은 기업이 2개임
 - 두 항목 모두 비과세를 받은 적이 없는 창투사 등이 14개임
 - 비과세를 받은 적이 없는 14개 창투사 등 중 8개는 해당 제도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 이들 8개 창투사 등 중 4개사는 동 제도를 몰랐던 이유로 세법 내용의 복잡성을 꼽음
 - 해당 제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용하지 않았던 6개사의 이유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가 1개사, “다른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아서(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서)”가 1개사, “관련 세법규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비과세로 인한 조세감면액을 사후적으로 추징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해서”가 1개사, 그리고 “기타 이유”가 3개사로 조사됨

<표 V-38> 창투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 비과세 수혜

(단위: 건, %)

구 분	사례 수(비중)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와 배당소득 비과세를 모두 받은 적이 있음	15(30.6)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만 받은 적이 있음	18(36.7)
배당소득 비과세만 받은 적이 있음	2(4.1)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와 배당소득 비과세를 모두 받은 적이 없음	14(28.6)
합계	49(100)

-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수혜를 받은 창투사의 출자금액 평균은 약 839억원으로 약 261억원인 비수혜 창투사 출자금액 평균을 크게 상회
 - 이는 주로 법인투자가로부터 모집한 출자액 평균의 차이에서 기인함. 수혜 창투사 법인 모집 출자액은 약 861억원인 반면, 비수혜 창투사 평균은 약 263억원임
 - 자체 재원 및 개인투자가 모집 금액의 경우 수혜 창투사의 평균 금액이 비수혜 창투사의 평균 금액을 하회함

- 자체 재원 출자액의 경우 수혜 창투사의 평균은 약 71억원인 반면, 비수혜 창투사의 평균은 약 129억원임
- 개인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출자액 평균은 수혜 창투사는 약 47억원인 반면, 비수혜 창투사는 약 388억원임

<표 V-39> 창투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 비과세 수혜 여부와 출자금액 평균

(단위: 개, 만원)

		사례 수	자체 재원	개인투자자 모집 금액	법인투자자 모집 금액	전체 투자 금액
전 체		49	801,658	1,034,211	7,503,842	6,739,112
수혜 여부	수혜자	35	714,500	465,072	8,605,265	8,392,723
	비수혜자	14	1,289,739	3,879,903	2,626,110	2,605,084

주: 1. 투자가 발생한 경우만 고려하여 평균 산출

2. 전체 투자금액은 개별 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간주한 세 항목의 합

□ 제도의 효과성

- 응답자의 83.7%인 41개 창투사가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출자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
 - 수혜 창투사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중이 91.4%로 비수혜 창투사의 64.3%보다 훨씬 높아 상대적으로 해당 제도에 대하여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표 V-40> 비과세 혜택의 출자 증가 도움 여부 응답

(개, 단위: %)

		사례 수	도움된다	도움이 안 된다
전 체		49	41(83.7)	8(16.3)
수혜 여부	수혜자	35	45(91.4)	4(8.6)
	비수혜자	14	32(64.3)	18(35.7)

- 비과세 혜택이 기관의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에 미친 효과에 대한 질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응답기관의 20.4% 및 28.6%가 각각 ‘매우 큰 영향을 미침’ 및 ‘큰 영향을 미침’으로 답변함
 - 창투사 및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LLC)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기금운용법인 등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 수혜기관은 비수혜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표 V-41> 비과세 혜택이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에 미친 효과 응답

(단위: 개, %)

		사례 수	전혀 영향이 없음	작은 영향을 미침	보통	큰 영향 미침	매우 큰 영향 미침
전 체		49	10.2	8.2	32.7	28.6	20.4
기관 유형	창투사	25	4.0	8.0	32.0	28.0	28.0
	창업기획자	7	14.3	14.3	28.6	28.6	14.3
	신기술사업자	4	25.0	0.0	50.0	25.0	0.0
	LLC	7	0.0	0.0	28.6	42.9	28.6
	기금운용사	6	33.3	16.7	33.3	16.7	0.0
수혜 여부	수혜자	35	5.7	5.7	31.4	31.4	25.7
	비수혜자	14	21.4	14.3	35.7	21.4	7.1

주: 비수혜자는 개별 조세특례를 받았을 경우의 예상 영향을 응답함

- 비과세 혜택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금액을 약 8.4% 정도 증가시켰다고 응답함

- 투자재원별로는 자체 재원이 7.7%, 개인투자자로부터의 모집금액이 9.0%, 법인투자자로부터의 모집금액이 8.7%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파악됨

<표 V-42> § 13가 벤처기업 등의 출자·투자의 증가비율(귀속연도 2020년 기준)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자체 재원	개인투자자 모집금액	법인투자자 모집금액	계
전체		41	7.7	9.0	8.7	8.4
수혜 여부	수혜자	34	7.8	8.6	9.0	8.5
	비수혜자	7	7.5	10.8	7.1	8.0

주: 1. 비수혜자는 개별 조세특례를 받았을 경우의 예상 영향을 응답함

2. 응답의 내용은 “① 5% 이하 ② 5% 초과 10% 이하 ③ 10% 초과 15% 이하 ④ 15% 초과 20% 이하 ⑤ 기타”인데, 개별 응답의 중간값(①부터 ④까지에서 각각 2.5%, 7.5%, 12.5% 및 17.5%) 및 ⑤에서 개별적으로 응답한 값을 이용해서 증가비율을 계산함

- 비과세 혜택이 벤처기업 등의 출자·투자대상의 개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비과세 혜택이 출자·투자대상의 개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88.4%가 응답하였음
 - 본 제도가 평균적으로 출자·투자대상을 0.5개 증가시켰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창투자 등의 평균 투자개수인 6.4개의 약 7.8%를 차지함
 - 수혜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때, 85.3%의 기업이 본 제도가 출자·투자대상의 개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적인 증가개수는 0.6개로 파악됨
 - 수혜기업의 경우 해당 제도가 출자·투자대상의 개수를 증가시킨다는 일부 응답자가 존재하였으나, 비수혜기업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영향이 없다고 조사됨

<표 V-43> § 13가 출자·투자대상의 개수에 미친 영향(귀속연도 2020년 기준)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증가시킴	평균 증가개수	평균 증가비율	
전체	43	88.4	11.6	0.5	7.8	
수혜 여부	수혜자	34	85.3	14.7	0.6	9.9
	비수혜자	9	100.0	0.0	0.0	0.0

- 주: 1. 비수혜자는 개별 조세특례를 받았을 경우의 예상 영향을 응답함
 2. 응답내용에는 “①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③ 증가시켰다” 외에 “② 감소시켰다”도 있지만 응답결과가 없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음
 3. 평균 증가개수 및 증가비율의 계산 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의 응답결과는 증가개수와 증가비율을 각각 0개 및 0%로 적용함

- 비과세 혜택이 벤처기업 등의 출자·투자기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비과세 혜택이 출자·투자대상의 개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88.4%가 응답하였음
 - 본 제도의 출자·투자기간 증대효과는 약 1.7개월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응답한 창투자 등의 평균 투자기간인 21.8개월의 약 7.3%를 차지함
 - 수혜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때, 88.2%의 기업이 본 제도가 출자·투자기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적인 증가 개월은 2.1개월로 파악됨

- 출자·투자대상의 개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수혜자와 비수혜자 모두 본 제도의 출자·투자기간 증대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응답비율이 비슷하였음
- 이는 앞서 확인한 신규 출자금액 증대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일부 기업에서 추가된 금액의 일부분을 추가적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

<표 V-44> § 13가 출자·투자기간에 미친 영향(귀속연도 2020년 기준)

(단위: 개, %, 개월)

구분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증가시킴	평균 증가 개월	평균 증가비율
전체		43	88.4	11.6	1.7	7.3
수혜 여부	수혜자	34	88.2	11.8	2.1	9.0
	비수혜자	9	88.9	11.1	0.1	1.1

- 주: 1. 응답내용에는 “①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③ 증가시켰다” 외에 “② 감소시켰다”도 있지만 응답결과가 없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음
 2. 평균 증가개수 및 증가비율의 계산 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의 응답결과는 증가개수와 증가비율을 각각 0개 및 0%로 적용함

Ⅵ. 결론 및 개선방안



VI. 결론 및 개선방안

-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과세특례들의 정책목표는 사업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를 구체적인 개별 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투자 확대를 개인 거주자로부터 벤처기업 등의 초기 창업자금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투자 확대를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확대 유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투자 확대를 개인 및 법인투자자의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지속적 참여 유도를 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 본 보고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제도의 일몰연장을 건의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벤처투자 촉진 「조세특례제한법」들과의 대상 일치
 - 벤처기업별 세제혜택 한도 설정
 - 특수관계인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개선방안
 - 적격 투자대상 업종 관련 개선방안
 - 세제혜택의 벤처투자 효과 파악을 위한 자료 구축

1. 과세특례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론

- 벤처투자 현황, 해외사례,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등을 바탕으로 본 제도의 일몰 연장을 건의함

- 벤처투자 현황 분석 결과, 벤처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업 초기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정부 정책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므로 세제지원을 통하여 민간벤처투자를 유인할 정책 타당성이 인정됨

- 2021년 발간된 중소기업부의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정부 정책지원금” 의존도는 64.1% 수준으로 “벤처캐피털 및 엔젤투자” 의존도인 2.2%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임

□ 해외사례 분석 결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들이 존재하나 다음과 같은 참고할 만한 차별점이 존재함

- 투자자들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적격투자 대상에 대한 산업 제한이 존재함
-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액제한이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자대상인 벤처기업 등에도 존재함
- 미국의 캘리포니아, 캐나다의 토론토 등과 같이 벤처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의 경우,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폐지하거나 줄이는 경향이 있음

□ 타당성 분석 결과, 정부 개입의 필요하며, 제도설계 및 운영 등이 대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파악됨

- 정부 역할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벤처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외부경제에 대한 조세지원의 제공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부 개입의 적절성 근거를 도출할 수 있음
-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은 정책목표, 조세지원 대상 설정 등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파악됨
 - 벤처기업의 만성적인 과소투자자와 높은 정부 정책자금 의존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 벤처투자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본 제도들의 정책목표는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조세지원의 대상을 벤처·창업 생태계 참가자들인 투자자 등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함
 - 다만, 현행 방식에서 조세지원의 적용대상 업종, 납세자의 범위, 투자의 실효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 절부터 별도로 논의함

□ 효과성 분석 결과, 동 과세특례제도들이 민간 벤처투자 유치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세제혜택으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 유인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통계적 분석 및 설문조사에서 모두 벤처투자 유인효과를 확인함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법인투자자의 벤처투자 유인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본 제도의 법인투자자 벤처투자 유인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설문조사에서는 제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파악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의 출자금액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쟁점사항 및 제도개선 방향

가. 벤처투자 촉진 조세특례제한법들과의 대상 일치

-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세금혜택 제도들의 적격투자 대상이 불일치하여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유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들의 정책목표는 동일하나 적격투자 대상의 불일치 문제점이 존재함
 - 조세감면제도들의 적격투자 대상의 불일치는 투자대상의 결정에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들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음
- 적격투자 대상의 불일치는 크게 2가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투자지분의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제도 간의 적격투자 대상 불일치
 - 투자자의 종류에 따른 세제혜택 간의 적격투자 대상 불일치
-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제도의 적격투자 대상 불일치의 대표적인 예시는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와 제16조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는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투자 지분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임
 - 두 제도 모두 개인 벤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한 정책목표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적격투자 대상이 상이하어 투자대상 선택에 대한 왜곡을 야기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창업기획자에 대한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서는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서는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반면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서는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변화하는 벤처기업의 형태 및 투자 방식 등을 개정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하고 있으나, 개정 시 모든 벤처투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들의 대상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지 않아 적격 투자대상의 불일치가 발생함
 - 투자자들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한 적격투자 대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위주로 투자할 유인이 크며, 이는 적격투자 대상의 확대에 대한 효과를 낮추게 하는 원인임
- 투자자의 종류에 따른 세제혜택 간의 적격투자 대상 불일치도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개인투자자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와 법인투자자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적용되는 적격투자 대상 불일치를 예로 들 수 있음
- 제16조와 제13조의2는 각각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에게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투자지분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이나, 혜택을 받기 위한 적격투자 대상이 상이함
 - 두 제도 모두 궁극적인 정책목표가 동일하고 세제지원 방식도 유사하나 서로 다른 적격투자 대상으로 인하여 투자주체별로 유도되는 투자 대상에서 차이가 발생함
 -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털의 주된 투자 대상의 차이로 인하여 적격투자 대상이

동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하나,⁷³⁾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비율이 매우 낮아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들이 투자주체별로 개별적인 투자 대상의 제한을 가지는 것은 정책의 목표 달성에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음

나. 벤처기업별 한도 설정

- 본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다루는 「조세특례제한법」들은 벤처기업별 한도 미설정으로 인하여 소수의 벤처기업에 세제 혜택이 편중되는 현상이 존재함
 - 벤처투자의 현황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종합할 때,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상장사들에 대한 투자와 비교하여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투자자와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산업 구조 및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사에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동일한 조세지출 대비 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벤처기업별 세제 혜택 투자 금액의 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주요국에서는 벤처기업별 한도와 연간 최대 혜택 금액을 설정하여 투자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있음

- 주요국은 벤처기업별 한도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설정으로 투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
 - 미국은 벤처기업별 한도 설정의 제한은 없으나, 1980년에 제정된 「소기업투자 촉진법(Small Business Incentive Act)」에 의하여 사모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폐쇄형 투자기구인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의 경우 의무적으로 분산투자 요건이 있음
 - 캐나다는 주별로 벤처기업별 한도 설정이 매우 상이함
 -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와 매니토바 주의 경우, 벤처기업에서 발행된 주식에 대해 세제혜택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평생 한도가 1천만캐나다 달러임
 - 뉴브런즈윅 주는 투자자가 지역사회경제개발기업(CEDC)에 투자할 경우 기업별 연간 최대한도가 300만캐나다달러로 설정되어 있음

73) 최종보고회의 자문위원의 의견임

- 영국은 벤처기업 종류별로 다른 한도를 적용하고 있음
 - 초기기업 투자지원제도(SEIS) 대상기업의 경우 15만파운드, 기업가투자지원제도(EIS) 대상기업의 경우 1,200만파운드와 같이 평생 한도가 설정되어 있음
- 다만, 벤처기업별 한도 설정이 벤처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정책의 전체적인 효과를 낮추지 않으면서 보다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한 적절한 수준에서 한도를 설정해야 할 것임
- 특히, 산업과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자금 수준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

다. 특수관계인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개선방안

- 본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들의 경우 제도의 악용 방지를 위하여 벤처기업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투자자의 경우 세제혜택을 제한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제도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활용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존재함
 - 현재의 특수관계인 정의는 친족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이혼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악용 가능성이 존재함
 - 진화하는 기업형태에 따른 기업들의 실질적 지배관계를 고려하기에는 현재의 친족 중심의 특수관계인의 정의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범위 설정을 수정할 것을 제안함
 - 이혼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가족관계에도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하면 이혼이나 재혼으로 인해 변경된 관계와 함께 지배적 영향력의 기준인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30% 이상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창투조합 비과세 등의 창업·벤처

- 관련 조세특례를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음
- 친인척의 범위 중심에서 벗어나 복잡해진 기업의 지배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종속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제도 정비
 - 각국의 세법상의 특수관계인(Related-party) 및 궁극적 실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s)를 참조하여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지배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한다는 점에서 국제조세에서 다루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의 개념을 참고할 수 있음
-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를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하는 다른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존재
 - 차선책으로 본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각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실현 가능성이 높음

라. 적격 투자대상 업종 관련 개선방안

- 본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들은 벤처기업 등의 산업 및 업종 제한이 실질적으로 없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3조에 따라 창업 7년 이내면서,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업종(유흥 및 사행성 시설)이면 본 「조세특례제한법」들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임
- 본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다루는 「조세제한특례법」의 경우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 시 발생하는 시장 실패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과소투자를 보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진 산업에는 지원할 타당성이 낮아 적격 투자대상의 산업 및 업종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함
- 대부분의 주요국은 유사 제도들의 산업 및 업종 제한이 있으며, 이미 벤처투자가 활발한 지역의 경우 관련 제도들을 폐지하는 경우도 있음
 -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별 감면제도마다 상이한 산업 제한이 존재하며,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벤처투자가 활발하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감면제도가 없음

- 주로 고부가가치 산업 혹은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산업들이 적격투자 대상임
- 캐나다는 주별로 산업 제한이 존재하나, 미국과 동일하게 벤처투자가 활발하게 발생하는 지역인 토론토주와 퀘벡주에는 벤처투자 감면제도가 없음
- 제조업, 관광업, 디지털 산업 등이 적격투자 대상임
- 영국은 적격투자 대상이 아닌 산업들을 명시하는 식으로 산업 제한이 존재함
- 일본의 경우 벤처투자 세액감면 적격 대상 산업이 정해져 있으며, 각 산업별 자본금과 종업원 수의 제한을 다르게 둔 것이 특징임
- 이스라엘의 경우 적격투자 대상이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주된 기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이 존재함

□ 적격투자 대상의 업종 제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함

-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의 융합화로 인하여 산업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및 업종 제한을 둘 경우 제도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나,⁷⁴⁾ 본 제도들이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 시 발생하는 시장 실패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과소투자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진 산업에는 지원할 타당성이 낮음
- 주요국의 경우처럼 고부가가치 산업 혹은 주요 기술과 관련된 산업들로 제한하여 중점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산업정책과 맞물려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탄력관세의 경우와 유사하게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산업의 경제성, 정책성 등을 파악하여 민간과 함께 감면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차선적으로 업종 제한을 하지 않는 대신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인증제도를 강화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적격투자 대상을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인증제도를 받은 기업들로 한정하는 대신 벤처기업 인증과정과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하여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의 융합화에 빠르게 대처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

74) 최종보고회의 자문위원의 의견임

마. 세제혜택의 벤처투자 효과 파악을 위한 자료 구축

- 정확한 분석 및 정책 설계를 위하여 벤처투자 형태에 따른 자료 구축이 필수적이나 현재의 활용 가능한 자료는 제한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음
 - 현재 국세청 과세 미시자료의 경우, 원천세 자료에서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대한 부분이 나누어져 있으나 제한적임
 -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아닌 투자금액 정보만 제공
 -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제한이 2017년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되었으나 귀속년도 기준 2020년 자료까지 간접투자금액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금액을 나누어 파악하지 않고 있음
 - 종합소득세 자료에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확인할 수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와 제13조의2의 경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 법인투자자와 창투사 등의 직접 및 간접투자를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보다 효과적인 분석 및 정책 설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안함
 - 종합소득세 자료에서도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정보 제공
 - 간접투자금액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금액도 분리하여 정보 제공
 - 비록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와 제13조의2의 경우, 투자 종류에 따른 세제혜택의 차이가 없으나 추후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위하여 적어도 개인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의 자료 확보가 필요함

참고문헌

- 강대권·전병욱, 「특별법상 투자조합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58권(2), 2016.
-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2022. 6. 16.
-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각 연도
_____,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금융위원회, 『기업성장투자기구(BDC)제도 도입방안』, 2019. 10. 7.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_____, 『간추린 개정세법』, 각 연도
- 김승찬·김홍근, 「개인투자조합 출자자의 출자의사결정요인 실증연구: 벤처기업 투자 의사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제32권(11), 2019.
- 김재진·기은선,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_____,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김재진·김진수,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
- 김재진·양동우, 「벤처캐피탈 투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4), 2014.
- 김재진·홍범교,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김진수·김재진,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 김학수·문운상·우석진·김도형,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한국개발연구원, 2020.
- 류덕현·박기백, 『재정지출과 조세지출간의 최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재정학회, 2012.
- 박성욱·김영훈,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연구: 개인투자 조합을 중심으로」, 제34권 제3호, 『회계정보연구』, 2016.
- 박지영·신현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벤처기업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1호, 2020.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21. 12.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2. 4. 29.

Barry, C. B., Muscarella, C. J., Peavy Iii, J. W., and Vetsuypens, M. R., “The role of venture capital in the creation of public companies: Evidence from the going-public proces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7(2), 1990, pp. 447~471.

Chemmanur, T. J., Loutskina, E., and Tian, X., “Corporate venture capital, value creation, and innovation,”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7(8), 2014, pp. 2434~2473.

Jeng, L. A., and Wells, P. C., “The determinants of venture capital funding: evidence across countries,”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vol. 6(3), 2000, pp. 241~289.

Meggison, W. L., and Weiss, K. A., “Venture capitalist certification in initial public offerings,” *The Journal of Finance*, 46(3), 1991, pp. 879~903.

Wadhwa, A., and Kotha, S., “Knowledge creation through external venturing: Evidence from th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manufacturing industr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9(4), 2006, pp. 819~835.

<미국>

<https://www.lowtax.net/us-tax-guide/investment/the-us-tax-regime-for-venture-capital.html>, 검색일자: 2022. 5. 19.

<https://www.irs.gov/pub/irs-prior/p550-2021.pdf>, 검색일자: 2022. 5. 19.

<https://www.angelcapitalassociation.org/aca-public-policy-state-program-details/>, 검색일자: 2022. 5. 19.

https://www.tax.ny.gov/pit/credits/qetc_capital.htm, 검색일자: 2022. 5. 23.

<https://venturesouth.vc/south-carolina-angel-investor-credit>, 검색일자: 2022. 5. 19.

<https://www.njeda.com/angeltaxcredit/>, 검색일자: 2022. 5. 23.

<https://www.tax.virginia.gov/business-development-credits#qualified-equity-subordinated-debt-investments-credit>, 검색일자: 2022. 5. 23.

<https://oedit.colorado.gov/advanced-industries-investment-tax-credit>, 검색일자: 2022. 5. 23.

<캐나다>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0-500-8581?originationContext=document&transition>

Type=DocumentItem&contextData=(sc.Default)&ppcid=515f5c9e9b464e38b26f80bca6a8072e&comp=pluk#co_anchor_a431421, 검색일자: 2022. 6. 16.

<https://www2.gov.bc.ca/gov/content/employment-business/investment-capital/venture-capital-programs/venture-capital-corporation/tax-credits>, 검색일자: 2022. 5. 9.

<https://www.gov.mb.ca/jec/busdev/financial/sbvctc/>, 검색일자: 2022. 5. 11.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corporations/provincial-territorial-corporation-tax/manitoba-provincial-corporation-tax/manitoba-small-business-venture-capital-tax-credit.html>, 검색일자: 2022. 5. 11.

<https://www.princeedwardisland.ca/en/service/enriched-investment-tax-credit>, 검색일자: 2022. 5. 12.

<https://atlanticcanadabusinessgrants.com/tax-credit/share-purchase-tax-credit/>, 검색일자: 2022. 5. 12.

<영국>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raise-money-by-offering-tax-reliefs-to-investors>, 검색일자: 2022. 5. 2.

<일본>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keiei_innovation/open_innovation/open_innovation_zei.html, 검색일자: 2022. 6. 17.

https://www.chusho.meti.go.jp/keiei/sogyo/2003/030226yuugen_gaiyou.htm, 검색일자: 2022. 6. 22.

<https://angel-tax.tokyo/zeiyugu.php>, 검색일자: 2022. 5. 30.

<이스라엘>

<https://y-tax.co.il/en/angels-law/>, 검색일자: 2022. 5. 16.

https://www.gov.il/he/departments/news/press_03042022c, 검색일자: 2022. 6. 17.

<https://auren.com/il/blog/tax-benefits-for-private-investors-in-innovation-israeli-angels-law/>, 검색일자: 2022. 5. 16. 검색일자: 2022. 5. 16.

<https://en.globes.co.il/en/article-govt-proposes-new-tax-breaks-for-early-stage-startup-investment-1001407976>, 검색일자: 2022. 5. 16.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증권거래세법」, 「공정거래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웹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 등록제도, 등록현황, <https://www.k-startup.go.kr/homepage/businessManage/businessManageFunction.do?mid=30453&sid=388&itemSeq=296945&bizCategoryCode=>

부 록



< 부 록: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2. 7.

Research  Research

< 목 차 >

I. 조사 개요	210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210
2. 조사 설계	210
3. 자료 처리	211
4. 조사 내용	211
5. 응답자 특성	212
II. 조사 결과 요약	214
1. 대상별 각 제도 수혜 현황	214
2. 대상별 제도 인지 여부 및 인지 시기/경로	214
3. 2020년 기준 출자 현황	215
4. 대상별 제도가 출자·투자에 미친 영향	217
5. 대상별 제도 관련 적용요건에 따른 시행 필요 여부	218
6.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	218
7. 대상별 제도 개선 방향	219
III. 창업투자회사 조사 결과	220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 인식 및 활용 ..	220
2.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현황	225
3. 비과세 제도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미친 영향	234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 개선 방향 ..	244
IV. 개인투자자 조사 결과	251
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인식 및 활용	251
2.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현황	255

3. 소득공제 혜택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미친 영향	260
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선 방향	268
V. 법인투자자 조사 결과	274
1.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인식 및 활용	274
2.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현황	277
3. 세액공제 혜택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미친 영향	281
4.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개선 방향	288

< 표목차 >

<표 I-1> 조사 설계	210
<표 I-2> 주요 설문조사 세부 항목	211
<표 I-3> 창업투자회사 응답자 현황	212
<표 I-4> 개인투자자 응답자 현황	212
<표 I-5> 내국법인투자자 응답자 현황	213
<표 II-1> 대상별 각 제도 수혜 현황	214
<표 II-2> 대상별 각 제도 인지 여부	215
<표 II-3> 대상별 각 제도 인지 시기 및 경로	215
<표 II-4> 2020년 기준 출자 방식	216
<표 II-5> 순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 방식	216
<표 II-6> 이용한 구체적 출자 방법	216
<표 II-7> 투자성과가 좋은 출자 방법(1순위 응답 기준)	217
<표 II-8> 출자·투자에 대한 제도 영향 정도	217
<표 II-9> 출자계획(개수·기간)에 대한 제도 영향 정도	217
<표 II-10> 출자 개수 및 기간에 미친 영향	218
<표 II-11> 동 제도 관련 적용요건에 따른 시행 필요 여부	218
<표 II-12>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1순위 응답 기준)	219
<표 II-13> 현행 조세지원 수준 및 필요한 정책적 지원	219
<표 III-1> 비과세 제도 수혜 여부	221
<표 III-2> 비과세 제도 인지 여부	222
<표 III-3> 비과세 제도 비인지 이유	223
<표 III-4> 비과세 제도 인지 시기 및 경로	223
<표 III-5> 비과세 제도 미수혜 이유	224

<표 III-6>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방식	226
<표 III-7> 간접투자 방식 세부 유형(중복응답)	226
<표 III-8> 간접투자 방식 미출자 이유	227
<표 III-9> 직접투자 방식 미출자 이유	228
<표 III-10> 순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 방식	229
<표 III-11> 출자 시 이용한 구체적 출자 방법(복수응답)	230
<표 III-12> 투자성과가 좋은 출자 방법(1순위)	231
<표 III-13> 투자성과가 좋은 출자 방법(1+2순위)	232
<표 III-14> 원천별 출자 현황	233
<표 III-15>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동 제도의 도움 여부	234
<표 III-16> 동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235
<표 III-17>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	236
<표 III-18> 외부재원 출자금액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	237
<표 III-19> 자체재원 출자금액 증가효과	238
<표 III-20> 외부재원 출자금액 증가효과(개인투자자 모집금액)	239
<표 III-21> 외부재원 출자금액 증가효과(법인투자자 모집금액)	239
<표 III-22> 출자계획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	240
<표 III-23> 출자 개수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	241
<표 III-24> 투자 기간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	242
<표 III-25> 동 제도가 출자계획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유	242
<표 III-26> 동 제도의 적용요건에 따른 시행의 필요 여부	243
<표 III-27>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1순위)	245
<표 III-28>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1+2순위)	245
<표 III-29>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1+2+3순위)	246
<표 III-30>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통한 현행 조세지원 수준	247
<표 III-31> 배당소득 비과세를 통한 현행 조세지원 수준	248
<표 III-32>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1순위)	249
<표 III-33>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1+2순위)	250
<표 IV-1> 소득공제 혜택 수혜 여부	251

<표 IV-2> 소득공제 혜택 인지 여부	252
<표 IV-3> 소득공제 혜택 인지 시기	253
<표 IV-4> 소득공제 혜택 인지 경로(중복응답)	253
<표 IV-5> 소득공제 혜택 미수혜 이유	254
<표 IV-6>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현황	255
<표 IV-7> 간접투자 세부 유형(중복응답)	256
<표 IV-8> 간접투자 방식 미출자 이유	257
<표 IV-9> 직접투자 방식 미출자 이유	258
<표 IV-10> 순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 방식	259
<표 IV-11>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도움 여부 ..	260
<표 IV-12> 소득공제 혜택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261
<표 IV-13>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	262
<표 IV-14>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금액 증가효과	263
<표 IV-15> 출자계획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264
<표 IV-16> 출자 개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265
<표 IV-17> 투자 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266
<표 IV-18> 소득공제 혜택이 출자계획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유	266
<표 IV-19> 동 소득공제 혜택의 적용요건에 따른 시행의 필요 여부	267
<표 IV-20>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1순위)	269
<표 IV-21>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1+2순위)	269
<표 IV-22>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1+2+3순위)	270
<표 IV-23> 동 제도의 현행 조세지원 수준	271
<표 IV-24>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1순위)	272
<표 IV-25>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1+2순위)	273
<표 V-1> 과세특례 혜택 수혜 여부	274
<표 V-2> 과세특례 혜택 인지 여부	275
<표 V-3> 과세특례 혜택 인지 시기 및 경로(중복응답)	275
<표 V-4> 과세특례 혜택 미수혜 이유	276
<표 V-5>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현황	277

<표 V-6> 간접투자 방식 구체적 유형(중복응답)	278
<표 V-7> 투자 방식별 미출자 이유	279
<표 V-8> 이용한 구체적 출자 방법 및 효과성	279
<표 V-9> 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 방식	280
<표 V-10>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도움 여부 ..	281
<표 V-11> 세액공제 혜택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281
<표 V-12>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	282
<표 V-13>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금액 증가효과	283
<표 V-14> 출자계획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284
<표 V-15> 출자 개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285
<표 V-16> 출자 기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286
<표 V-17> 동 소득공제 혜택의 적용요건에 따른 시행의 필요 여부	287
<표 V-18>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1순위)	288
<표 V-19>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1+2순위)	289
<표 V-20>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1+2+3순위)	289
<표 V-21> 동 제도의 현행 조세지원 수준	290
<표 V-22>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1순위, 1+2순위)	291

< 그림목차 >

[그림 III-1] 비과세 제도 수혜 여부	220
[그림 III-2] 비과세 제도 인지 여부	222
[그림 III-3]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방식	225
[그림 III-4] 순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 방식	229
[그림 III-5] 출자 시 이용한 구체적 출자 방법(복수응답)	230
[그림 III-6] 투자성과가 좋은 출자 방법	231
[그림 III-7] 원천별 출자 현황	233
[그림 III-8]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동 제도의 도움 여부	234
[그림 III-9]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	236
[그림 III-10] 외부채원 출자금액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	237
[그림 III-11] 출자계획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	240
[그림 III-12] 동 제도의 적용요건에 따른 시행의 필요 여부	243
[그림 III-13]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	244
[그림 III-14]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통한 현행 조세지원 수준	247
[그림 III-15] 배당소득 비과세를 통한 현행 조세지원 수준	248
[그림 III-16]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249
[그림 IV-1] 소득공제 혜택 수혜 여부	251
[그림 IV-2] 소득공제 혜택 인지 여부	252
[그림 IV-3]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현황	255
[그림 IV-4] 순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 방식	259
[그림 IV-5]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도움 여부 ...	260
[그림 IV-6]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	262
[그림 IV-7]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금액 증가 효과	263
[그림 IV-8] 출자계획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264
[그림 IV-9] 출자 개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265

[그림 IV-10] 투자 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266
[그림 IV-11] 동 소득공제 혜택의 적용요건에 따른 시행의 필요 여부	267
[그림 IV-12]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	268
[그림 IV-13] 동 제도의 현행 조세지원 수준	271
[그림 IV-14]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272
[그림 V-1] 과세특례 혜택 수혜 여부	274
[그림 V-2]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현황	277
[그림 V-3]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도움 여부 ...	281
[그림 V-4]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	282
[그림 V-5]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금액 증가효과	283
[그림 V-6] 출자계획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284
[그림 V-7] 출자 개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285
[그림 V-8] 투자 기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286
[그림 V-9] 동 소득공제 혜택의 적용요건에 따른 시행의 필요 여부	287
[그림 V-10]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	288
[그림 V-11] 동 제도의 현행 조세지원 수준	290
[그림 V-12]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291

I. 조사 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2022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대한 연구 평가의 일부로서 동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동 제도의 목적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개인 및 내국법인, 이들 투자자의 간접투자 매개체인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 세금혜택을 줌으로써 벤처기업 등에 투자 확대를 유인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동 제도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용기한 종료 전 조세지출의 목적 달성 여부, 그동안의 운영성과 평가, 향후 제도 개선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함임

2. 조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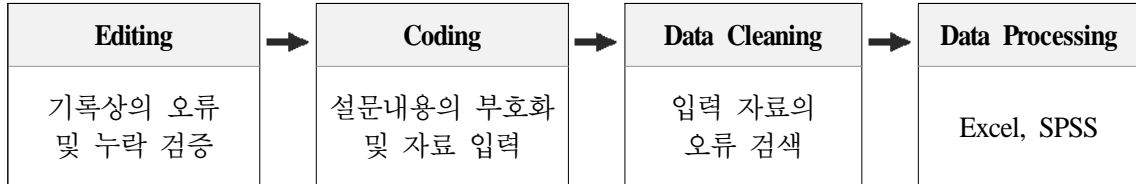
- 본 조사는 창업투자회사 및 개인투자자, 내국법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각 대상별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내용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표 I -1> 조사 설계

조사 대상	(i) 창업투자회사(「조특법」 제13조 적용대상)
	(ii) 개인투자자(「조특법」 제16조 적용대상)
	(iii) 내국법인투자자(「조특법」 제13조의2 적용대상)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컨택-온라인조사
조사 기간	2022년 4월 4일~2022년 5월 27일
조사 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3.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하였음



4. 조사 내용

- 본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 -2〉 주요 설문조사 세부 항목

구 분	세부 항목
각 대상별 제도 인식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혜택 수혜 및 인지 여부 • 제도 인지 시기 및 경로 •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알지만 적용하지 않은 이유
기업 및 투자자 출자 현황 (2020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기준 출자 방식 • 각 투자 방식별 출자하지 않은 이유 • 순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출자 방식 • 출자 시 구체적인 출자방법 및 투자성고가 높은 방법
제도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미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가 출자 증가에 도움되는지 여부 • 제도가 출자에 미친 영향 및 출자원천별 증가효과 • 제도가 출자계획(출자개수 및 투자기간)에 미친 영향 및 효과 • 제도를 최저한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용요건에만 해당하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필요 여부
제도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할 출자 방식 • 제도의 현행 조세지원 수준 •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책적 지원

* 본 설문에서 출자 및 투자 현황은 모두 2020년 현황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 위 설문 내용을 기반으로 창업투자회사, 개인투자자, 법인투자자 각 대상별 적용되는 제도에 대해 조사하였음.

5. 응답자 특성

□ 각 대상별로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상별 기관 및 투자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3〉 창업투자회사 응답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비 율
전 체		49	100.0
기관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51.0
	창업기획자	7	14.3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8.2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14.3
	기금운용법인	6	12.2
기관규모	중소기업	38	77.6
	중견기업	1	2.0
	대기업	2	4.1
	기타	8	16.3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6	12.2
	10인 미만	15	30.6
	30인 미만	16	32.7
	100인 미만	7	14.3
	100인 이상	5	10.2
상장유형	코스닥상장	1	2.0
	비상장	48	98.0

〈표 1 -4〉 개인투자자 응답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비 율
전 체		18	100.0
소득세법상지위	개인사업자	5	27.8
	비사업자	13	72.2
성별	남성	15	83.3
	여성	3	16.7
연령대	20대 이하	2	11.1
	30대	5	27.8
	40대	8	44.4
	50대 이상	3	16.7

<표 1 -5> 내국법인투자자 응답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비 율
전 체		8	100.0
기업규모	중소기업	6	75.0
	중견기업	1	12.5
	대기업	1	12.5
상장유형	코스피상장	1	12.5
	코스닥상장	1	12.5
	비상장	6	75.0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4	50.0
	50인 미만	2	25.0
	50인 이상	2	25.0
업종	금융 및 보험업	7	87.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	12.5

II. 조사 결과 요약

1. 대상별 각 제도 수혜 현황

- 대상별로 적용되는 각 제도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71.4%로 수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대상 역시 수혜 비율이 60%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남

<표 II -1> 대상별 각 제도 수혜 현황

(Base: 각 대상별 전체 응답 기업 및 투자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수혜 ¹⁾	미수혜
창업투자회사	(49)	71.4	28.6
개인투자자	(18)	66.7	33.3
내국법인투자자	(8)	62.5	37.5

주: 1) 창업투자회사 제도 ‘수혜’ 비율의 경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와 배당소득 비과세 중 하나만 수혜한 응답 기업 포함

2. 대상별 제도 인지 여부 및 인지 시기/경로

- 제도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전체 약 83.7%가, 개인투자자 및 내국법인투자자는 응답자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도 인지 시기에 대해서는 모든 대상별로 ‘출자 결정 전에 알았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인지 경로로는 창업투자회사 및 개인투자자의 경우 ‘다른 투자회사 및 투자자를 통해서’가, 내국법인투자자의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의 홍보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높게 나타남

〈표 II -2〉 대상별 각 제도 인지 여부

(Base: 각 대상별 전체 응답 기업 및 투자자,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인지 ¹⁾	비인지
창업투자회사	(49)	83.7	16.3
개인투자자	(18)	100.0	0.0
내국법인투자자	(8)	100.0	0.0

주: 1) ‘인지’ 비율의 경우 해당 제도 수혜자까지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함.

〈표 II -3〉 대상별 각 제도 인지 시기 및 경로

(Base: 각 대상별 제도 인지 기업 및 투자자,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인지 시기				인지 경로(중복응답)			
		출자 결정 전에 알았음	출자 결정 후 출자 준비과정에서 알게 되었음	출자 후에 알게 되었음	기타	다른 투자회사/투자자 등으로 부터	정부나 공공 기관의 홍보를 통해서	법인세/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기타 ¹⁾
창업투자회사	(41)	80.5	14.6	4.9	-	46.3	29.3	29.3	12.2
개인투자자	(18)	66.7	22.2	11.1	-	50.0	44.4	11.1	11.1
내국법인투자자	(8)	87.5	0.0	0.0	12.5	25.0	37.5	0.0	62.5

주: 1) 인지 경로 ‘기타’ 응답으로는 ‘교육연수 및 포럼 등을 통해’, ‘직접 세법에서 확인함’ 등이 나타남.

3. 2020년 기준 출자 현황

- 2020년 기준 출자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각 대상별로 모두 ‘전부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함’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 투자회사의 경우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방식 모두를 통해 출자했다는 응답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 -4> 2020년 기준 출자 방식

(Base: 각 대상별 전체 응답 기업 및 투자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전부 직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함	일부는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하고 나머지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함	전부 창투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함	2020년 기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경험 없음
창업투자회사	(49)	16.3	32.7	38.8	12.2
개인투자자	(18)	22.2	16.7	33.3	27.8
내국법인투자자	(8)	0.0	25.0	62.5	12.5

□ 각 대상별로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방식 모두를 통해 투자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 방식을 조사한 결과,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간접투자 방식’, 개인투자자 및 내국법인투자자의 경우 ‘두 가지 방식에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높게 나타남.

<표 II -5> 순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 방식

(Base: 각 대상별 간접투자, 직접투자 방식 모두 출자한 기업 및 투자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직접투자 방식	간접투자 방식	두 가지 투자방식의 차이가 없다
창업투자회사	(16)	18.8	43.8	37.5
개인투자자	(3)	33.3	0.0	66.7
내국법인투자자	(2)	-	-	100.0

□ 출자 시 이용한 구체적인 출자 방법으로는 창업투자회사와 내국법인투자자 모두 ‘유상증자방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투자성과 역시 ‘유상증자방법’이 좋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한편,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최초출자방법’이 좋다는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 -6> 이용한 구체적 출자 방법

(Base: 2020년 출자기업,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최초출자 방법	유상증자 방법	무상증자 방법	출자전환 방법	개인취득 방법
창업투자회사	(43)	27.9	81.4	7.0	14.0	2.3
내국법인투자자	(7)	0.0	100.0	0.0	0.0	0.0

<표 II -7> 투자성과가 좋은 출자 방법(1순위 응답 기준)

(Base: 각 대상별 전체 응답 기업 및 투자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최초출자 방법	유상증자 방법	무상증자 방법	출자전환 방법	개인취득 방법
창업투자회사	(49)	40.8	55.1	2.0	2.0	0.0
내국법인투자자	(8)	12.5	87.5	0.0	0.0	0.0

4. 대상별 제도가 출자·투자에 미친 영향

- 각 대상별 제도가 출자·투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모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영향성 역시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표 II -8> 출자·투자에 대한 제도 영향 정도

(Base: 각 대상별 전체 응답 기업 및 투자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도움 여부		영향 정도				
		도움됨	도움 안됨	전혀 영향이 없었다	작은 영향을 미쳤다	보통이다	큰 영향을 미쳤다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창업투자회사	(49)	83.7	16.3	10.2	8.2	32.7	28.6	20.4
개인투자자	(18)	94.4	5.6	0.0	9.1	18.2	36.4	36.4
내국법인투자자	(8)	75.0	25.0	0.0	20.0	20.0	20.0	40.0

주: 개인투자자 및 내국법인투자자의 경우 2020년도 출자기업 및 투자자에게만 영향 정도를 질문함

- 출자계획에 대한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해서 역시 각 대상별로 꽤 영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내국법인투자자’의 경우 해당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 -9> 출자계획(개수·기간)에 대한 제도 영향 정도

(Base: 각 대상별 전체 응답 기업 및 투자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영향 정도					영향이 없는 편	꽤 영향이 있는 편
		전혀 영향이 없었다	작은 영향을 미쳤다	보통이다	큰 영향을 미쳤다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창업투자회사	(49)	12.2	10.2	40.8	28.6	8.2	22.4	36.8
개인투자자	(11)	9.1	9.1	36.4	9.1	36.4	18.2	45.5
내국법인투자자	(5)	0.0	20.0	20.0	40.0	20.0	20.0	60.0

주: 개인투자자 및 내국법인투자자의 경우 2020년도 출자기업 및 투자자에게만 영향 정도를 질문함

- 출자계획에 영향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영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인투자자의 경우 출자 개수 및 출자 기간을 증가시켰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 -10> 출자 개수 및 기간에 미친 영향

(Base: 각 대상별 제도 ‘영향 있다’ 응답 기업 및 투자자, 단위: 명, %, 개, 개월)

구 분	사 례 수	출자 개수			출자 기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증가 시켰다	증가 개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증가 시켰다	증가 개월
창업투자회사	(43)	88.4	11.6	4.20	88.4	11.6	14.8
개인투자자	(10)	50.0	50.0	1.20	60.0	40.0	11.0
내국법인투자자	(5)	80.0	20.0	10.00	80.0	20.0	24.0

5. 대상별 제도 관련 적용요건에 따른 시행 필요 여부

- 동 제도를 최저한세의 대상에서 제외해서 다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요건에만 해당하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각 대상별로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표 II -11> 동 제도 관련 적용요건에 따른 시행 필요 여부

(Base: 각 대상별 전체 응답 기업 및 투자자,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필요	불필요
창업투자회사	(49)	85.7	14.3
개인투자자	(18)	83.3	16.7
내국법인투자자	(8)	62.5	37.5

6.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

-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으로는,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개인투자자의 경우 ‘법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내국법인투자자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창투조합 등

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과 '법인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각각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II -12>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1순위 응답 기준)

(Base: 각 대상별 전체 응답 기업 및 투자자,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등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법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법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개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의 직접투자 방식	개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창업투자회사	(49)	32.7	28.6	24.5	8.2	6.1	0.0
개인투자자	(18)	11.1	22.2	27.8	16.7	0.0	22.2
내국법인투자자	(8)	37.5	37.5	12.5	0.0	12.5	0.0

7. 대상별 제도 개선 방향

- 대상별 적용 제도의 현행 조세지원 수준에 대해,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주식양도 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모두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한편, 개인투자자와 내국법인투자자의 경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음
-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대상별로 모두 '현행 조세지원의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 -13> 현행 조세지원 수준 및 필요한 정책적 지원

(Base: 각 대상별 전체 응답 기업 및 투자자,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현행 조세지원 수준					필요한 정책적 지원(1순위)			
		충분한 편		적당함	부족한 편		현행 조세 지원의 강화	금융 지원 및 보조금 지급	기술·교육 및 구매·마케팅 지원	선별적 근로 규제 완화
		축소 비율 (평균)			확대 비율 (평균)					
창업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49)	10.2	20.0	61.2	28.6	78.6	79.6	16.3	2.0	2.0
창업투자회사 (배당소득비과세)	(49)	8.1	25.0	67.3	24.5	70.8				
개인투자자	(18)	5.6	5.0	33.3	61.1	112.7	66.7	16.7	11.1	5.6
내국법인투자자	(8)	0.0	-	37.5	62.5	100.0	100.0	0.0	0.0	0.0

Ⅲ . 창업투자회사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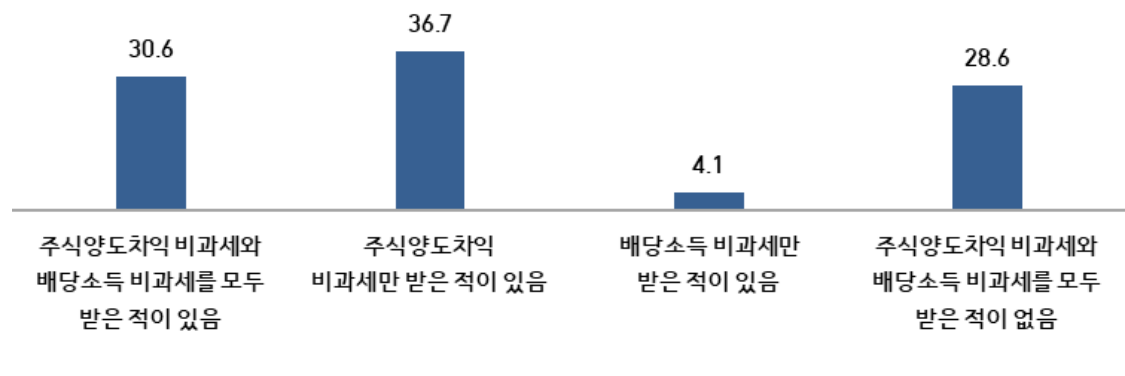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 인식 및 활용

1) 비과세 제도 수혜 여부

- 창업투자회사를 대상으로 동 제도 수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만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난 한편, 전체 응답자 중 28.6%는 동 제도와 관련한 수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 비과세 제도 수혜 여부

(Base: 전체, n=49, 단위: %)



<표 III-1> 비과세 제도 수혜 여부

(Base: 전체, n=49,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와 배당소득 비과세를 모두 받은 적이 있음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만 받은 적이 있음	배당소득 비과세만 받은 적이 있음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와 배당소득 비과세를 모두 받은 적이 없음
전 체		(49)	30.6	36.7	4.1	28.6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40.0	44.0	4.0	12.0
	창업기획자	(7)	0.0	42.9	0.0	57.1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50.0	50.0	0.0	0.0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42.9	28.6	14.3	14.3
	기금운용법인	(6)	0.0	0.0	0.0	100.0
기관 규모	중소기업	(38)	34.2	42.1	5.3	18.4
	중견기업	(1)	100.0	0.0	0.0	0.0
	대기업	(2)	50.0	50.0	0.0	0.0
	기타	(8)	0.0	12.5	0.0	87.5
수혜 여부	수혜자	(35)	42.9	51.4	5.7	0.0
	미수혜자	(14)	0.0	0.0	0.0	100.0

2) 비과세 제도 인지 관련

□ 제도 관련 수혜를 받지 않았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동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과반 이상(약 57.1%)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 비과세 제도 인지 여부

(Base: 전체, n=14, 단위: %)



<표 III-2> 비과세 제도 인지 여부

(Base: 전체, n=14,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인지	비인지	
전체	(14)	42.9	57.1	
기관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33.3	66.7
	창업기획자	(4)	50.0	50.0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	-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1)	100.0	0.0
	기금운용법인	(6)	33.3	66.7
기관규모	중소기업	(7)	42.9	57.1
	중견기업	-	-	-
	대기업	-	-	-
	기타	(7)	42.9	57.1

- 동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세법 내용이 복잡하고 업무에 적용하기 어려워’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3〉 비과세 제도 비인지 이유

(Base: 제도 비인지 기관, n=8, 단위: %)

내용	응답비율
세법 내용이 복잡하고 업무에 적용하기 어려워	50.0
조세감면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사업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12.5
조세감면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12.5
기타(관심 없음 등)	25.0

- 동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지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출자 결정 전에 알았음’이라는 응답이 80.5%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출자 결정 후 출자 과정에서 알게 되었음’이라는 응답이 14.6%로 나타남

- 인지 경로에 대해서는,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관련 법령을 공부하는 과정 혹은 교육 등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나타남

〈표 III-4〉 비과세 제도 인지 시기 및 경로

(Base: 제도 인지 기관, n=41,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인지 시기			인지 경로(중복응답)				
		출자 결정 전에 알았음	출자 결정 후 출자 준비과정에서 알게 되었음	출자 후에 알게 되었음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으로 부터	정부나 공공기관의 홍보를 통해서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기타	
전 체	(41)	80.5	14.6	4.9	46.3	29.3	29.3	12.2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3)	82.6	13.0	4.3	52.2	39.1	21.7	8.7
	창업기획자	(5)	80.0	20.0	0.0	0.0	20.0	60.0	20.0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50.0	25.0	25.0	75.0	0.0	50.0	0.0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85.7	14.3	0.0	42.9	28.6	28.6	14.3
	기금운용법인	(2)	100.0	0.0	0.0	50.0	0.0	0.0	50.0

<표 III-4>의 계속

(Base: 제도 인지 기관, n=41,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인지 시기			인지 경로(중복응답)				
		출자 결정 전에 알았음	출자 결정 후 출자 준비과정에서 알게 되었음	출자 후에 알게 되었음	다른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으로 부터	정부나 공공기관의 홍보를 통해서	법인제 신고 과정에서	기타	
기관 규모	중소기업	(34)	82.4	11.8	5.9	50.0	32.4	23.5	11.8
	중견기업	(1)	100.0	0.0	0.0	100.0	0.0	100.0	0.0
	대기업	(2)	50.0	50.0	0.0	0.0	0.0	100.0	0.0
	기타	(4)	75.0	25.0	0.0	25.0	25.0	25.0	25.0
수혜 여부	수혜자	(35)	80.0	14.3	5.7	51.4	31.4	31.4	5.7
	미수혜자	(6)	83.3	16.7	0.0	16.7	16.7	16.7	50.0

□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 혜택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응답으로 나타남

<표 III-5> 비과세 제도 미수혜 이유

(Base: 제도 인지 및 미수혜 기관, n=6, 단위: %)

내용	응답비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16.7
다른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아서(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서)	16.7
관련 세법규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비과세로 인한 조세감면액을 사후적으로 추징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해서	16.7
기타(주식양도를 하지 않아서, 담당 회계사와 실무자 간 협의되지 않음 등)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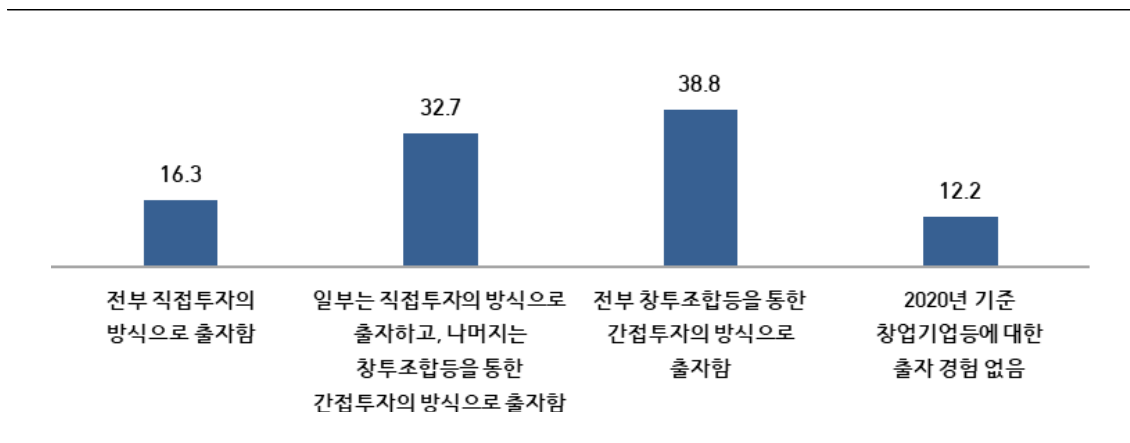
2.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현황

1) 출자 방식

-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방식으로는 ‘전부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함’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방식 모두 출자함’ 응답 역시 32.7%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전체 중 12.2%는 2020년 기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3]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방식

(Base: 전체, n=49, 단위: %)



<표 III-6>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방식

(Base: 전체, n=49,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부 직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함	일부는 직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하고, 나머지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함	전부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함	2020년 기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경험 없음	
전체	(49)	16.3	32.7	38.8	12.2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12.0	44.0	44.0	0.0
	창업기획자	(7)	28.6	57.1	0.0	14.3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50.0	25.0	25.0	0.0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14.3	0.0	85.7	0.0
	기금운용법인	(6)	0.0	0.0	16.7	83.3
기관 규모	중소기업	(38)	18.4	36.8	42.1	2.6
	중견기업	(1)	0.0	0.0	100.0	0.0
	대기업	(2)	0.0	50.0	50.0	0.0
	기타	(8)	12.5	12.5	12.5	62.5
수혜 여부	수혜자	(35)	17.1	34.3	48.6	0.0
	미수혜자	(14)	14.3	28.6	14.3	42.9

□ 간접투자 시 이용한 조합 세부 유형으로는, ‘벤처투자조합’이 9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14.3%로 나타남

<표 III-7> 간접투자 방식 세부 유형(중복응답)

(Base: 간접투자 방식 출자 기관, n=35,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벤처투자 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농식품 투자조합	개인투자 조합	
전체	(35)	97.1	14.3	8.6	5.7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2)	100.0	9.1	13.6	4.5
	창업기획자	(4)	100.0	0.0	0.0	25.0
	신기술사업금융업자	(2)	50.0	100.0	0.0	0.0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6)	100.0	0.0	0.0	0.0
	기금운용법인	(1)	100.0	100.0	0.0	0.0
기관 규모	중소기업	(30)	100.0	3.3	10.0	6.7
	중견기업	(1)	100.0	100.0	0.0	0.0
	대기업	(2)	50.0	100.0	0.0	0.0
	기타	(2)	100.0	50.0	0.0	0.0
수혜 여부	수혜자	(29)	96.6	13.8	3.4	3.4
	미수혜자	(6)	100.0	16.7	33.3	16.7

2) 출자 방식별 미출자 이유

□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8> 간접투자 방식 미출자 이유

(Base: 간접투자 방식 미출자 기관, n=14,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하더라도 직접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충분히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기타
전 체		(14)	50.0	21.4	28.6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33.3	66.7	0.0
	창업기획자	(3)	100.0	0.0	0.0
	신기술사업금융업자	(2)	50.0	0.0	50.0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1)	0.0	100.0	0.0
	기금운용법인	(5)	40.0	0.0	60.0
기관 규모	중소기업	(8)	50.0	37.5	12.5
	중견기업	-	-	-	-
	대기업	-	-	-	-
	기타	(6)	50.0	0.0	50.0
수혜 여부	수혜자	(6)	33.3	50.0	16.7
	미수혜자	(8)	62.5	0.0	37.5

- 한편, 직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하지 않은 이유로는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해서’라는 응답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9> 직접투자 방식 미출자 이유

(Base: 직접투자 방식 미출자 기관, n=25,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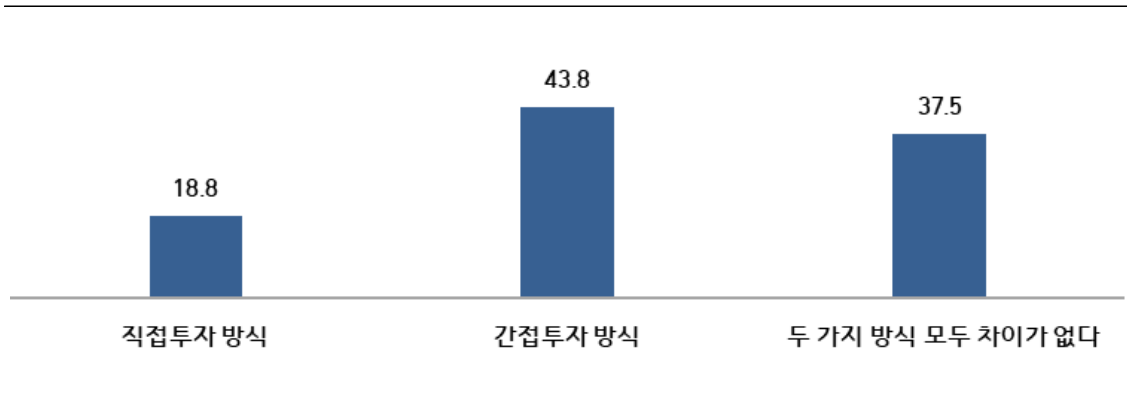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해서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하는 것이 직접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해서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성과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기타
전 체		(25)	44.0	12.0	8.0	36.0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1)	45.5	18.2	9.1	27.3
	창업기획자	(1)	100.0	0.0	0.0	0.0
	신기술사업금융업자	(1)	100.0	0.0	0.0	0.0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6)	33.3	16.7	16.7	33.3
	기금운용법인	(6)	33.3	0.0	0.0	66.7
기관 규모	중소기업	(17)	41.2	17.6	11.8	29.4
	중견기업	(1)	100.0	0.0	0.0	0.0
	대기업	(1)	100.0	0.0	0.0	0.0
	기타	(6)	33.3	0.0	0.0	66.7
수혜 여부	수혜자	(17)	47.1	17.6	11.8	23.5
	미수혜자	(8)	37.5	0.0	0.0	62.5

3) 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 방식

-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 방식 모두를 통해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간접투자 방식’이 43.8%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직접투자 방식’은 18.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III-4] 순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 방식

(Base: 혼합 방식 출자 기관, n=16, 단위: %)



<표 III-10> 순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 방식

(Base: 혼합 방식 출자 기관, n=16,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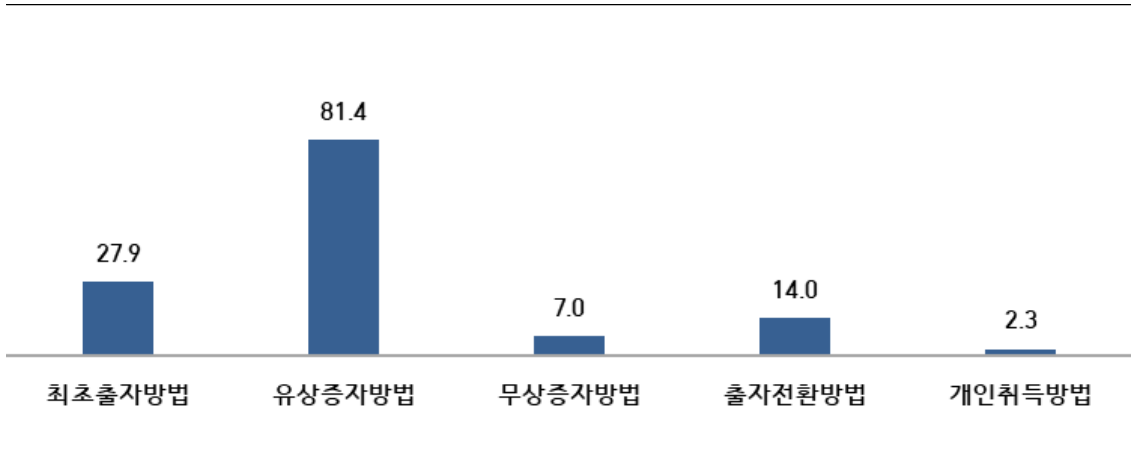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직접투자 방식	간접투자 방식	두 가지 투자방식의 차이가 없다	
전 체	(16)	18.8	43.8	37.5	
기관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1)	9.1	63.6	27.3
	창업기획자	(4)	50.0	0.0	50.0
	신기술사업금융업자	(1)	0.0	0.0	100.0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	-	-	-
	기금운용법인	-	-	-	-
기관규모	중소기업	(14)	14.3	50.0	35.7
	중견기업	(0)	0.0	0.0	0.0
	대기업	(1)	0.0	0.0	100.0
	기타	(1)	100.0	0.0	0.0
수혜여부	수혜자	(12)	25.0	41.7	33.3
	미수혜자	(4)	0.0	50.0	50.0

4) 구체적 출자 방법 이용 현황 및 효과성

□ 출자 시 이용한 구체적인 출자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상증자방법’이 8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최초출자방법’이 27.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5] 출자 시 이용한 구체적 출자 방법(복수응답)

(Base: 2020년 출자 경험 있는 기관, n=43, 단위: %)



<표 III-11> 출자 시 이용한 구체적 출자 방법(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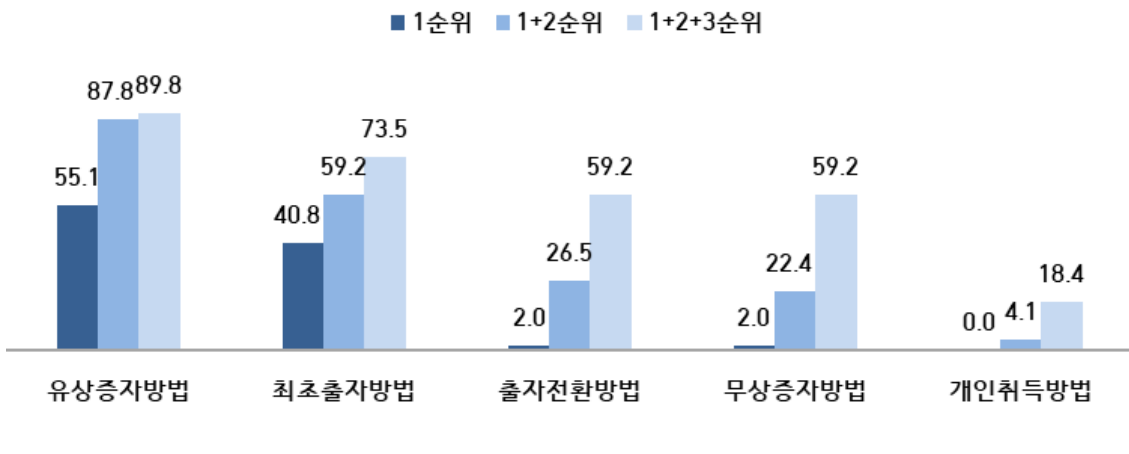
(Base: 2020년 출자 경험 있는 기관, n=43,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최초출자 방법	유상증자 방법	무상증자 방법	출자전환 방법	개인취득 방법	
전체	(43)	27.9	81.4	7.0	14.0	2.3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28.0	80.0	0.0	12.0	0.0
	창업기획자	(6)	33.3	66.7	0.0	33.3	16.7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25.0	100.0	0.0	0.0	0.0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14.3	100.0	42.9	14.3	0.0
	기금운용법인	(1)	100.0	0.0	0.0	0.0	0.0
기관 규모	중소기업	(37)	27.0	83.8	8.1	13.5	0.0
	중견기업	(1)	0.0	100.0	0.0	0.0	0.0
	대기업	(2)	50.0	100.0	0.0	0.0	0.0
	기타	(3)	33.3	33.3	0.0	33.3	33.3
수혜 여부	수혜자	(35)	22.9	85.7	5.7	8.6	0.0
	미수혜자	(8)	50.0	62.5	12.5	37.5	12.5

□ 투자성과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출자 방법으로는,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유상증자방법’, ‘최초출자방법’이 각각 55.1%, 40.8%로 전체 응답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1+2순위 및 1+2+3순위 응답 기준 역시 ‘유상증자방법’이 가장 높았음

[그림 III-6] 투자성과가 좋은 출자 방법

(Base: 전체, n=49, 단위: %)



<표 III-12> 투자성과가 좋은 출자 방법(1순위)

(Base: 2020년 출자 경험 있는 기관, n=49,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유상증자 방법 (%)	최초출자 방법 (%)	무상증자 방법 (%)	출자전환 방법 (%)	
전 체	(49)	55.1	40.8	2.0	2.0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60.0	40.0	0.0	0.0
	창업기획자	(7)	57.1	28.6	14.3	0.0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0.0	100.0	0.0	0.0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85.7	14.3	0.0	0.0
	기금운용법인	(6)	33.3	50.0	0.0	16.7
기관 규모	중소기업	(38)	60.5	39.5	0.0	0.0
	중견기업	(1)	0.0	100.0	0.0	0.0
	대기업	(2)	50.0	50.0	0.0	0.0
	기타	(8)	37.5	37.5	12.5	12.5
수혜 여부	수혜자	(35)	57.1	42.9	0.0	0.0
	미수혜자	(14)	50.0	35.7	7.1	7.1

<표 III-13> 투자성과가 좋은 출자 방법(1+2순위)

(Base: 2020년 출자 경험 있는 기관, n=49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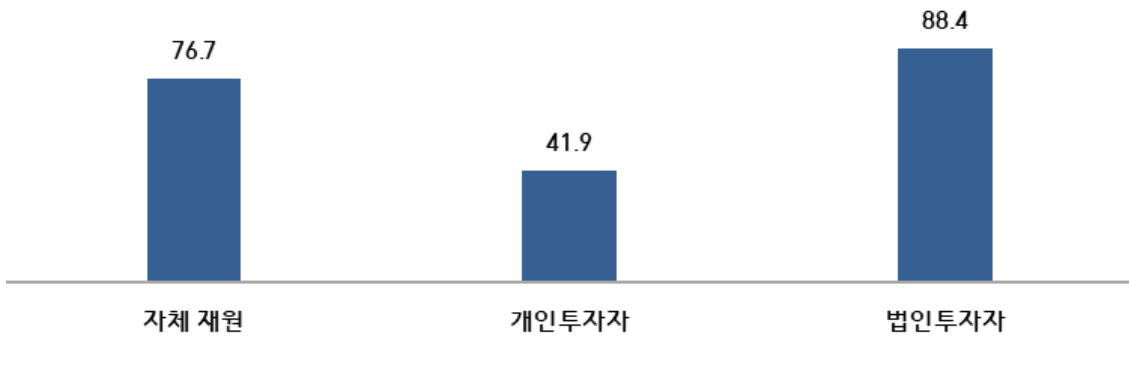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유상증자 방법	최초출자 방법	출자전환 방법	무상증자 방법	개인취득 방법	
전 체	(49)	87.8	59.2	26.5	22.4	4.1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100.0	56.0	16.0	20.0	8.0
	창업기획자	(7)	71.4	28.6	57.1	42.9	0.0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75.0	100.0	0.0	25.0	0.0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100.0	42.9	28.6	28.6	0.0
	기금운용법인	(6)	50.0	100.0	50.0	0.0	0.0
기관 규모	중소기업	(35)	97.1	57.1	17.1	22.9	5.7
	중견기업	(14)	64.3	64.3	50.0	21.4	0.0
	대기업	(38)	97.4	55.3	21.1	21.1	5.3
	기타	(1)	0.0	100.0	0.0	100.0	0.0
수혜 여부	수혜자	(2)	100.0	50.0	0.0	50.0	0.0
	미수혜자	(8)	50.0	75.0	62.5	12.5	0.0

5) 원천별 출자 현황

- 출자금 원천별 출자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인투자자로부터 모집한 금액’으로 출자한 비율이 8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체재원’으로 출자한 비율 역시 76.7%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7] 원천별 출자 현황

(Base: 2020년 출자 경험 있는 기관, n=43, 단위: %)



<표 III-14> 원천별 출자 현황

(Base: 2020년 출자 경험 있는 기관, n=43,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 수	자체 재원		개인투자자 모집		법인투자자 모집		
		출자비율	평균금액	출자비율	평균금액	출자비율	평균금액	
전 체	(43)	76.7	801,658	41.9	1,034,211	88.4	7,503,842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96.0	607,508	56.0	482,843	88.0	9,165,567
	창업기획자	(6)	50.0	520,000	16.7	1,600,000	100.0	2,440,833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75.0	1,718,167	-	-	75.0	12,105,167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28.6	80,000	28.6	128,000	100.0	4,649,000
	기금운용법인	(1)	100.0	5,000,000	100.0	10,000,000	-	-
기관 규모	중소기업	(37)	75.7	567,864	43.2	538,487	89.2	7,327,893
	중견기업	(1)	100.0	254,500	-	-	100.0	2,305,500
	대기업	(2)	100.0	2,400,000	50.0	-	100.0	17,000,000
	기타	(3)	66.7	2,750,000	33.3	10,000,000	66.7	3,510,000
수혜 여부	수혜자	(35)	80.0	714,500	42.9	465,072	88.6	8,605,265
	미수혜자	(8)	62.5	1,289,739	37.5	3,879,903	87.5	2,626,110

3. 비과세 제도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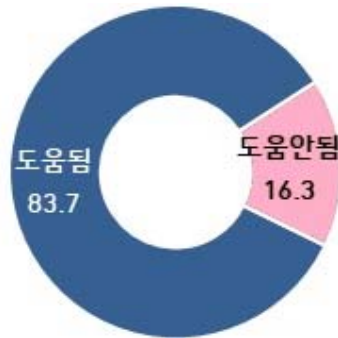
1)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동 제도의 도움 여부

□ 동 제도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3.7%로 ‘도움이 되지 않음’(16.3%) 대비 높게 나타나, 응답 기업 대부분이 동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기관유형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제도 미수혜자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8]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동 제도의 도움 여부

(Base: 전체, n=49, 단위: %)



<표 III-15>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동 제도의 도움 여부

(Base: 전체, n=49,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도움 됨	도움 안됨	
전체	(49)	83.7	16.3	
기관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92.0	8.0
	창업기획자	(7)	71.4	28.6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50.0	50.0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100.0	0.0
	기금운용법인	(6)	66.7	33.3
기관규모	중소기업	(38)	89.5	10.5
	중견기업	(1)	100.0	0.0
	대기업	(2)	50.0	50.0
	기타	(8)	62.5	37.5
수혜여부	수혜자	(35)	91.4	8.6
	미수혜자	(14)	64.3	35.7

□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과세를 통한 조세감면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16> 동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Base: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응답 기관, n=8,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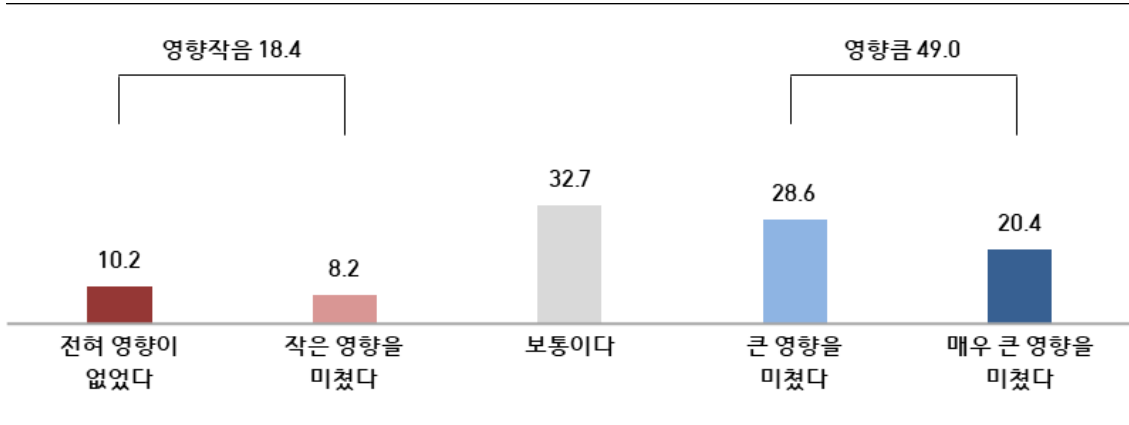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통한 조세감면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	투자성과가 나빠서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등의 비과세를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행정적 지원이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따라 감소해서	기타	
전체	(8)	37.5	25.0	25.0	12.5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50.0	50.0	0.0	0.0
	창업기획자	(2)	50.0	0.0	50.0	0.0
	신기술사업금융업자	(2)	50.0	0.0	50.0	0.0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	-	-	-	-
	기금운용법인	(2)	0.0	50.0	0.0	50.0
기관 규모	중소기업	(4)	25.0	25.0	50.0	0.0
	중견기업	-	-	-	-	-
	대기업	(1)	100.0	0.0	0.0	0.0
	기타	(3)	33.3	33.3	0.0	33.3
수혜 여부	수혜자	(3)	66.7	0.0	33.3	0.0
	미수혜자	(5)	20.0	40.0	20.0	20.0

2) 출자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

-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향을 껴 미쳤다는 응답이 49.0%로 나타났으며, '전혀 영향이 없었다'라는 응답은 10.2%로 나타남
- 한편, 기관 유형 중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의 경우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향이 적거나 없었다는 응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9]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

(Base: 전체, n=49, 단위: %)



<표 III-17>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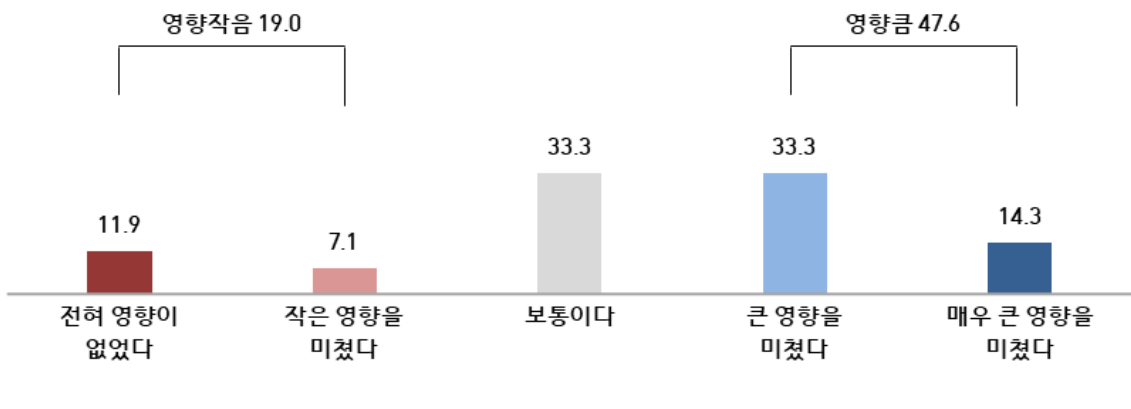
(Base: 전체, n=49,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영향이 없었다	작은 영향을 미쳤다	보통이다	큰 영향을 미쳤다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5점척도 평균	
전체	(49)	10.2	8.2	32.7	28.6	20.4	3.41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4.0	8.0	32.0	28.0	28.0	3.68
	창업기획자	(7)	14.3	14.3	28.6	28.6	14.3	3.14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25.0	0.0	50.0	25.0	0.0	2.75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0.0	0.0	28.6	42.9	28.6	4.00
	기금운용법인	(6)	33.3	16.7	33.3	16.7	0.0	2.33
기관 규모	중소기업	(38)	5.3	7.9	34.2	28.9	23.7	3.58
	중견기업	(1)	0.0	0.0	100.0	0.0	0.0	3.00
	대기업	(2)	50.0	0.0	0.0	50.0	0.0	2.50
	기타	(8)	25.0	12.5	25.0	25.0	12.5	2.88
수혜 여부	수혜자	(35)	5.7	5.7	31.4	31.4	25.7	3.66
	미수혜자	(14)	21.4	14.3	35.7	21.4	7.1	2.79

- 외부재원 출자금액에 대해 동 제도의 영향 정도를 조사한 결과, 꽤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7.6%로 나타났으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은 11.9%로 나타남
- 기관 유형 중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의 경우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기금운용법인’은 66.7%가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함

[그림 III-10] 외부재원 출자금액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

(Base: 2020년 외부재원(개인, 법인투자자 모집금액) 출자 경험 있는 응답 기관, n=42, 단위: %)



<표 III-18> 외부재원 출자금액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

(Base: 2020년 외부재원(개인, 법인투자자 모집금액) 출자 경험 있는 응답 기관, n=42,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영향이 없었다	작은 영향을 미쳤다	보통이다	큰 영향을 미쳤다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5점 평균	
전체	(42)	11.9	7.1	33.3	33.3	14.3	3.31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3)	4.3	4.3	39.1	39.1	13.0	3.52
	창업기획자	(6)	16.7	33.3	33.3	0.0	16.7	2.67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33.3	0.0	33.3	33.3	0.0	2.67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0.0	0.0	28.6	42.9	28.6	4.00
	기금운용법인	(3)	66.7	0.0	0.0	33.3	0.0	2.00
기관 규모	중소기업	(34)	5.9	5.9	32.4	38.2	17.6	3.56
	중견기업	(1)	0.0	0.0	100.0	0.0	0.0	3.00
	대기업	(2)	50.0	0.0	50.0	0.0	0.0	2.00
	기타	(5)	40.0	20.0	20.0	20.0	0.0	2.20
수혜 여부	수혜자	(32)	6.3	3.1	37.5	37.5	15.6	3.53
	미수혜자	(10)	30.0	20.0	20.0	20.0	10.0	2.60

3) 원천별 출자금액에 대한 동 제도의 증가효과

- 동 제도 적용 시, 자체재원 출자금액에 대한 증가효과를 조사한 결과, ‘5% 이하’ 응답이 40.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 초과 10% 이하’(25.0%), ‘15% 초과 20% 이하’(18.8%) 순으로 나타남.
- 외부재원 중 개인투자자 모집금액 및 법인투자자 모집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5% 초과 10% 이하’ 응답 비율이 각각 35.3%,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19〉 자체재원 출자금액 증가효과

(Base: 2020년 자체재원 출자 경험 있는 응답 기관, n=32,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15% 이상	15% 초과 20% 이하	기타 (0%)
전 체		(32)	40.6	25.0	12.5	18.8	3.1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4)	29.2	33.3	12.5	20.8	4.2
	창업기획자	(3)	33.3	0.0	33.3	33.3	0.0
	신기술사업금융업자	(2)	100.0	0.0	0.0	0.0	0.0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2)	100.0	0.0	0.0	0.0	0.0
	기금운용법인	(1)	100.0	0.0	0.0	0.0	0.0
기관 규모	중소기업	(28)	39.3	28.6	10.7	17.9	3.6
	중견기업	(1)	100.0	0.0	0.0	0.0	0.0
	대기업	(1)	0.0	0.0	100.0	0.0	0.0
	기타	(2)	50.0	0.0	0.0	50.0	0.0
수혜 여부	수혜자	(27)	37.0	29.6	11.1	18.5	3.7
	미수혜자	(5)	60.0	0.0	20.0	20.0	0.0

<표 III -20> 외부재원 출자금액 증가효과(개인투자자 모집금액)

(Base: 2020년 개인투자자 모집금액을 통한 출자 경험 있는 응답 기관, n=17,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15% 이상	15% 초과 20% 이하	
전 체	(17)	29.4	35.3	11.8	23.5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3)	23.1	46.2	7.7	23.1
	창업기획자	(1)	0.0	0.0	100.0	0.0
	신기술사업금융업자	(0)	0.0	0.0	0.0	0.0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2)	50.0	0.0	0.0	50.0
	기금운용법인	(1)	100.0	0.0	0.0	0.0
기관 규모	중소기업	(15)	26.7	40.0	6.7	26.7
	중견기업	(0)	0.0	0.0	0.0	0.0
	대기업	(1)	0.0	0.0	100.0	0.0
	기타	(1)	100.0	0.0	0.0	0.0
수혜 여부	수혜자	(14)	28.6	42.9	7.1	21.4
	미수혜자	(3)	33.3	0.0	33.3	33.3

<표 III -21> 외부재원 출자금액 증가효과(법인투자자 모집금액)

(Base: 2020년 법인투자자 모집금액을 통한 출자 경험 있는 응답 기관, n=36,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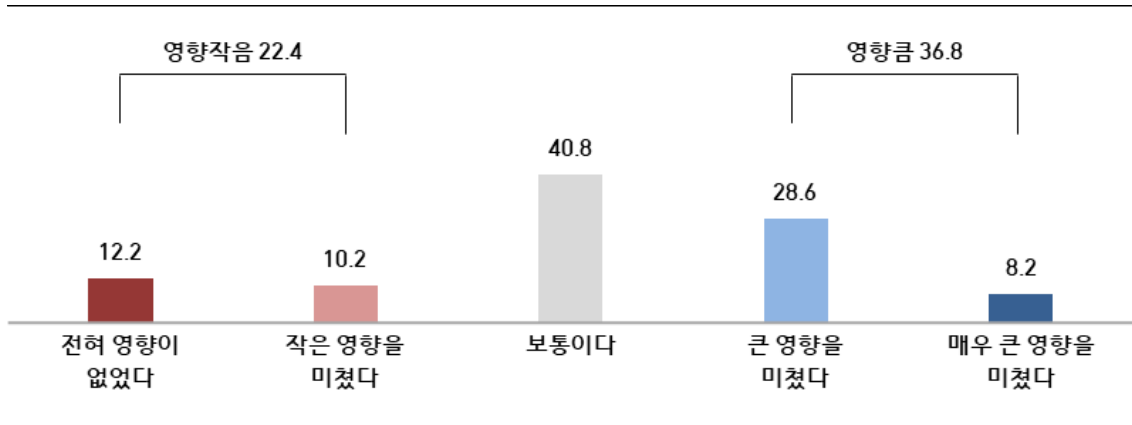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15% 이상	15% 초과 20% 이하	기타 (0%)	
전 체	(36)	30.6	33.3	8.3	25.0	2.8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2)	19.4	25.0	2.8	11.1	2.8
	창업기획자	(5)	5.6	5.6	2.8	0.0	0.0
	신기술사업금융업자	(2)	2.8	0.0	0.0	2.8	0.0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2.8	2.8	2.8	11.1	0.0
	기금운용법인	-	-	-	-	-	-
기관 규모	중소기업	(32)	25.0	27.8	8.3	25.0	2.8
	중견기업	(1)	2.8	0.0	0.0	0.0	0.0
	대기업	(1)	0.0	2.8	0.0	0.0	0.0
	기타	(2)	2.8	2.8	0.0	0.0	0.0
수혜 여부	수혜자	(30)	25.0	30.6	5.6	22.2	0.0
	미수혜자	(6)	5.6	2.8	2.8	2.8	2.8

4) 출자계획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

□ 출자 개수 및 기간 등 출자계획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를 조사한 결과, 꽤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36.8%로 나타났으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2%로 나타남

[그림 III-11] 출자계획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

(Base: 전체, n=49, 단위: %)



<표 III-22> 출자계획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

(Base: 전체, n=49,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영향이 없었다	작은 영향을 미쳤다	보통이다	큰 영향을 미쳤다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5점 평균	
전체	(49)	12.2	10.2	40.8	28.6	8.2	3.10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0.0	16.0	44.0	28.0	12.0	3.36
	창업기획자	(7)	28.6	14.3	28.6	28.6	0.0	2.57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25.0	0.0	50.0	25.0	0.0	2.75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0.0	0.0	42.9	42.9	14.3	3.71
	기금운용법인	(6)	50.0	0.0	33.3	16.7	0.0	2.17
기관 규모	중소기업	(38)	2.6	13.2	42.1	31.6	10.5	3.34
	중견기업	(1)	0.0	0.0	100.0	0.0	0.0	3.00
	대기업	(2)	50.0	0.0	50.0	0.0	0.0	2.00
	기타	(8)	50.0	0.0	25.0	25.0	0.0	2.25
수혜 여부	수혜자	(35)	2.9	14.3	40.0	34.3	8.6	3.31
	미수혜자	(14)	35.7	0.0	42.9	14.3	7.1	2.57

□ 출자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 기관을 대상으로 출자 개수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88.4%로 나타난 한편, ‘증가시켰다’는 응답은 11.6%로 나타남

□ 증가시켰다는 응답 기관의 연평균 증가 개수는 약 4.2개로 나타났으며, 특히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의 경우 약 10.0개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23〉 출자 개수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

(Base: ‘계획에 영향 있다’ 응답 기관, n=43, 단위: 명, %, 개)

구 분	사 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증가시켰다	증가 개수	증가 비율	
전 체	(43)	88.4	11.6	4.20	67.00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84.0	16.0	2.75	60.00
	창업기획자	(5)	100.0	0.0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100.0	0.0	-	-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85.7	14.3	10.00	95.00
	기금운용법인	(3)	100.0	0.0	-	-
기관 규모	중소기업	(37)	86.5	13.5	4.20	67.00
	중견기업	(1)	100.0	0.0	-	-
	대기업	(1)	100.0	0.0	-	-
	기타	(4)	100.0	0.0	-	-
수혜 여부	수혜자	(34)	85.3	14.7	4.20	67.00
	미수혜자	(9)	100.0	0.0	-	-

□ 투자 기간에 대한 영향 역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88.4%로 나타난 한편, ‘증가시켰다’는 응답은 11.6%로 나타남

□ 증가시켰다는 응답 기관의 연평균 증가 개월 수는 약 14.8개월로 나타났으며, 특히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의 경우 약 48.0개월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24> 투자 기간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

(Base: '계획에 영향 있다' 응답 기관, n=43, 단위: 명, %, 개월)

구 분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증가시켰다	증가 개월	증가 비율	
전 체	(43)	88.4	11.6	14.80	63.00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84.0	16.0	6.50	55.00
	창업기획자	(5)	100.0	0.0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100.0	0.0	-	-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85.7	14.3	48.00	95.00
	기금운용법인	(3)	100.0	0.0	-	-
기관 규모	중소기업	(37)	86.5	13.5	14.80	63.00
	중견기업	(1)	100.0	0.0	-	-
	대기업	(1)	100.0	0.0	-	-
	기타	(4)	100.0	0.0	-	-
수혜 여부	수혜자	(34)	88.2	11.8	18.25	76.25
	미수혜자	(9)	88.9	11.1	1.00	10.00

□ 동 제도가 출자계획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이유로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혜택과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25> 동 제도가 출자계획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유

(Base: '계획에 영향 없다' 응답 기관, n=6,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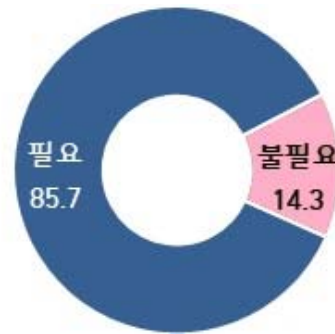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가 전체 출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과세 혜택과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다른 지원제도(보조금 등)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타	
전 체	(6)	50.0	16.7	33.3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	
	창업기획자	(2)	50.0	50.0	0.0
	신기술사업금융업자	(1)	100.0	0.0	0.0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	-	-	-
	기금운용법인	(3)	33.3	0.0	66.7
기관 규모	중소기업	(1)	100.0	0.0	0.0
	중견기업	-	-	-	-
	대기업	(1)	100.0	0.0	0.0
	기타	(4)	25.0	25.0	50.0
수혜 여부	수혜자	(1)	100.0	0.0	0.0
	미수혜자	(5)	40.0	20.0	40.0

5) 동 제도의 적용요건에 따른 시행의 필요 여부

□ 동 제도를 최저한세의 대상에서 제외해서 다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요건에만 해당하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85.7%로 ‘불필요하다’(14.3%) 대비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12] 동 제도의 적용요건에 따른 시행의 필요 여부

(Base: 전체, n=49, 단위: %)



<표 III-26> 동 제도의 적용요건에 따른 시행의 필요 여부

(Base: 전체, n=49,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필요	불필요
전체		(49)	85.7	14.3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92.0	8.0
	창업기획자	(7)	100.0	0.0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25.0	75.0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85.7	14.3
	기금운용법인	(6)	83.3	16.7
기관 규모	중소기업	(38)	86.8	13.2
	중견기업	(1)	0.0	100.0
	대기업	(2)	100.0	0.0
	기타	(8)	87.5	12.5
수혜 여부	수혜자	(35)	82.9	17.1
	미수혜자	(14)	92.9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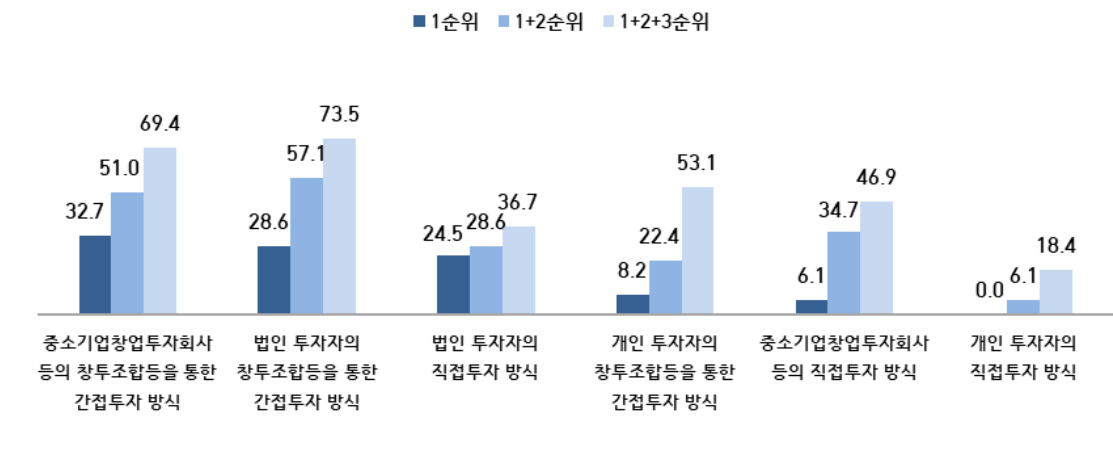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 개선 방향

1)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

-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 강화가 가장 필요한 출자 방식으로, 1순위 응답 기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1+2순위 및 1+2+3순위 기준으로는 ‘법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3]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

(Base: 전체. n=49, 단위: %)



<표 III-27>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1순위)

(Base: 전체, n=49,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등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법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법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개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등의 직접투자 방식	
전체	(49)	32.7	28.6	24.5	8.2	6.1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32.0	36.0	12.0	12.0	8.0
	창업기획자	(7)	42.9	0.0	42.9	0.0	14.3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0.0	25.0	75.0	0.0	0.0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57.1	28.6	0.0	14.3	0.0
	기금운용법인	(6)	16.7	33.3	50.0	0.0	0.0
기관 규모	중소기업	(38)	36.8	26.3	18.4	10.5	7.9
	중견기업	(1)	0.0	0.0	100.0	0.0	0.0
	대기업	(2)	0.0	100.0	0.0	0.0	0.0
	기타	(8)	25.0	25.0	50.0	0.0	0.0
수혜 여부	수혜자	(35)	37.1	31.4	17.1	5.7	8.6
	미수혜자	(14)	21.4	21.4	42.9	14.3	0.0

<표 III-28>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1+2순위)

(Base: 전체, n=49,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법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의 직접투자 방식	법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개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개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전체	(49)	57.1	51.0	34.7	28.6	22.4	6.1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60.0	52.0	36.0	16.0	28.0	8.0
	창업기획자	(7)	28.6	57.1	57.1	42.9	0.0	14.3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100.0	0.0	0.0	100.0	0.0	0.0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42.9	71.4	57.1	0.0	28.6	0.0
	기금운용법인	(6)	66.7	50.0	0.0	50.0	33.3	0.0
기관 규모	중소기업	(38)	55.3	55.3	42.1	21.1	21.1	5.3
	중견기업	(1)	100.0	0.0	0.0	100.0	0.0	0.0
	대기업	(2)	100.0	0.0	0.0	50.0	50.0	0.0
	기타	(8)	50.0	50.0	12.5	50.0	25.0	12.5
수혜 여부	수혜자	(35)	57.1	54.3	42.9	22.9	20.0	2.9
	미수혜자	(14)	57.1	42.9	14.3	42.9	28.6	14.3

<표 III -29>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1+2+3순위)

(Base: 전체, n=49,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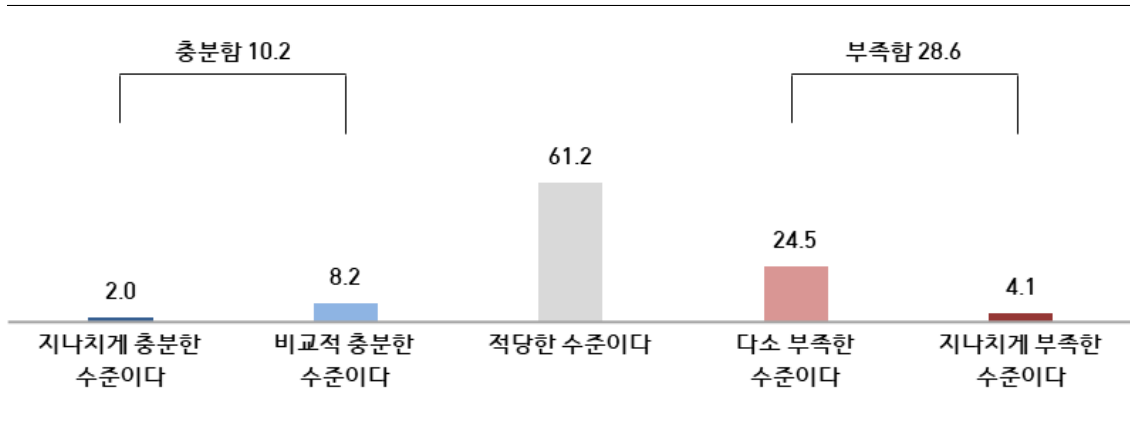
구 분	사 례 수	법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개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의 직접투자 방식	법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개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전 체	(49)	73.5	69.4	53.1	46.9	36.7	18.4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76.0	80.0	60.0	44.0	20.0	20.0
	창업기획자	(7)	85.7	57.1	14.3	71.4	42.9	28.6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100.0	0.0	25.0	25.0	100.0	50.0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42.9	85.7	85.7	57.1	28.6	0.0
	기금운용법인	(6)	66.7	66.7	50.0	33.3	66.7	0.0
기관 규모	중소기업	(38)	73.7	76.3	52.6	47.4	28.9	21.1
	중견기업	(1)	100.0	0.0	100.0	0.0	100.0	0.0
	대기업	(2)	100.0	0.0	50.0	100.0	50.0	0.0
	기타	(8)	62.5	62.5	50.0	37.5	62.5	12.5
수혜 여부	수혜자	(35)	77.1	71.4	51.4	51.4	31.4	17.1
	미수혜자	(14)	64.3	64.3	57.1	35.7	50.0	21.4

2) 동 제도의 현행 조세지원 수준

- 동 제도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통한 현행 조세지원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족하다’는 응답이 28.6%로 ‘충분하다’(10.2%)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기관 유형별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의 경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14]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통한 현행 조세지원 수준

(Base: 전체, n=49, 단위: %)



<표 III-30>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통한 현행 조세지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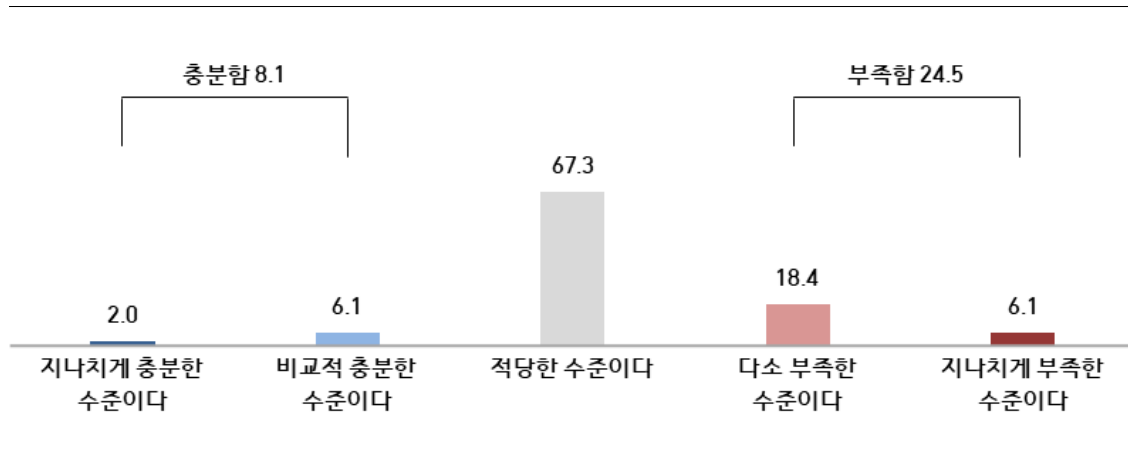
(Base: 전체, n=49,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지나치게 충분한 수준이다	비교적 충분한 수준이다	적당한 수준이다	다소 부족한 수준이다	지나치게 부족한 수준이다	5점 평균	
전체	(49)	2.0	8.2	61.2	24.5	4.1	2.80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0.0	8.0	72.0	16.0	4.0	2.84
	창업기획자	(7)	14.3	0.0	57.1	28.6	0.0	3.00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0.0	25.0	50.0	0.0	25.0	2.75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0.0	0.0	57.1	42.9	0.0	2.57
	기금운용법인	(6)	0.0	16.7	33.3	50.0	0.0	2.67
기관 규모	중소기업	(38)	2.6	2.6	65.8	26.3	2.6	2.76
	중견기업	(1)	0.0	100.0	0.0	0.0	0.0	4.00
	대기업	(2)	0.0	50.0	0.0	0.0	50.0	2.50
	기타	(8)	0.0	12.5	62.5	25.0	0.0	2.88
수혜 여부	수혜자	(35)	0.0	5.7	68.6	22.9	2.9	2.77
	미수혜자	(14)	7.1	14.3	42.9	28.6	7.1	2.86

□ 동 제도의 배당소득 비과세를 통한 현행 조세지원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역시 ‘부족하다’는 응답이 24.5%로 ‘충분하다’(8.1%)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5] 배당소득 비과세를 통한 현행 조세지원 수준

(Base: 전체. n=49, 단위: %)



<표 III-31> 배당소득 비과세를 통한 현행 조세지원 수준

(Base: 전체, n=49,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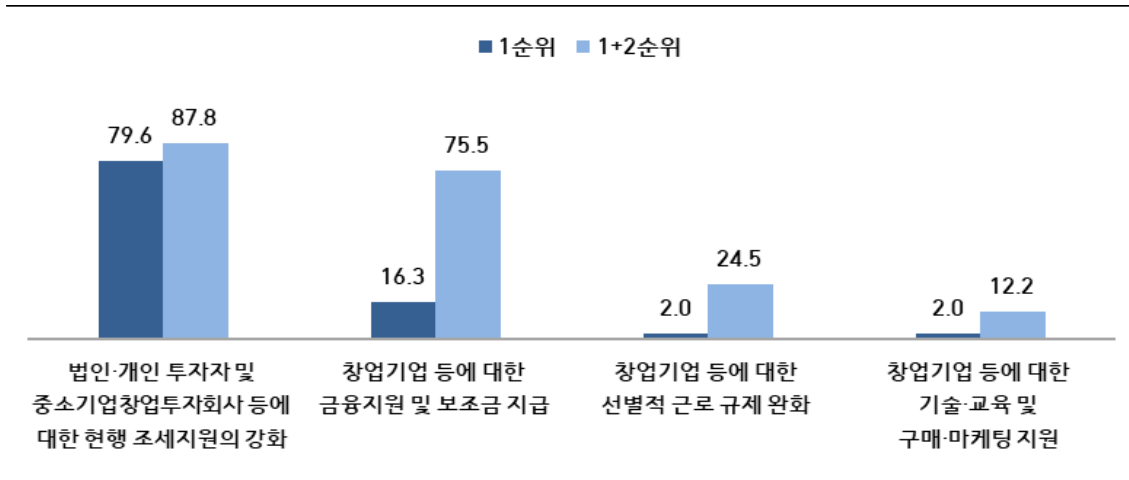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지나치게 충분한 수준이다	비교적 충분한 수준이다	적당한 수준이다	다소 부족한 수준이다	지나치게 부족한 수준이다	5점 평균	
전체	(49)	2.0	6.1	67.3	18.4	6.1	2.80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0.0	0.0	84.0	8.0	8.0	2.76
	창업기획자	(7)	14.3	0.0	57.1	28.6	0.0	3.00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0.0	25.0	50.0	0.0	25.0	2.75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0.0	0.0	57.1	42.9	0.0	2.57
	기금운용법인	(6)	0.0	33.3	33.3	33.3	0.0	3.00
기관 규모	중소기업	(38)	2.6	0.0	71.1	21.1	5.3	2.74
	중견기업	(1)	0.0	100.0	0.0	0.0	0.0	4.00
	대기업	(2)	0.0	0.0	50.0	0.0	50.0	2.00
	기타	(8)	0.0	25.0	62.5	12.5	0.0	3.13
수혜 여부	수혜자	(35)	0.0	2.9	74.3	17.1	5.7	2.74
	미수혜자	(14)	7.1	14.3	50.0	21.4	7.1	2.93

3)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1순위와 1+2 순위 응답 모두 ‘법인·개인투자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현행 조세 지원의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16]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Base: 전체, n=49, 단위: %)



<표 III-32>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1순위)

(Base: 전체, n=49,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법인·개인 투자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의 강화	창업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및 보조금 지급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선별적 근로 규제 완화	창업기업 등에 대한 기술·교육 및 구매·마케팅 지원
전체	(49)	79.6	16.3	2.0	2.0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72.0	20.0	4.0	4.0
	창업기획자	(7) 85.7	14.3	0.0	0.0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100.0	0.0	0.0	0.0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85.7	14.3	0.0	0.0
	기금운용법인	(6) 83.3	16.7	0.0	0.0
기관 규모	중소기업	(38) 81.6	13.2	2.6	2.6
	중견기업	(1) 100.0	0.0	0.0	0.0
	대기업	(2) 50.0	50.0	0.0	0.0
	기타	(8) 75.0	25.0	0.0	0.0
수혜 여부	수혜자	(35) 80.0	14.3	2.9	2.9
	미수혜자	(14) 78.6	21.4	0.0	0.0

<표 III-33>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1+2순위)

(Base: 전체, n=49,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법인·개인 투자자 및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등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의 강화	창업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및 보조금 지급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선별적 근로 규제 완화	창업기업 등에 대한 기술·교육 및 구매·마케팅 지원	
전체	(49)	87.8	75.5	24.5	12.2	
기관 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88.0	68.0	28.0	16.0
	창업기획자	(7)	85.7	85.7	28.6	0.0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100.0	50.0	50.0	0.0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7)	85.7	85.7	14.3	14.3
	기금운용법인	(6)	83.3	100.0	0.0	16.7
기관 규모	중소기업	(38)	89.5	73.7	23.7	13.2
	중견기업	(1)	100.0	0.0	100.0	0.0
	대기업	(2)	100.0	50.0	50.0	0.0
	기타	(8)	75.0	100.0	12.5	12.5
수혜 여부	수혜자	(35)	91.4	74.3	25.7	8.6
	미수혜자	(14)	78.6	78.6	21.4	21.4

IV. 개인투자자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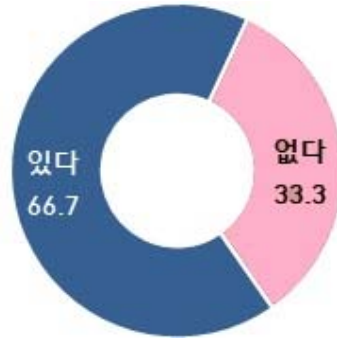
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인식 및 활용

1) 소득공제 혜택 수혜 여부

-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수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약 66.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세법상 지위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80.0%로 ‘비사업자’(61.5%)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IV-1] 소득공제 혜택 수혜 여부

(Base: 전체, n=18, 단위: %)



<표 IV-1> 소득공제 혜택 수혜 여부

(Base: 전체, n=18,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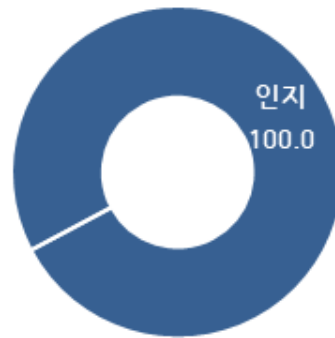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받은 적 있음	받은 적 없음
전체		(18)	66.7	33.3
소득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5)	80.0	20.0
	비사업자	(13)	61.5	38.5
성별	남성	(15)	80.0	20.0
	여성	(3)	0.0	100.0
연령	20대 이하	(2)	50.0	50.0
	30대	(5)	60.0	40.0
	40대	(8)	87.5	12.5
	50대 이상	(3)	33.3	66.7

2) 소득공제 혜택 인지 관련

□ 제도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모두 동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 소득공제 혜택 인지 여부

(Base: 혜택 미수혜자, n=6, 단위: %)



<표 IV-2> 소득공제 혜택 인지 여부

(Base: 혜택 미수혜자, n=6,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인지	비인지
전 체		(6)	100.0	0.0
소득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1)	100.0	0.0
	비사업자	(5)	100.0	0.0
성별	남성	(3)	100.0	0.0
	여성	(3)	100.0	0.0
연령	20대 이하	(1)	100.0	0.0
	30대	(2)	100.0	0.0
	40대	(1)	100.0	0.0
	50대 이상	(2)	100.0	0.0

□ 제도를 인지한 시기에 대해서는, ‘창투조합·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결정 전에 알았음’이라는 응답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제도 인지 경로에 대해서는, ‘창투조합·벤처기업 등에 대해 출자·투자하는 다른 거주자로부터’가 50.0%, ‘정부나 공공기관의 홍보를 통해서’가 44.4%로 높게 나타남

<표 IV-3> 소득공제 혜택 인지 시기

(Base: 전체(소득공제 혜택 인지자), n=18,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창투조합·벤처 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결정 전에 알았음	출자·투자 결정 후 출자·투자 준비과정에서 알게 되었음	창투조합·벤처 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후에 알게 되었음
전 체		(18)	66.7	22.2	11.1
소득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5)	40.0	40.0	20.0
	비사업자	(13)	76.9	15.4	7.7
성별	남성	(15)	66.7	20.0	13.3
	여성	(3)	66.7	33.3	0.0
연령	20대 이하	(2)	50.0	50.0	0.0
	30대	(5)	60.0	20.0	20.0
	40대	(8)	75.0	25.0	0.0
	50대 이상	(3)	66.7	0.0	33.3

<표 IV-4> 소득공제 혜택 인지 경로(중복응답)

(Base: 전체(소득공제 혜택 인지자), n=18,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창투조합·벤처 기업 등에 대해 출자·투자하는 다른 거주자로부터	정부나 공공기관의 홍보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기타
전 체		(18)	50.0	44.4	11.1	11.1
소득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5)	60.0	40.0	20.0	0.0
	비사업자	(13)	46.2	46.2	7.7	15.4
성별	남성	(15)	46.7	40.0	13.3	6.7
	여성	(3)	66.7	66.7	0.0	33.3
연령	20대 이하	(2)	50.0	50.0	0.0	0.0
	30대	(5)	60.0	40.0	20.0	20.0
	40대	(8)	50.0	37.5	12.5	12.5
	50대 이상	(3)	33.3	66.7	0.0	0.0

□ 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적용받지 않은 이유로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5> 소득공제 혜택 미수혜 이유

(Base: 소득공제 혜택 인지 및 미수혜자, n=6,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다른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아서(최저한 세의 적용을 받아서)	소득공제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기타
전 체		(6)	50.0	16.7	16.7	16.7
소득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1)	100.0	0.0	0.0	0.0
	비사업자	(5)	40.0	20.0	20.0	20.0
성별	남성	(3)	100.0	0.0	0.0	0.0
	여성	(3)	0.0	33.3	33.3	33.3
연령	20대 이하	(1)	0.0	0.0	0.0	100.0
	30대	(2)	0.0	50.0	50.0	0.0
	40대	(1)	100.0	0.0	0.0	0.0
	50대 이상	(2)	10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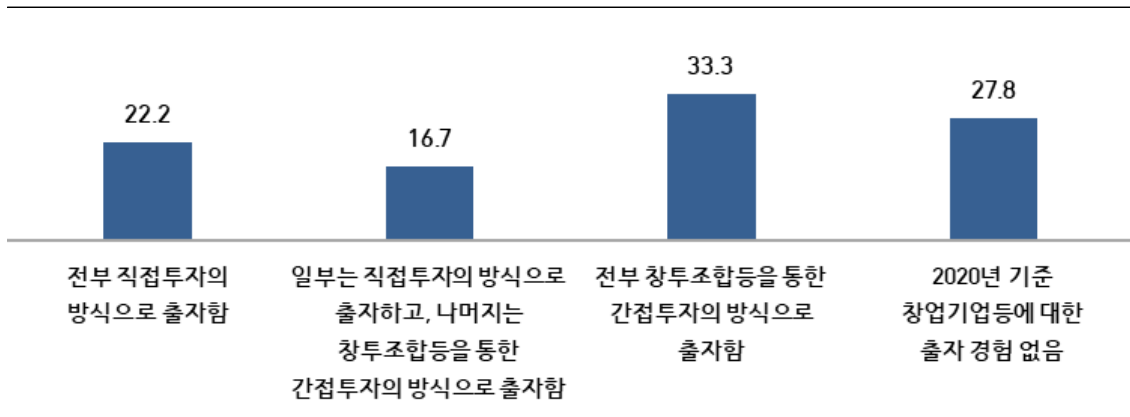
2.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현황

1) 출자 방식

□ 2020년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부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출자함’이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편 전체 약 27.8%는 2020년에 출자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현황

(Base: 전체, n=18, 단위: %)



<표 IV-6>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현황

(Base: 전체, n=18,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부 직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함	일부는 직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하고, 나머지는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함	전부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함	2020년 기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경험 없음	
전체	(18)	22.2	16.7	33.3	27.8	
소득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5)	40.0	60.0	0.0	0.0
	비사업자	(13)	15.4	0.0	46.2	38.5
성별	남성	(15)	26.7	20.0	40.0	13.3
	여성	(3)	0.0	0.0	0.0	100.0
연령	20대 이하	(2)	0.0	0.0	50.0	50.0
	30대	(5)	0.0	0.0	40.0	60.0
	40대	(8)	50.0	25.0	25.0	0.0
	50대 이상	(3)	0.0	33.3	33.3	33.3

-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한 투자자 모두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역시 일부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7> 간접투자 세부 유형(중복응답)

(Base: 간접투자 방식 출자자, n=9,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개인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 투자기구
전 체		(9)	100.0	11.1
소득법상지위	개인사업자	(3)	100.0	33.3
	비사업자	(6)	100.0	0.0
성별	남성	(9)	100.0	11.1
	여성	-	-	-
연령	20대 이하	(1)	100.0	0.0
	30대	(2)	100.0	0.0
	40대	(4)	100.0	25.0
	50대 이상	(2)	100.0	0.0

2) 출자 방식별 미출자 이유

-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직접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충분히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가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직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약 72.7%가 ‘간접투자 방식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해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8〉 간접투자 방식 미출자 이유

(Base: 간접투자 방식 미출자자, n=9,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투자하더라도 직접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충분히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창투조합 등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되어서	기타	
전 체	(9)	55.6	22.2	11.1	11.1	
소득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2)	50.0	0.0	50.0	0.0
	비사업자	(7)	57.1	28.6	0.0	14.3
성별	남성	(6)	66.7	16.7	16.7	0.0
	여성	(3)	33.3	33.3	0.0	33.3
연령	20대 이하	(1)	0.0	0.0	0.0	100.0
	30대	(3)	66.7	33.3	0.0	0.0
	40대	(4)	75.0	0.0	25.0	0.0
	50대 이상	(1)	0.0	100.0	0.0	0.0

<표 IV-9> 직접투자 방식 미출자 이유

(Base: 직접투자 방식 미출자자, n=11,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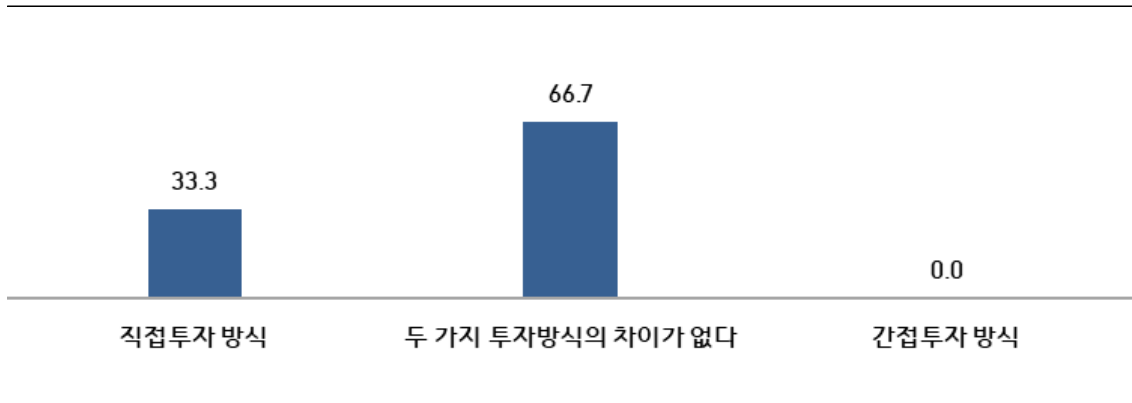
구 분		사 례 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해서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과다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기타
전 체		(11)	72.7	18.2	9.1
소득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	-	-	-
	비사업자	(11)	72.7	18.2	9.1
성별	남성	(8)	75.0	25.0	0.0
	여성	(3)	66.7	0.0	33.3
연령	20대 이하	(2)	50.0	0.0	50.0
	30대	(5)	80.0	20.0	0.0
	40대	(2)	100.0	0.0	0.0
	50대 이상	(2)	50.0	50.0	0.0

3) 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 방식

-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 방식 모두를 통해 투자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두 가지 투자방식의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그림 IV-4] 순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 방식

(Base: 혼합 방식 출자자, n=3, 단위: %)



<표 IV-10> 순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 방식

(Base: 혼합 방식 출자자, n=3,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직접투자 방식	두 가지 투자방식의 차이가 없다	간접투자 방식	
전 체	(3)	33.3	66.7	0.0	
소득법상지위	개인사업자	(3)	33.3	66.7	0.0
	비사업자	-	-	-	-
성별	남성	(3)	33.3	66.7	0.0
	여성	-	-	-	-
연령	20대 이하	-	-	-	-
	30대	-	-	-	-
	40대	(2)	0.0	100.0	0.0
	50대 이상	(1)	10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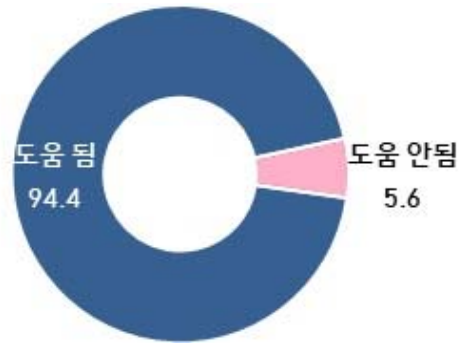
3. 소득공제 혜택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미친 영향

1)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도움 여부

□ 동 제도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약 94.4%)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5]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도움 여부

(Base: 전체, n=18, 단위: %)



<표 IV-11>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도움 여부

(Base: 전체, n=18,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도움 됨	도움 안됨
전 체		(18)	94.4	5.6
소득법상지위	개인사업자	(5)	100.0	0.0
	비사업자	(13)	92.3	7.7
성별	남성	(15)	100.0	0.0
	여성	(3)	66.7	33.3
연령	20대 이하	(2)	100.0	0.0
	30대	(5)	80.0	20.0
	40대	(8)	100.0	0.0
	50대 이상	(3)	100.0	0.0

-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경우, ‘투자성과가 나빠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해서’를 그 이유로 꼽음

〈표 IV-12〉 소득공제 혜택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Base: ‘혜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응답자, n=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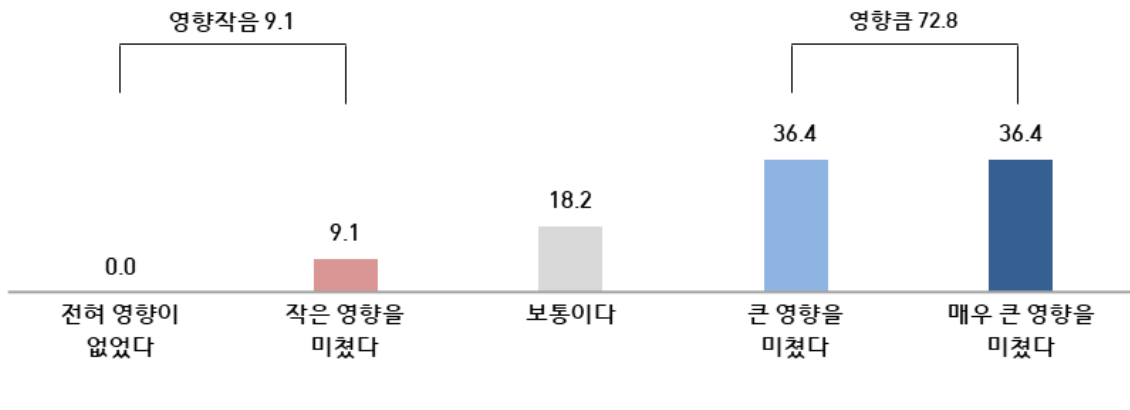
내용	응답 비율
투자성과가 나빠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해서	100.0

2) 소득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및 출자 금액 증가 효과

-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꽤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72.8%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작은 영향을 미쳤다’는 9.1%로 일부 나타남

[그림 IV-6]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Base: 2020년 출자자, n=11, 단위: %)



<표 IV-13>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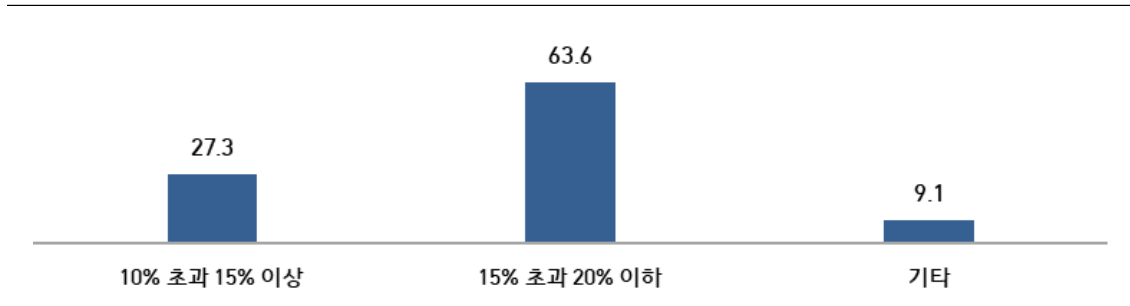
(Base: 2020년 출자자, n=11,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영향이 없었다	작은 영향을 미쳤다	보통이다	큰 영향을 미쳤다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5점척도 평균	
전체	(11)	0.0	9.1	18.2	36.4	36.4	4.00	
소득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4)	0.0	0.0	25.0	50.0	25.0	4.00
	비사업자	(7)	0.0	14.3	14.3	28.6	42.9	4.00
성별	남성	(11)	0.0	9.1	18.2	36.4	36.4	4.00
	여성	-	-	-	-	-	-	-
연령	20대 이하	(1)	0.0	100.0	0.0	0.0	0.0	2.00
	30대	(2)	0.0	0.0	0.0	50.0	50.0	4.50
	40대	(7)	0.0	0.0	28.6	28.6	42.9	4.14
	50대 이상	(1)	0.0	0.0	0.0	100.0	0.0	4.00

□ 동 제도의 출자·투자 금액 증가효과에 대해서는 ‘15% 초과 20% 이하’가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 초과 15% 이상’은 27.3%로 나타남

[그림 IV-7]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금액 증가 효과

(Base: 2020년 출자자, n=11, 단위: %)



<표 IV-14>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금액 증가효과

(Base: 2020년 출자자, n=11,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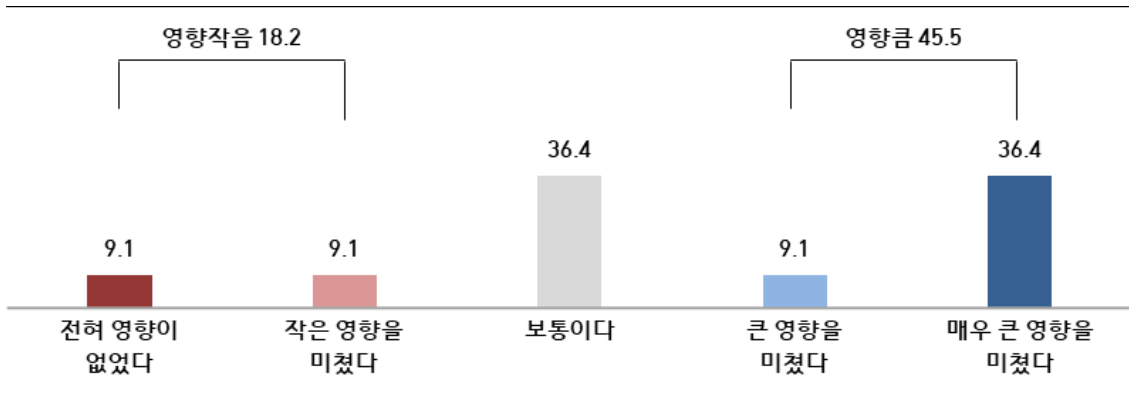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10% 초과 15% 이상	15% 초과 20% 이하	기타	
전 체	(11)	27.3	63.6	9.1	
소득법상지위	개인사업자	(4)	50.0	50.0	0.0
	비사업자	(7)	14.3	71.4	14.3
성별	남성	(11)	27.3	63.6	9.1
	여성	-	-	-	-
연령	20대 이하	(1)	100.0	0.0	0.0
	30대	(2)	0.0	100.0	0.0
	40대	(7)	28.6	57.1	14.3
	50대 이상	(1)	0.0	100.0	0.0

3) 출자계획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 출자계획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해서는 꽤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5.5%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은 약 9.1%로 나타남

[그림 IV-8] 출자계획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Base: 2020년 출자자, n=11, 단위: %)



<표 IV-15> 출자계획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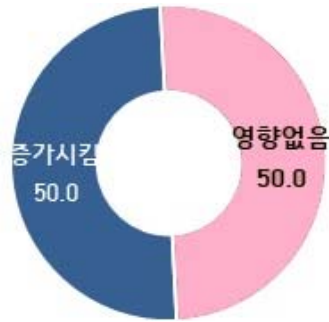
(Base: 2020년 출자자, n=11,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영향이 없었다	작은 영향을 미쳤다	보통이다	큰 영향을 미쳤다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5점척도 평균	
전체	(11)	9.1	9.1	36.4	9.1	36.4	3.55	
소득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4)	0.0	0.0	50.0	25.0	25.0	3.75
	비사업자	(7)	14.3	14.3	28.6	0.0	42.9	3.43
성별	남성	(11)	9.1	9.1	36.4	9.1	36.4	3.55
	여성	-	-	-	-	-	-	-
연령	20대 이하	(1)	0.0	100.0	0.0	0.0	0.0	2.00
	30대	(2)	0.0	0.0	50.0	0.0	50.0	4.00
	40대	(7)	14.3	0.0	42.9	0.0	42.9	3.57
	50대 이상	(1)	0.0	0.0	0.0	100.0	0.0	4.00

□ 출자 개수를 증가시켰다는 응답은 50.0%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증가 개수는 약 1.2개로 나타남.

[그림 IV-9] 출자 개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Base: '계획에 영향이 있다' 응답자, n=10, 단위: %)



<표 IV-16> 출자 개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Base: '계획에 영향이 있다' 응답자, n=10, 단위: 명, %, 개)

구 분	사 례 수	거 의 영 향 을 미 치 지 않 았 다	증 가 시 켜 다	증 가 시 켜 다		
				증 가 개 수	증 가 비 율	
전 체	(10)	50.0	50.0	1.20	50.00	
소득법상 지 위	개인사업자	(4)	25.0	75.0	1.00	43.33
	비사업자	(6)	66.7	33.3	1.50	60.00
성 별	남성	(10)	50.0	50.0	1.20	50.00
	여성	-	-	-	-	-
연 령	20대 이하	(1)	100.0	0.0	-	-
	30대	(2)	100.0	0.0	-	-
	40대	(6)	33.3	66.7	1.25	57.50
	50대 이상	(1)	0.0	100.0	1.00	20.00

□ 한편, 투자 기간에 대해서는 약 40.0%가 증가시켰다고 응답하였으며, 연평균 증가 개월 수는 약 11개월로 나타남

[그림 IV-10] 투자 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Base: '계획에 영향이 있다' 응답자, n=10, 단위: %)



<표 IV-17> 투자 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Base: '계획에 영향이 있다' 응답자, n=10, 단위: 명, %, 개월)

구 분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증가시켰다	증가시켰다		
				증가 개월	증가 비율	
전 체	(10)	60.0	40.0	11.00	55.00	
소득법상지위	개인사업자	(4)	25.0	75.0	6.67	40.00
	비사업자	(6)	83.3	16.7	24.00	100.00
성별	남성	(10)	60.0	40.0	11.00	55.00
	여성	-	-	-	-	-
연령	20대 이하	(1)	100.0	0.0	-	-
	30대	(2)	100.0	0.0	-	-
	40대	(6)	50.0	50.0	13.00	70.00
	50대 이상	(1)	0.0	100.0	5.00	10.00

□ 제도가 출자 개수 및 기간 등 출자계획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IV-18> 소득공제 혜택이 출자계획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유

(Base: '출자계획에 영향이 전혀 없었다' 응답자, n=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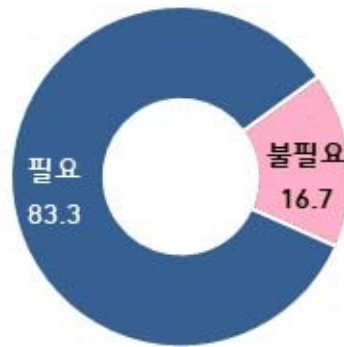
내용	응답 비율
전체 출자·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공제 혜택과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100.0

4) 동 소득공제 혜택의 적용요건에 따른 시행의 필요 여부

- 동 제도를 최저한세의 대상에서 제외해서 다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요건에만 해당하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83.3%로 ‘불필요하다’(16.7%)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IV-11] 동 소득공제 혜택의 적용요건에 따른 시행의 필요 여부

(Base: 전체, n=18, 단위: %)



<표 IV-19> 동 소득공제 혜택의 적용요건에 따른 시행의 필요 여부

(Base: 전체, n=18,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필요	불필요
전체		(18)	83.3	16.7
소득법상지위	개인사업자	(5)	100.0	0.0
	비사업자	(13)	76.9	23.1
성별	남성	(15)	80.0	20.0
	여성	(3)	100.0	0.0
연령	20대 이하	(2)	50.0	50.0
	30대	(5)	100.0	0.0
	40대	(8)	87.5	12.5
	50대 이상	(3)	66.7	33.3

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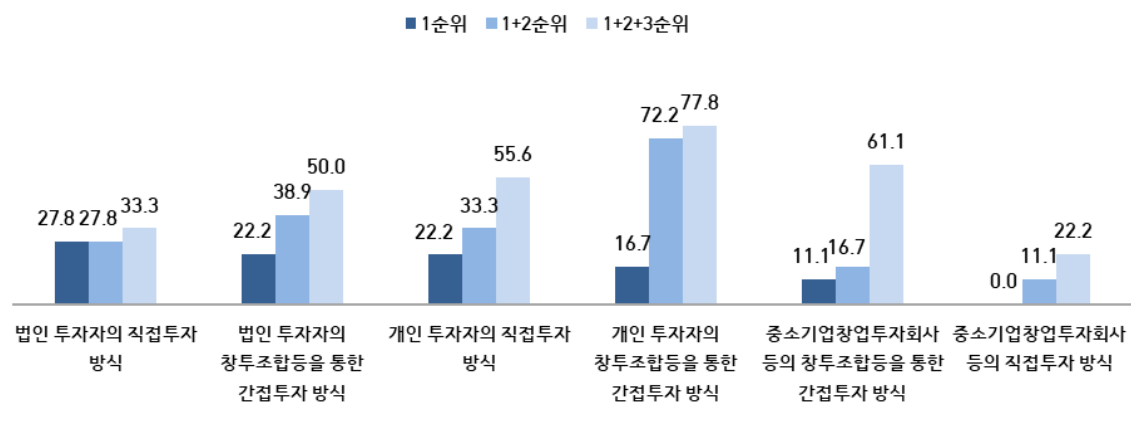
1)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

□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에 대해, 1순위 응답 기준으로 ‘법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27.8%)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1+2순위 및 1+2+3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개인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70% 이상의 높은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12]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

(Base: 전체, n=18, 단위: %)



<표 IV-20>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1순위)

(Base: 전체, n=18,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법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법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개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개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전 체		(18)	27.8	22.2	22.2	16.7	11.1
소득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5)	60.0	0.0	20.0	20.0	0.0
	비사업자	(13)	15.4	30.8	23.1	15.4	15.4
성별	남성	(15)	26.7	13.3	26.7	20.0	13.3
	여성	(3)	33.3	66.7	0.0	0.0	0.0
연령	20대 이하	(2)	0.0	100.0	0.0	0.0	0.0
	30대	(5)	40.0	20.0	20.0	0.0	20.0
	40대	(8)	37.5	12.5	25.0	25.0	0.0
	50대 이상	(3)	0.0	0.0	33.3	33.3	33.3

<표 IV-21>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1+2순위)

(Base: 전체, n=18,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개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법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개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법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의 직접투자 방식
전 체		(18)	72.2	38.9	33.3	27.8	16.7	11.1
소득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5)	60.0	20.0	40.0	60.0	0.0	20.0
	비사업자	(13)	76.9	46.2	30.8	15.4	23.1	7.7
성별	남성	(15)	73.3	26.7	40.0	26.7	20.0	13.3
	여성	(3)	66.7	100.0	0.0	33.3	0.0	0.0
연령	20대 이하	(2)	100.0	100.0	0.0	0.0	0.0	0.0
	30대	(5)	80.0	40.0	20.0	40.0	20.0	0.0
	40대	(8)	62.5	25.0	50.0	37.5	0.0	25.0
	50대 이상	(3)	66.7	33.3	33.3	0.0	66.7	0.0

<표 IV-22>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1+2+3순위)

(Base: 전체, n=18,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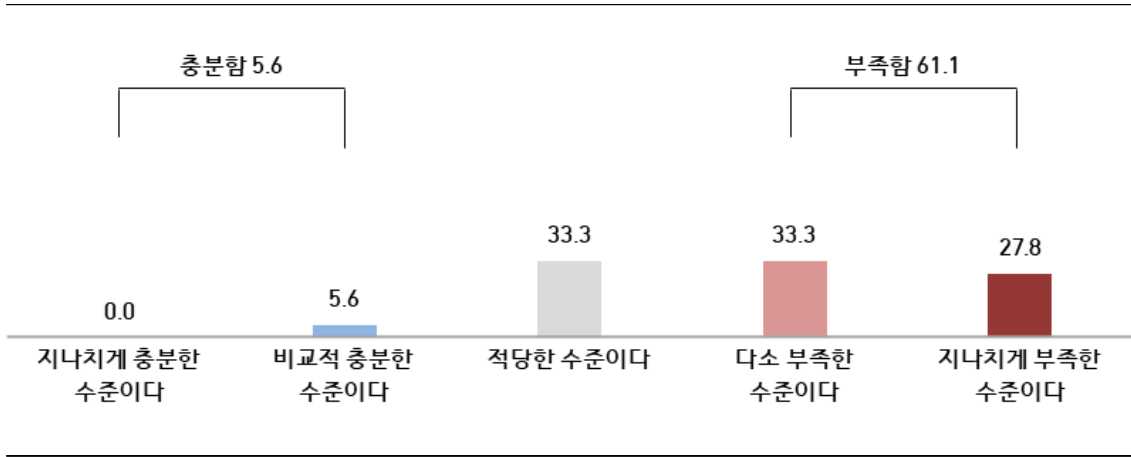
구 분		사 례 수	개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개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법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법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의 직접투자 방식
전 체		(18)	77.8	61.1	55.6	50.0	33.3	22.2
소득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5)	60.0	40.0	80.0	40.0	60.0	20.0
	비사업자	(13)	84.6	69.2	46.2	53.8	23.1	23.1
성별	남성	(15)	80.0	60.0	60.0	40.0	33.3	26.7
	여성	(3)	66.7	66.7	33.3	100.0	33.3	0.0
연령	20대 이하	(2)	100.0	100.0	0.0	100.0	0.0	0.0
	30대	(5)	80.0	60.0	40.0	60.0	40.0	20.0
	40대	(8)	62.5	37.5	75.0	37.5	50.0	37.5
	50대 이상	(3)	100.0	100.0	66.7	33.3	0.0	0.0

2) 동 제도의 현행 조세지원 수준

- 동 제도의 현행 조세지원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족하다’는 응답이 61.1%로 ‘충분하다’(5.6%) 대비 높게 나타남(‘적당한 수준이다’, 33.3%)
- 부족하다는 의견 중 ‘다소 부족한 수준이다’가 33.3%, ‘지나치게 부족한 수준이다’가 27.8%로 나타남

[그림 IV-13] 동 제도의 현행 조세지원 수준

(Base: 전체, n=18, 단위: %)



<표 IV-23> 동 제도의 현행 조세지원 수준

(Base: 전체, n=18,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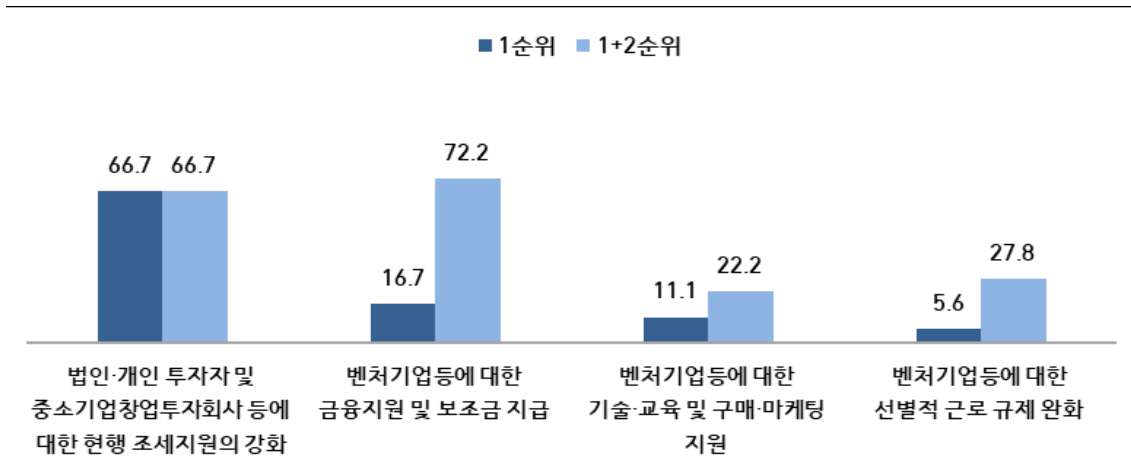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지나치게 충분한 수준이다	비교적 충분한 수준이다	적당한 수준이다	다소 부족한 수준이다	지나치게 부족한 수준이다	5점척도 평균	
전체	(18)	0.0	5.6	33.3	33.3	27.8	2.17	
소득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5)	0.0	20.0	0.0	60.0	20.0	2.20
	비사업자	(13)	0.0	0.0	46.2	23.1	30.8	2.15
성별	남성	(15)	0.0	6.7	26.7	33.3	33.3	2.07
	여성	(3)	0.0	0.0	66.7	33.3	0.0	2.67
연령	20대 이하	(2)	0.0	0.0	50.0	50.0	0.0	2.50
	30대	(5)	0.0	0.0	60.0	0.0	40.0	2.20
	40대	(8)	0.0	12.5	12.5	37.5	37.5	2.00
	50대 이상	(3)	0.0	0.0	33.3	66.7	0.0	2.33

3)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1순위 응답 기준으로 ‘법인·개인 투자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의 강화’(66.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편 1+2순위 기준으로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및 보조금 지급’(72.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4]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Base: 전체, n=18, 단위: %)



<표 IV-24>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1순위)

(Base: 전체, n=18,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법인·개인 투자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의 강화	벤처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및 보조금 지급	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술·교육 및 구매·마케팅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선별적 근로 규제 완화	
전체	(18)	66.7	16.7	11.1	5.6	
소득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5)	60.0	20.0	20.0	0.0
	비사업자	(13)	69.2	15.4	7.7	7.7
성별	남성	(15)	66.7	20.0	13.3	0.0
	여성	(3)	66.7	0.0	0.0	33.3
연령	20대 이하	(2)	100.0	0.0	0.0	0.0
	30대	(5)	60.0	20.0	0.0	20.0
	40대	(8)	75.0	25.0	0.0	0.0
	50대 이상	(3)	33.3	0.0	66.7	0.0

<표 IV-25>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1+2순위)

(Base: 전체, n=18,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벤처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및 보조금 지급	법인·개인 투자자 및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등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의 강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선별적 근로 규제 완화	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술·교육 및 구매·마케팅 지원
전 체		(18)	72.2	66.7	27.8	22.2
소득법상 지위	개인사업자	(5)	60.0	60.0	40.0	40.0
	비사업자	(13)	76.9	69.2	23.1	15.4
성별	남성	(15)	73.3	66.7	26.7	26.7
	여성	(3)	66.7	66.7	33.3	0.0
연령	20대 이하	(2)	50.0	100.0	0.0	0.0
	30대	(5)	80.0	60.0	40.0	20.0
	40대	(8)	62.5	75.0	37.5	12.5
	50대 이상	(3)	100.0	33.3	0.0	66.7

V. 법인투자자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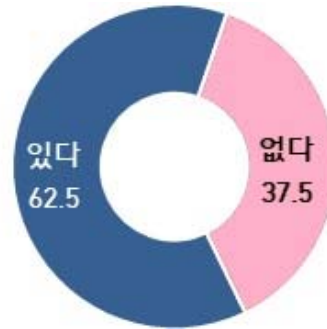
1.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인식 및 활용

1) 과세특례 혜택 수혜 여부

□ 법인투자자 대상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 수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62.5%의 기업이 제도 혜택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1] 과세특례 혜택 수혜 여부

(Base: 전체, n=8, 단위: %)



<표 V-1> 과세특례 혜택 수혜 여부

(Base: 전체, n=8,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받은 적 있음	받은 적 없음	
전체	(8)	62.5	37.5	
기업규모	중소기업	(6)	66.7	33.3
	중견기업	(1)	0.0	100.0
	대기업	(1)	100.0	0.0

2) 과세특례 혜택 인지 관련

□ 혜택 미수혜 응답 기업 모두 혜택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V-2〉 과세특례 혜택 인지 여부

(Base: 혜택 미수혜 기업, n=3,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인 지	비인 지	
전 체	(3)	100.0	0.0	
기업규모	중소기업	(2)	100.0	0.0
	중견기업	(1)	100.0	0.0
	대기업	-	-	-

□ 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의 약 87.5%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결정 전에 알았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홍보를 통해서’가 37.5%로 가장 높았음.

〈표 V-3〉 과세특례 혜택 인지 시기 및 경로(중복응답)

(Base: 혜택 인지 기업, n=8,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인 지 시 기		인 지 경 로(중복응답)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결정 전에 알았음	기타	정부나 공공기관의 홍보를 통해서	다른 내국법인 으로부터	기타	
전 체	(8)	87.5	12.5	37.5	25.0	62.5	
기업규모	중소기업	(6)	83.3	16.7	33.3	16.7	66.7
	중견기업	(1)	100.0	0.0	0.0	0.0	100.0
	대기업	(1)	100.0	0.0	100.0	100.0	0.0

주: ‘기타’ 응답으로는 ‘교육연수 및 포럼 등을 통해’, ‘직접 세법에서 확인함’ 등이 나타남.

□ 제도를 알고 있으나 수혜받지 않은 이유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남.

<표 V-4> 과세특례 혜택 미수혜 이유

(Base: 혜택 인지 및 미수혜 기업, n=3,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전체 과세대상 소득이 “0”보다 크지 않아서(전체 과세대상 소득이 “0”보다 컸지만, 이월결손금공제가 적용된 경우를 포함)	관련 세법규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액공제로 인한 조세감면액을 사후적으로 추징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해서	기타
전 체		(3)	33.3	33.3	33.3
기업규모	중소기업	(2)	50.0	0.0	50.0
	중견기업	(1)	0.0	100.0	0.0
	대기업	(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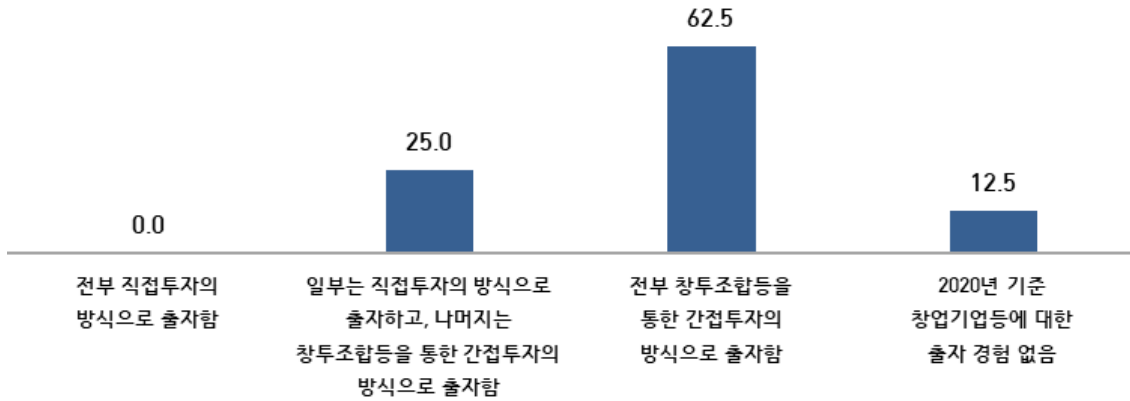
2.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현황

1) 출자 방식

□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현황에 대해 ‘전부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함’이라는 응답이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 12.5%는 2020년 기준 출자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2]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현황

(Base: 전체, n=8, 단위: %)



<표 V-5>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현황

(Base: 전체, n=8,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부 직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함	일부는 직접 투자 방식으로 출자하고, 나머지는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함	전부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출자함	2020년 기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경험 없음	
전체	(8)	0.0	25.0	62.5	12.5	
기업규모	중소기업	(6)	0.0	33.3	66.7	0.0
	중견기업	(1)	0.0	0.0	0.0	100.0
	대기업	(1)	0.0	0.0	100.0	0.0

□ 간접투자 시 이용한 구체적 유형으로는 ‘벤처투자조합’이 71.4%로 가장 많았음

<표 V-6> 간접투자 방식 구체적 유형(중복응답)

(Base: 간접투자 방식 출자기업, n=7,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 투자기구
전 체		(7)	71.4	14.3	14.3	14.3
기업규모	중소기업	(6)	66.7	16.7	0.0	16.7
	중견기업	-	-	-	-	-
	대기업	(1)	100.0	0.0	100.0	0.0

2) 투자 방식별 미출자 이유

- 투자 방식별로 미출자 이유에 대해서는, 간접투자의 경우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로 나타났으며, 직접투자의 경우 ‘간접투자 방식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해서’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V-7> 투자 방식별 미출자 이유

(Base: 간접투자 방식 미출자 기업, 직접투자 방식 미출자 기업, 단위: 명, %)

구 분	간접투자		직접투자			기타
	사례 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사례 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해서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성과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전 체	(1)	100.0	(6)	66.7	16.7	16.7
기업규모	중소기업	-	(4)	75.0	0.0	25.0
	중견기업	(1)	100.0	(1)	0.0	100.0
	대기업	-	-	(1)	100.0	0.0

- 2020년 출자 시 모두 ‘유상증자방법’을 통해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출자 방법 역시 ‘유상증자방법’이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V-8> 이용한 구체적 출자 방법 및 효과성

(Base: 2020년 출자기업, 전체,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이용한 출자방법		사례 수	더 효과적인 출자방법	
		최초출자방법	유상증자방법		최초출자방법	유상증자방법
전 체	(7)	0.0	100.0	(8)	12.5	87.5
기업규모	중소기업	(6)	0.0	(6)	16.7	83.3
	중견기업	-	-	(1)	0.0	100.0
	대기업	(1)	0.0	(1)	0.0	100.0

3) 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 방식

간접 및 직접투자 방식을 모두 이용한 투자기업의 경우 모두 수익률에는 차이가 없다고 응답함

〈표 V-9〉 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 방식

(Base: 혼합 방식 투자 기업, n=2,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두 가지 투자방식의 차이가 없다
전 체		(2)	100.0
기업규모	중소기업	(2)	100.0
	중견기업	-	-
	대기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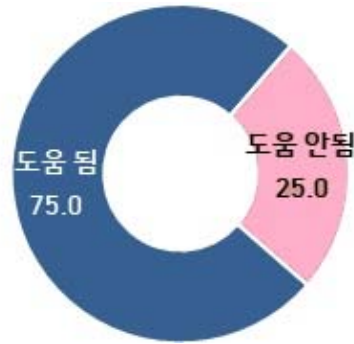
3. 세액공제 혜택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미친 영향

1)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도움 여부

□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약 75.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그림 V-3]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도움 여부

(Base: 전체, n=8, 단위: %)



<표 V-10>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도움 여부

(Base: 전체, n=8,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도움 됨	도움 안됨
전 체		(8)	75.0	25.0
기업규모	중소기업	(6)	83.3	16.7
	중견기업	(1)	0.0	100.0
	대기업	(1)	100.0	0.0

□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조세감면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 ‘세액공제를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해서’ 등으로 나타남

<표 V-11> 세액공제 혜택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Base: ‘혜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응답 기업, n=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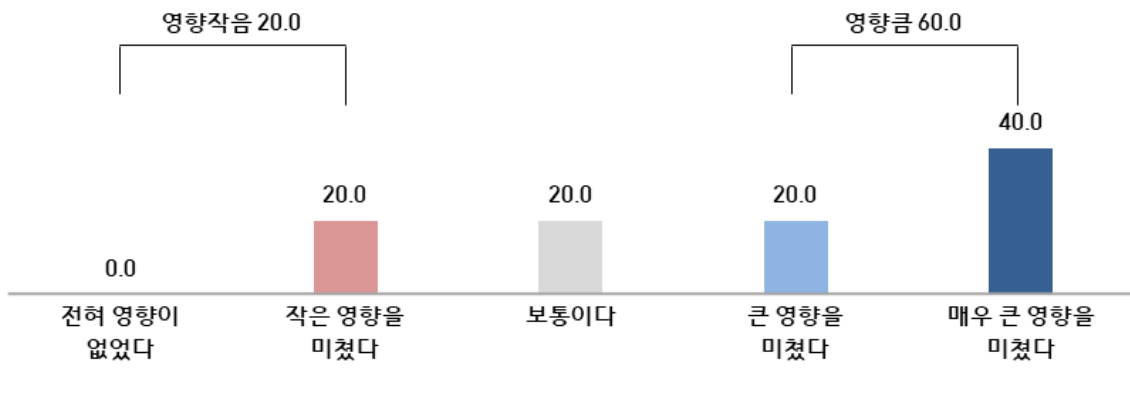
내용	응답 비율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세액공제를 통한 조세감면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	50.0
투자성과가 나빠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해서	50.0

2)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및 출자 금액 증가 효과

-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꽤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60.0%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음
- 한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은 20.0%로 나타남

[그림 V-4]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Base: 2020년 출자자 및 혜택 수혜자, n=5, 단위: %)



<표 V-12>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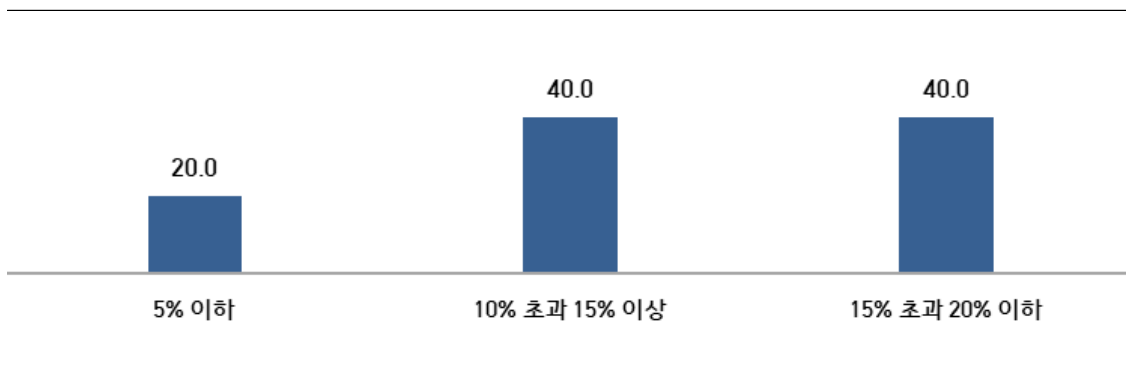
(Base: 2020년 출자기업 및 혜택 수혜기업, n=5,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영향이 없었다	작은 영향을 미쳤다	보통이다	큰 영향을 미쳤다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5점척도 평균	
전체	(5)	0.0	20.0	20.0	20.0	40.0	3.80	
기업규모	중소기업	(4)	0.0	25.0	0.0	25.0	50.0	4.00
	중견기업	-	-	-	-	-	-	-
	대기업	(1)	0.0	0.0	100.0	0.0	0.0	3.00

□ 제도가 출자·투자에 영향이 있다는 응답 기업을 대상으로 그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 초과 15% 이상’, ‘15% 초과 20% 이하’가 각각 40.0%로 높게 나타남.

[그림 V-5]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금액 증가효과

(Base: 2020년 출자기업 및 혜택 수혜기업, n=5, 단위: %)



<표 V-13>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금액 증가효과

(Base: 2020년 출자기업 및 혜택 수혜기업, n=5,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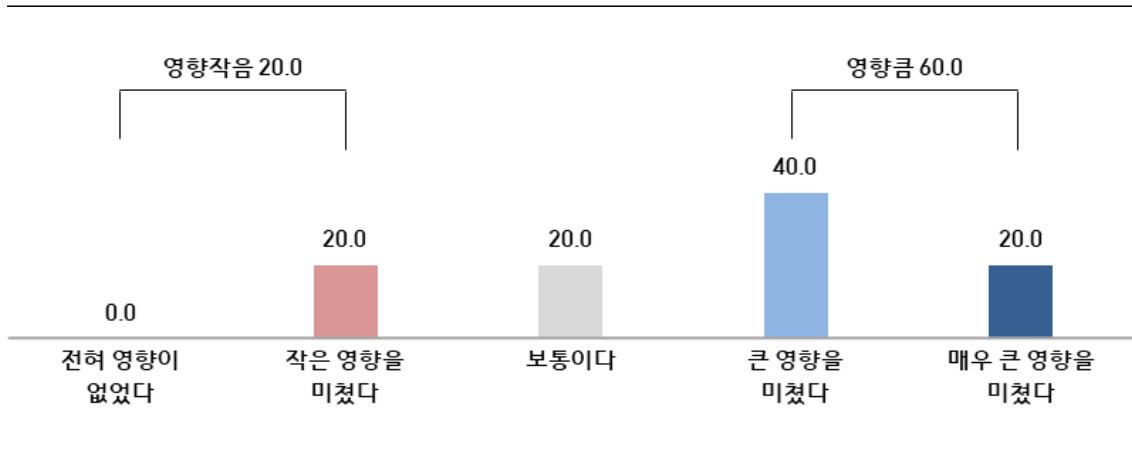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5% 이하	10% 초과 15% 이상	15% 초과 20% 이하	
전 체	(5)	20.0	40.0	40.0	
기업규모	중소기업	(4)	25.0	50.0	25.0
	중견기업	-	-	-	-
	대기업	(1)	0.0	0.0	100.0

3) 출자계획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계획에 대한 영향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꽤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60.0%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은 20.0%로 나타남.

[그림 V-6] 출자계획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Base: 2020년 출자기업 및 혜택 수혜기업, n=5, 단위: %)



<표 V-14> 출자계획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Base: 2020년 출자자 및 혜택 수혜자, n=5,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영향이 없었다	작은 영향을 미쳤다	보통이다	큰 영향을 미쳤다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5점척도 평균	
전체	(5)	0.0	20.0	20.0	40.0	20.0	3.60	
기업규모	중소기업	(4)	0.0	25.0	0.0	50.0	25.0	3.75
	중견기업	-	-	-	-	-	-	-
	대기업	(1)	0.0	0.0	100.0	0.0	0.0	3.00

□ 출자 개수를 증가시켰다는 응답은 20.0%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증가 개수는 약 10개로 나타남.

[그림 V-7] 출자 개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Base: 2020년 출자기업 및 혜택 수혜기업 중 '계획에 영향 있다' 응답 기업, n=5, 단위: %)



<표 V-15> 출자 개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Base: 2020년 출자기업 및 혜택 수혜기업 중 '계획에 영향 있다' 응답 기업, n=5, 단위: 명, %, 개)

구 분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증가시켰다	증가시켰다		
				증가 개수	증가 비율	
전 체	(5)	80.0	20.0	10.00	50.00	
기업규모	중소기업	(4)	75.0	25.0	10.00	50.00
	중견기업	-	-	-	-	-
	대기업	(1)	100.0	0.0	-	-

□ 투자 기간을 증가시켰다는 응답 역시 20.0%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증가 개월 수는 약 24개월로 나타남

[그림 V-8] 투자 기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Base: 2020년 출자기업 및 혜택 수혜기업 중 '계획에 영향 있다' 응답 기업, n=5, 단위: %)



<표 V-16> 출자 기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 정도

(Base: 2020년 출자기업 및 혜택 수혜기업 중 '계획에 영향 있다' 응답 기업, n=5, 단위: 명, %,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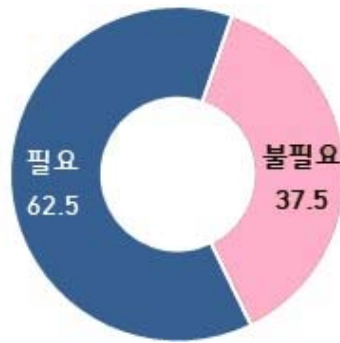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증가시켰다	증가시켰다		
				증가 개월	증가 비율	
전 체	(5)	80.0	20.0	24.00	50.00	
기업규모	중소기업	(4)	75.0	25.0	24.00	50.00
	중견기업	-	-	-	-	-
	대기업	(1)	100.0	0.0	-	-

4) 동 소득공제 혜택의 적용요건에 따른 시행의 필요 여부

□ 동 제도를 최저한세의 대상에서 제외해서 다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요건에만 해당하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2.5%로 ‘불필요하다’(37.5%)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V-9] 동 소득공제 혜택의 적용요건에 따른 시행의 필요 여부

(Base: 전체, n=8, 단위: %)



<표 V-17> 동 소득공제 혜택의 적용요건에 따른 시행의 필요 여부

(Base: 전체, n=8,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필요	불필요
전체		(8)	62.5	37.5
기업규모	중소기업	(6)	50.0	50.0
	중견기업	(1)	100.0	0.0
	대기업	(1)	100.0	0.0

4.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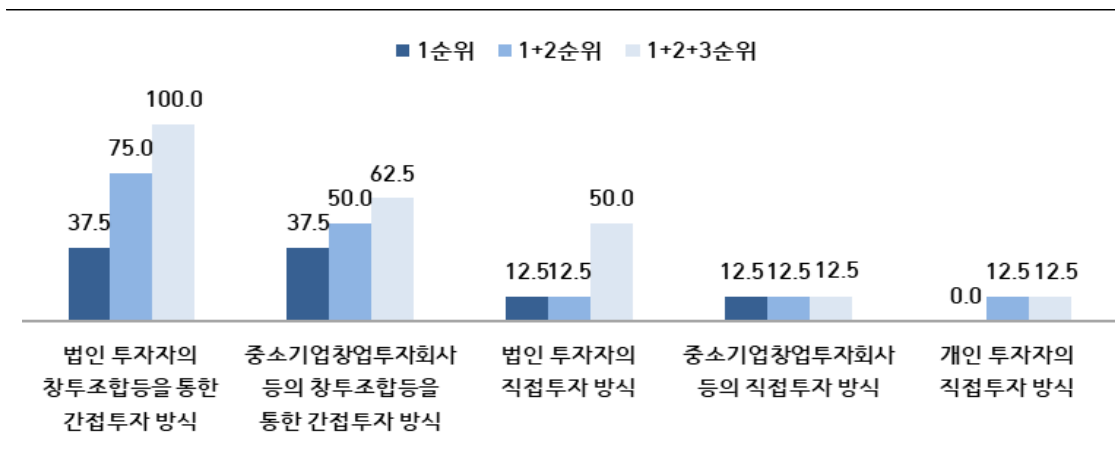
1)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

□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에 대해, 1순위 응답 기준으로 ‘법인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각각 37.5%로 높게 나타남

□ 1+2순위 및 1+2+3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모두 ‘법인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V-10]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

(Base: 전체, n=8, 단위: %)



<표 V-18>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1순위)

(Base: 전체, n=8,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법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	법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직접투자 방식 (%)	
전체	(8)	37.5	37.5	12.5	12.5	
기업규모	중소기업	(5)	20.0	60.0	0.0	20.0
	중견기업	(3)	66.7	0.0	33.3	0.0
	대기업	(6)	33.3	50.0	0.0	16.7

<표 V-19>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1+2순위)

(Base: 전체, n=8,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법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개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법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의 직접투자 방식	개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전체	(8)	75.0	50.0	37.5	12.5	12.5	12.5	
기업규모	중소기업	(5)	80.0	80.0	20.0	0.0	20.0	0.0
	중견기업	(3)	66.7	0.0	66.7	33.3	0.0	33.3
	대기업	(6)	83.3	50.0	50.0	0.0	16.7	0.0

<표 V-20> 조세지원 강화가 필요한 출자 방식(1+2+3순위)

(Base: 전체, n=8,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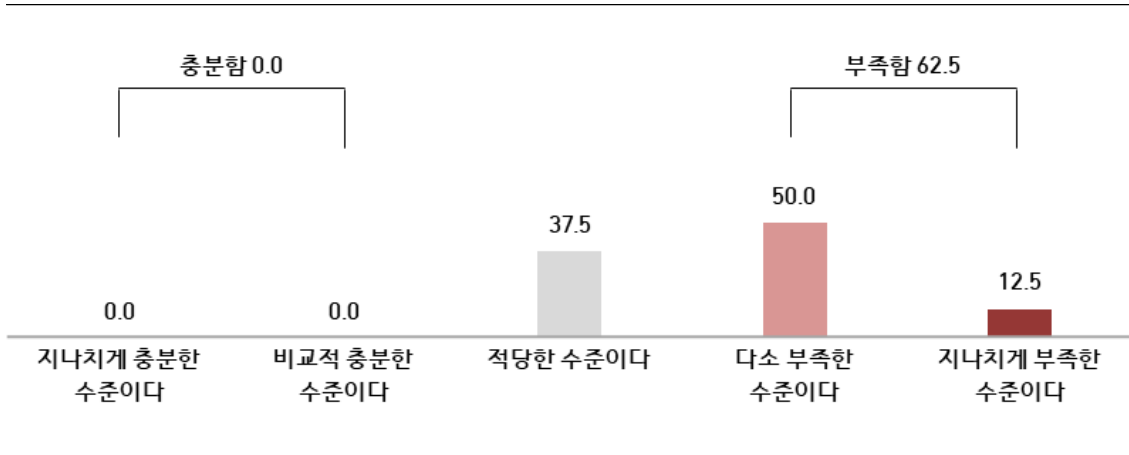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법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개인 투자자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	법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의 직접투자 방식	개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	
전체	(8)	100.0	62.5	62.5	50.0	12.5	12.5	
기업규모	중소기업	(5)	100.0	60.0	80.0	40.0	20.0	0.0
	중견기업	(3)	100.0	66.7	33.3	66.7	0.0	33.3
	대기업	(6)	100.0	83.3	66.7	33.3	16.7	0.0

2) 동 제도의 현행 조세지원 수준

□ 동 제도의 현행 조세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62.5%로 나타났으며, ‘충분하다’는 응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11] 동 제도의 현행 조세지원 수준

(Base: 전체, n=8, 단위: %)



<표 V-21> 동 제도의 현행 조세지원 수준

(Base: 전체, n=8,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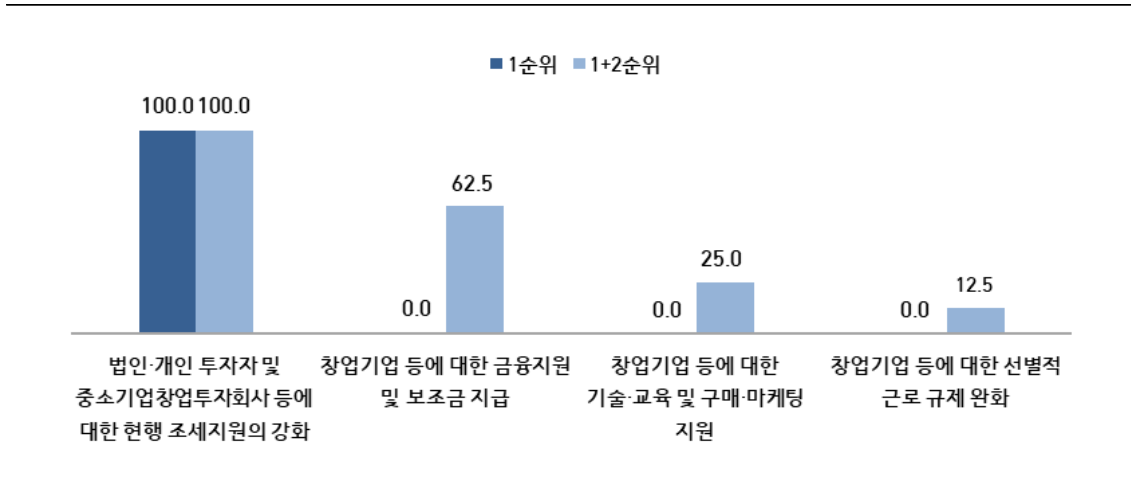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지나치게 충분한 수준이다	비교적 충분한 수준이다	적당한 수준이다	다소 부족한 수준이다	지나치게 부족한 수준이다	5점척도 평균	
전체	(8)	0.0	0.0	37.5	50.0	12.5	2.25	
기업규모	중소기업	(6)	0.0	0.0	33.3	50.0	16.7	2.17
	중견기업	(1)	0.0	0.0	100.0	0.0	0.0	3.00
	대기업	(1)	0.0	0.0	0.0	100.0	0.0	2.00

3)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1순위 기준 응답 기업 모두 ‘법인·개인투자자 및 중소기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의 강화’를 꼽았으며, 1+2순위 기준으로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및 보조금 지급’ 역시 62.5%로 높게 나타남

[그림 V-12]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Base: 전체, n=8, 단위: %)



<표 V-22>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1순위, 1+2순위)

(Base: 전체, n=8,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1순위		1+2순위			
		법인·개인 투자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의 강화	법인·개인 투자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의 강화	창업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및 보조금 지급	창업기업 등에 대한 기술·교육 및 구매·마케팅 지원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선별적 근로 규제 완화	
전체	(8)	100.0	100.0	62.5	25.0	12.5	
기업규모	중소기업	(6)	100.0	100.0	66.7	33.3	0.0
	중견기업	(1)	100.0	100.0	100.0	0.0	0.0
	대기업	(1)	100.0	100.0	0.0	0.0	100.0